

全國保健網을 통한 人口動態申告 改善을 위한
調查研究(第 I 輯)
— 基礎調查 報告 —

宋建鏞 · 車正根

1972 年 5 月

A SYSTEM OF SPECIAL HEALTH
STATISTICS PROMOTERS TO IMPROVE VITAL
REGISTRATION IN KOREA (REPORT SERIES I)
— BASELINE SURVEY REPORT —

KUN YONG SONG · JOUNG KEUN CHA

May 1972

The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Seoul, Korea

머 리 말

이 冊字는 本 研究의 1 段階인 標本家口 및 人口에 관한 基礎調查 結果와 研究方法, 研究의 背景, 外國의 現況 등과 관련되는 文獻調查 結果 그리고 現在까지의 研究活動 등을 收錄한 基礎 報告書입니다.

世界 人口의 66%는 人口動態 申告資料가 不完全한 地域에 거주하며, 이의 대부분은 開發途上 國家입니다.

우리 나라는 政府樹立 以後 30年이 가가워지지만, 人口動態 統計는 不完全하고, 改善의 징후조차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人口動態 統計는 國家 經濟開發 및 社會開發, 社會福祉 등의 計劃 및 運營과 수다한 公共 및 私立 機關의 事業, 各種 研究 등에 이용됩니다. 특히 이 基礎的 統計는 保健分野의 事業 計劃, 運營, 評價와 當面한 國家 家族計劃事業 效果의 정확한 評價에 불가결한 資料이지만, 申告를 통하여 수집되는 資料는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人口動態 統計는 繼續性 및 最近性이 충족됨으로써 그 價値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申告方法 이외의 어느 方法으로도 높은 正確도와 價値를 갖는 人口動態 資料를 생산하지 못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政府 및 各種 研究機關은 우리 나라 人口動態 統計를 改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별로 큰 成果를 얻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本 研究院은 우리 나라 人口動態 統計를 改善시킬 수 있는 획기적 研究事業을 1971年에 着手하였고 1973年에 일단 完了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研究事業은 標本人口가 약 17만이며, 全國保健網의 活用과 Matching Study 를 試圖하여 人口動態 申告率의 向上과 이의 정확한 評價를 할 수 있도록 세밀히 계획되어 있어, 방대한 研究規模나 研究方法은 우리 나라 初有의 것입니다.

이러한 意義깊은 研究事業은 駐韓 USAID의 財政的 支援으로 이룩된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USAID 當局에 심심한 謝意를 표하며, 本 研究를 위하여 직접 간접으로 도와주신 經濟企劃院, 保健社會部, 美國人口協會의 Dr. Watson, 各界 專門家에게 심심한 謝意를 표하며, 앞으로도 이 研究를 위한 더욱 많은 高見과 지도편달을 빌어 마지 않습니다.

1972. 5. 30

家族計劃研究院長 車 潤 根

感謝의 말씀



이 報告書는 諸君의 헌신적 노력의 結晶입니다. 各별한 關心을 기울여 주신 研究部長 金泰龍 博士, 一線에서 資料蒐集과 造成事業에 힘써 주신 25名의 造成員과 관할 保健所長님, 本 研究의 計劃 및 初期 運籌에 힘써 주신 崔仁鉉氏, 事業 推進過程의 孔世權氏와 朴承厚氏, 現在 各別 地方에서 努力하는 林鍾權氏, 資料 整理를 도와준 金吉順嬢, 그리고 資料 整理를 도와준 金錫 資料課長과 그 직원일동 여러분의 적극적 도움없이는 이 研究는 本不可能한 것입니다.

이 報告書가 햇볕을 보기까지 끊임없이 도와주신 여러 분에게 심심한 謝意를 표하며 특히 一線에서 勞苦가 컸던 造成員 여러분을 다음에 紹介합니다.

시도명	조성활동지역	보건소명	조성원 성명
서울	용산구 원효로 제 1 동	서울 용산구 보건소	전 재 복
부산	서 구 동대신 제 3 동	부산 서구 "	전 애 순
경기도	인천시 송월동	인천 중구 "	최 숙 자
	용인군 모현면	용인군 "	황 근 속
	강화군 내가면	강화군 "	김 옥 분
강원도	춘성군 등면	춘성군 "	김 정 희
	명주군 성산면	명주군 "	송 명 례
충청 북	보은군 회남면	보은군 "	조 태 홍
	옥천군 안남면	옥천군 "	홍 순 회
충청 남	홍성군 장곡면	홍성군 "	이 현 숙
	금산군 제원면	금산군 "	이 태 우
	부여군 부여읍	부여군 "	이 범 제
전 북	완주군 이서면	완주군 "	구 혜 속
	옥구군 회현면	옥구군 "	김 영 애
전 남	곡성군 곡성면	곡성군 "	양 화 자
	나주군 세지면	나주군 "	정 부 질
	보성군 웅치면	보성군 "	이 정 희
경 북	의성군 봉양면	의성군 "	권 소 명
	영일군 연일면	영일군 "	김 명 옥
	월성군 의동면	월성군 "	이 귀 순
경 남	삼천포시 동좌동	삼천포시 "	백 순 옥
	의령군 의령면	의령군 "	엄 상 현
	울주군 삼남면	울주군 "	김 정 자
제주도	제주시 1 도동	제주시 "	양 순 자
	북제주군 한림읍	북제주군 "	양 정 희

1972. 5. 30

著者 識

동 991

目 次

머 리 말.....	1
第 1 章 緒 論.....	7
1. 人口動態統計의 定義 및 重要性.....	7
1) 人口動態統計의 定義	
2) 人口動態統計의 重要性	
가. 人口動態統計의 蒐集方法	8
1) 申告方法	
2) 調査方法 및 그 缺點	
3) 分析의 方法	
나. 人口動態 記錄 및 統計의 利用.....	11
(1) 個人의 利用	
(2) 各種 機關의 利用	
(3) 國家的 利用	
(가) 研究의 要素로서의 利用	
(나) 公共 및 私立 行政에서의 利用	
2. 申告制度의 歷史.....	19
第 2 章 研究의 背景	21
1. 우리 나라 人口動態統計의 現況.....	21
2. 人口動態 申告 不振理由와 이의 改善努力	22
3. 外國의 人口動態 統計 改善努力.....	25
第 3 章 研究目的 및 範圍	31
1. 研究目的	31
2. 研究範圍	31
1) 研究期間	
2) 標本抽出 및 研究對象	
3) 研究內容	
가. 基礎調	
나. 週末業績報告	
3. 研究方法	36
1) 刺戟投與	37
가. 造成員의 選定 및 訓練	

나. 造成員의 活動	
다. 造成員에 대한 指導監督	
2) 研究結果의 評價	38
가. 評價對象	
나. 評價方法	
第 4 章 基礎調查 結果	40
1. 基礎調查의 目的 및 內容	40
2. 人口學的 特性	40
1) 家口 및 家口員數	40
2) 人口構造	45
3) 地域間 特殊年齡層 比較	48
4) 結婚狀態	49
3. 出生申告	50
1) 一般의 水準	50
2) 教育水準別	55
3) 職業別	55
4. 死亡申告	60
附 錄	
1. 人口動態申告 造成員 訓練時間表	65
2. 造成員 銘心書	67
3. 調查區 要圖 Sample	89
4. 造成員 週末業績報告 作成要領(活動指針)	90
5. 人口動態 造成活動 業務指導書	96
6. 週末業績報告 接受結果	112
7. 人口動態申告制度와 關聯된 諸問題	120

CONTENTS

Foreword.....	1
Chapter One: Introduction	7
1. Definition and Importance of Vital Statistics	7
A. Definition	
B. Importance	
1) Methods of Obtaining Vital Statistics.....	8
a. Registration Method	
b. Other Methods and Their Deficiencies	
2) Uses of Vital Records and Statistics.....	11
a. Use by Individual	
b. Use by Agencies and Organizations	
c. National Uses of Vital Statistics	
Chapter Two: Background of Research.....	21
1. Present Status of Vital Statistics in Korea.....	21
2. Reasons for Poor Registration and Efforts to Improve Registration System	22
3. Plans and Programs for Improvement of Vital Statistics in Other Developing Countries.....	25
Chapter Three: Objectives and Scope of the Study.....	31
1. Objectives.....	31
2. Scope.....	31
A. Duration of the Study	
B. Sampling Design and Sample Population	
C. Contents of Questionnaires	
1) Baseline Survey	
2) Weekly Promoter's Report	
3 Research Methodology	36
A. Stimulation for Action Areas.....	37
1) Selection and Training of Special Health Statistics Promoters	
2) Activities of Health Statistics Promoters	
3) Supervision of Field Work	

B. Evaluation and Analysis	38
1) Subjects	
2) Evaluation Methods	
Chapter Four: Results of Baseline Survey.....	40
1. Objectives and Content.....	40
2. Demographic Charecteristics	40
A. Households and Population	40
B. Population Structure.....	45
C. Comparison of Age Groups in Action Areas and Control Areas in 25 Sampled Areas.....	48
D. Marital Status.....	49
3. Registration of Births.....	50
A. General Level.....	50
B. Education.....	55
C. Occupation	55
4. Registration of Deaths	60
Appendix:	

第 1 章 緒 論

1. 人口動態統計의 定義 및 重要性

1) 人口動態統計의 定義

人口動態記錄(vital records)은 個人的 生命 획득 및 상실과 그의 生存期間에 일어나는 身分의 변화 등과 관계되는 모든 事件(events)인 出生, 死亡, 胎兒死亡(死産), 結婚, 離婚 등과 연관되는 것으로 定義된다. 이에 따라 人口動態統計(vital statistics)은 일정한 人口集團 및 그 地域내에서 일어난 人口動態事件의 數 및 特性을 記述한 統計라고 할 수 있다.¹⁾

그러므로 人口動態 記錄은 根源의으로 戶籍과 밀접히 연관된다. 戶籍은 個人的 身分關係를 公簿(戶籍簿)에 登錄 公證하는 公文書이다. 이것은 機能面에서 일정한 親族團體의 構成員에 대하여 그 構成員 各 個人的 出生에서 死亡에 이르는 사이의 重要事件을 시간적 序列에 따라 動的으로 파악하는 기능을 영위하는 公文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戶籍은 個人 單位가 아니고 特定한 親族團體를 單位로 하고, 個人的 出生에서 死亡에 이르기까지의 身分上의 重要事件을 통일적으로 기록하는 소위 身分關係의 系譜의 構造를 가지고 있다.

한편 人口動態統計는 統計法(1962. 12. 12. 법률 제1215호) 제 5조 제 1항의 규정과 인구동태 조사규칙(1971. 3. 18. 경제기획원령 제66호) 제 4조에 의한 신고의무자의 인구동태신고에 의하여 수집 및 편집되며, 출생, 사망, 혼인 및 이혼에 관하여 신고할 때는 戶籍法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신고케 되어 있다. 그러므로 완전한 人口動態統計는 適期の 완벽한 戶籍申告에 의하여 생산 가능한 것이다.

2) 人口動態統計의 重要性

人口動態統計의 重要性은 두 側面 즉 (1) 統計資料의 蒐集에 있어 最近性의 繼續的 記錄은 申告方法 이외의 다른 方法에 의존할 수 없다. (2) 人口動態 記錄 및 統計의 광범한 利用 등의 側面에서 論述될 수 있다.

다음은 유엔에서 발간된 Handbook of Vital Statistics Methods²⁾에 취급된 내용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을 요약 소개한 것이다.

1) United Nations; Handbook of Vital Statistics Methods, P. 3, 1955.

2) United Nations; Handbook of Vital Statistics Methods, 1955.

가. 人口動態統計의 蒐集方法

(1) 申告方法

歷史적으로 人口動態統計는 全體의이든 部分的이든 人口動態事件의 發生 및 特性이 合法化의 目的을 위해 기록되는 때 얻어지는 情報에서 由來하였기 때문에, 이 統計는 申告方法에 의하여 蒐集되는 統計인 申告統計(registration statistics)라고도 하였다.

申告方法은 1次的으로 合法的 文書의 價値, 2次的으로 統計資料源의 有用성을 위하여 人口動態事件의 發生 및 特性에 대한 “계속적” “영구적” “의무적” 記錄의 蒐集方法이라고 정의된다.

먼저 繼續의 側面을 보면, 人口動態統計는 流行이 아닌 發生의 統計이다. 즉 이 統計는 特定期間 또는 期間 內에 發生한 어떤 事件의 한 尺度를 마련하며, 이 尺度는 최근의 것이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한 期間에 걸쳐서 일어난 事件의 계속적이고 최근성의 記錄을 수집하는 오직 하나의 成功의 方法은 申告方法이었음이 알려져 있다.

統計의 最近성과 이의 時日 및 特性和 관련되는 正確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申告記錄은 事件發生 후 가능한 신속히 作成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目的을 달성하는 가장 간략하고 신속한 方法은 申告(義務)者에게 事件發生 즉시 신고케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로 申告의 繼續의 側面 역시 節次的 永久성을 의미한다. 短期間 유지되었다가 없어져 버리는 申告는 최근의 發生統計로서 유용한 人口動態統計를 생산해 내지 못한다.

人口動態 事件의 계속적이고 영구적 記錄은 申告를 의무화(강제화)한 立法手段에 의하여 최선으로 확보될 수 있다. 이러한 法制化에는 의무의 부여를 위한 상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申告方法은 觀察의 계속적 특성 뿐만 아니라 方法의 강제성으로 특징지어지게 된다. 이들 양 측면은 기본적인 것이다.

(2) 調査方法 및 그 缺點

센서스調査 :

人口動態 事件의 申告는 거의 일반화된 법적 요구조건이란 사실 때문에, 申告記錄의 통계적 처리는 人口動態統計 생산의 용인된 편리한 方法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代置方法이 北美大陸의 몇개 國家에서 수시로 이용되어 왔다. 즉 이들 국가의 人口動態申告는 다만 各州 또는 道 政府의 權限이 되어 있다. 특히 캐나다와 美國이 人口센서스調査에서 전국 人口動態統計를 蒐集하려고한 試圖는 흥미있는 것이다. 이들 두 國家의 역사는 매우 유사하다.

캐나다 : 캐나다에서 公衆保健에 관한 關心은 1880년 초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자연 이 관심은 死亡統計에 주의를 갖게 하였다. 그러나 R. H. Coats³⁾가 지

3) "Beginnings in Canadian Statistics" by R. H. Coats, The Canadian Historical Review, Vol. XXVII, No. 2, Toronto, June 1946, P. 20.

적한 바와 같이 1883년까지 出生과 死亡의 記錄은 邑·面의 목사, 檢屍官, 書記 등 의 체크나 보수를 받는 責任이 아니었고, 그 結果로 申告는 完전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확실히 死亡統計를 생산하는 어떤 다른 方法이 요구되었다.

非體系的의 申告 이외에, 出生數 및 死因과 함께 死亡數가 早期부터 人口센서스調查票에 의거 수집되었다. 每 10年마다 出生 및 死亡에 관한 이 調査는 申告結果를 전반적으로 檢定케 하는 기회가 되었으나, 그 結果는 너무나 不良하여 1911년에 이 方法이 中斷되었다. 이후부터 모든 努力이 전체 道에 걸쳐서 均一한 申告法 및 節次를 확보할 目的으로 道の 法規를 改善 및 標準化한 申告方法을 確立하는데 경주 되었다.

美國 : 캐나다와 유사한 歷史를 美國에서도 볼 수 있다. 死亡統計의 重要性이 인식됨에 따라 센서스 기간에 일어난 모든 死亡의 조사를 요구하는 法律⁴⁾(1850년 5월 23일)이 제정 공포되었다. 그러나 좋은 意圖에도 불구하고, 센서스를 통하여 수집된 死亡統計는 항상 不振하였고, 比較의 근거가 설정되기 까지 얼마나 不振한지도 알 수 없었다. 이와 같은 比較의 根據는 1880년에 死亡申告 地域이 설치됨으로써 이용가능하였다. 이 地域은 Massachusetts와 New Jersey의 2개 州, District of Columbia, 19개 都市의 8,538,366 인구인 美國 전체 인구의 17%를 포괄하였다. 1880년에 申告方法에 의하여 이 지역의 死亡率은 19.8%이었고, 非申告地域을 구성하는 殘餘 州의 死亡率은 센서스結果에서 13.5%가 計算되었다. 1890년에 두 比較地域의 死亡率은 19.6%와 10.6%, 1900년에 17.8%와 11.2%였다. 그러므로 센서스 方法은 正確성에 있어 계속적 申告方法과 比較될 수 있는 結果를 생산해내지 못하였고, 1900년 센서스 이후 센서스의 死亡調査票는 제거되었다. 이후부터 모든 努力이 申告方法에 의한 人口動態統計의 發展에 집중케 되었다.

人口動態統計의 수집을 위한 센서스 方法의 근본적 결함은 센서스 方法에 의하여 최근성의 人口動態統計를 생산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센서스 기간의 出生 및 死亡의 發生도 완전히 기록하지 못한다.

어떤 경우 센서스 調査員은 그 문제에 대한 질문에 실패하거나, 질문하는 경우 그 답변을 오해하거나 이를 不正確하게 記錄한다.

한편 應答者의 답변은 記憶의 要因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조사대상 기간이 과거의 장기간을 포괄하는 경우, 보고(의무)자는 그 事件의 事實을 想起하지 못하고, 그 發生 時期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특히 出生과 正常出產으로 同一年歷 기간에 死亡한 嬰兒의 死亡에 관한 報告에 있어서, 記憶의 要因 效果는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소규모의 연구⁵⁾에서 死亡에 관한 정보수집의 한 手段으로서 調査節次에 포함된 問題 중 記憶力은 病院에서 出生하여 死亡한 嬰兒에서 특히 중요 要

4) The Federal Registration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Its Development. Problems, and Defects, by Cressy L. Wilbur,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Gov. Print. off. Washington, 1916, P.8.

5) Conducted in the District of Columbia by the United States National Office of Vital Statistics in 1949.

인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외에 한 家口의 最終 家口員의 死亡, 死亡에 의한 한 家口의 붕괴, 生殘者의 分散, 호텔 또는 여관 기숙사의 사망 등은 센서스 死亡調查에서 누락이 불가피한 事例들이다.

특정 기간에 일어난 모든 人口動態 事件의 보고에 있어 포괄범위의 실질적 결합과 調查漏落과 별개로, 센서스方法에 의하여 편리하게 수집될 수 있는 각 事件에 대한 情報의 正確性의 問題가 있다. 節次費用이 억제되지 않거나 調查結果의 관리가 가능하든 안하든 제한된 情報만이 센서스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며, 醫學이나 保健에 관련되는 細項에 관한 情報은 대체로 센서스調查票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社會調查 :

人口動態統計를 확보하는 센서스方法에 있어 記憶의 결합은 成敗의 重要 要因이 기 때문에, 조사대상 期間이 短期라면 그 結果는 개선될 수 있다. 그러므로 短期間을 포괄하는 社會調查方法에 의한 年間 資料를 생산하기 위하여 年間 전체에 걸쳐 分散하여 인접한 많은 수의 社會調查가 요구된다.

이들 要求事項을 충족시킴에 있어, 센서스에 의하여 마련된 기본적 利益 즉 훈련된 要員에 의하여 운영된 기존의 전국적 조직의 利益이 사라지게 되고, 申告方法을 계속적 社會調查로 代置하는 궁극적 費用은 무거워질 것이다. 경제적 이유로 보통 社會調查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標本抽出이 利用된다면, 人口의 差異 및 移動性과 保健事業의 重要한 기초인 적은 地理的 單位를 위한 資料의 제공 등을 고려한 方法으로 標本을 設計하는 문제가 있게 된다. 이들 要因 때문에 社會調查 方法은 日常의이고 永久的 基礎 위에서 人口動態統計의 수집에 적합치 않은 위치에 있게 된다.

그러나 申告方法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거나 대단히 不振한 지역에서 出生과 死亡에 관한 특별한 情報을 얻기 위하여 주기적 社會調查가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情況下에서, 社會調查는 달리 얻을 수 없는 약간의 人口動態統計를 利用 가능케 하는데 명확한 利點을 갖는다.

低開發地域에서 社會調查 方法을 적용한 좋은 實例은 Southern Rhodesia의 경험에서 볼 수 있다. 區劃되지 않은 領土에 광범하게 分散된 文盲의 人口에 대한 完全한 調查의 實施와 가까운 장래에 人口動態 統計를 생산할 수 있는 申告制度를 確立할 可能性이 없는 경우에, 標本調查가 실시된다. 1948년 8월 초에, 標本 마을의 調查가 通譯者의 도움을 받아 훈련된 現地要員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수집된 情報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 ① 現地調查員이 방문하기 이전 12개월 간에 死亡한 사람의 총수
- ② 思春期가 넘은 각 婦人의

6) "Sampling Surveys in Central Africa" by J.R. H. Shaul,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 47, No. 258, June 1952. P. 239-254. "Sample Census of the Indigenous African Population 1948" Economic and Statistical Bulletin of Southern Rhodesia, Central African Statistical Office, Vol. XVII, No. 8, 21. July 1949, P. 7.

㉑ 이전 12개월 간의 出生數

㉒ 이전 12개월 간에 死亡한 1歲미만의 영아수

이러한 調査를 통하여 얻어진 出生率은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였고, 일반 및 영아사망율은 지역에 따라 광범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이 報告書가 인용된 당시, 調査結果는 더욱 集中的 研究와 다음 調査의 結果를 기대해야할 실정이었다⁶⁾.

(3) 分析의 方法——센서스 資料를 利用한 人口動態率의 推定

出生, 死亡, 結婚 등의 諸率을 導出하는 것이 人口動態 統計 수집의 目的이라면 이를 위하여 적용될 수 있는 다른 方法이 있다. 이 方法은 두개의 계속된 인구센서스 結果의 分析에 기초를 둔 數學的인 것이다. 적용되는 센서스 結果는 信賴度 높은 人口의 연령 및 結婚상태 分布를 나타내는 대단히 正確하고 신뢰할 수 있는 調査結果가 必須的이다. 人口移動에 관한 어떤 가정이 선정되고 조사의 信賴度가 확보된다면, 人口센서스로 부터의 資料는 센서스 間 期間에 일어난 出生, 死亡, 結婚 등의 概略的 數에 대한 정보를 導出해 내는데 利用될 수 있다.

이 間接的 方法은 總量만을 그리고 센서스 年度에 관한 것만을 생산한다. 그러므로 이는 人口動態의 定義에 비추어 최근성과 계속성이어야 하는 人口動態 統計를 발전시키는 한 方法으로서 正當化되지 못한다.

그러나 Brazil⁷⁾에서 人口動態 統計를 추정하는데 이 方法이 사용된 바 있지만, 이 方法은 申告統計가 존재치 않거나 不振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人口센서스가 있는 비교적 稀소한 地域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人口動態記錄 및 統計의 利用

(1) 個人의 利用

出生, 死亡, 結婚, 離婚 등의 記錄은 個人에게 대단히 높이 利用된다. 기초 申告文書나 발급된 證明書는 相關되는 個人에게 合法的 有意성을 갖게 하고, 이는 人間이 그의 生存期間에 획득할 수 있는 몇 개 안되는 重要 文書 중의 하나이다. 個人은 出生, 死亡, 胎兒死亡, 結婚, 離婚 등 記錄을 주로 그 事件의 發生 事實, 日時, 場所 등의 증거로 利用한다.

다음에 個人의 人口動態 記錄 利用에 대하여 5個의 主要 人口動態 事件으로 구분하여 상술되어 있다.

出生 記錄 :

個人의 存立 즉 出生 事實의 증거는 出生記錄이 들 수 있는 가장 重要한 利用面이다. 그 이유는 出生申告 記錄은 法的 記錄이며, 個人, 父母의 姓名과 기타 相關되는 情報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出生의 法的 證據는 父母, 嫡子, 扶養, 家系 등과 같은 家族 關係를 확립하고, 遺産이나 保險要求의 設定 또는 財產相續의 配定 등에 요구되는 것이다.

어떤 年齡 도달 여부에 따른 權利의 획득은 흔히 年齡, 환언해서 出生年月日의

7) Method of Using Census Statistics for the Calculation of Life Tables and Other Demographic Measures (with Applications to the Population of Brazil), by Giorgio Mortara.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Social Affairs. Document ST/SOA/Series A/7, Nov. 1949, P. 60.

증거에 의존한다. 就學 또는 어떤 產業이나 政府機關 등의 就業, 軍에 봉사하는 義務, 自動車 免許, 어떤 專門職의 就業, 父母의 同意없는 結婚, 投票權, 相續權 등은 年齡의 증거에 의존하는 事例들이다.

한편 出生申告 記錄은 國籍 또는 市民權을 정하는 法的 文書가 되어, 外國旅行을 위한 旅券 획득에도 이용된다.

死亡 記錄 :

死亡申告의 증거는 世界 거의 모든 國家에서 埋火葬 허가의 前提條件으로 利用된다. 또한 死亡證據는 相續이나 保險給付, 여러 형태의 家族手當 등의 要求 결정에 이용된다.

遺產相續人의 出生日과 연관지어 遺言者의 死亡日은 年齡에 따른 相續權의 증명에 필요하다. 이는 어떤 時期에 發效한 相續稅의 免稅, 어버이임의 증명, 기타 이용 등에 가치 있는 것이다.

死亡이 發生한 精確한 場所를 증명하는 死亡記錄의 利用은 어떤 要求가 發生場所에 의존하는 事故와 연관된 때 有用하다. 地理的 또는 行政單位에 의한 死亡場所의 증거는 相續稅의 부과나 相續權의 설정과 연관지어 重要하다. 어떤 國家에서 精確한 死亡場所는 특별히 지정된 장소에 埋火葬될 權利 설정에 有意하다.

胎兒死亡 記錄 :

分娩의 事實, 日時, 場所 등을 증명하는 胎兒死亡 記錄은 法的 意味에서 利用性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의 可視的 役割은 가족구성이나 順位에 따른 어떤 法的 問題 즉 遺產과 같은 權利를 취급하는 問題를 確定짓는데 이용된다.

結婚 記錄 :

한 結婚의 成立 事實은 家系의 法的 責任의 설정, 遺產이나 年金에 대한 權利 설정, 嫡子의 부여, 및 家系 등을 증명하는데 필요하다. 자손의 出生日時와 연관지어 結婚日時は 合法性의 증명과 그 自體에 의하여 어떤 年金이나 社會保障 給付에 대한 資格 규정에 重要하다. 또한 結婚日時は 正常的의 申告期間이 지난 후에도 出生에 대한 직접 또는 보충적 증거를 마련할 수 있다. 한편 結婚場所는 儀式的의 合法性 설정의 한 要因이 될 수 있다.

離婚 記錄 :

離婚의 事實은 再婚의 權利 확보에 요구된다. 이는 遺產訴訟이나 相對方에 의하여 받게 되는 財政的 義務 免除의 한 要因이 될 수 있다. 結婚記錄에 관한 경우와 같이 離婚記錄에 관한 어떤 情報은 지연된 出生申告에 대한 要求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가치가 있다.

離婚이 유효한 時期는 父母關係나 다음의 結婚에 관한 合法性 설정에 重要하다. 또한 이는 結婚狀態나 年齡에 따른 權利 확보나 財政關係의 責任 不在를 증명하는데 요구된다.

離婚이 허가된 場所는 특히 離婚의 合法性 규정의 観点에서 重要하다.

(2) 各種機關의 利用

出生, 死亡, 結婚 등의 記錄은 여러 行政의 目的을 위해 政府機關에 유용하다. 이들에 관하여 다음에 상술되어 있다.

出生 記錄 :

母性과 子女에 대한 產後管理를 위한 保健事業은 出生申告記錄을 緊要하게 이용한다. 이는 法的 機能 다음으로 出生記錄이 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利用面이다. 이에 관하여 New York 市の 경우를 記述하면 다음과 같다⁸⁾.

「出生은 2日 以內에 보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出生記錄으로 부터 충분한 記錄을 家庭訪問 看護員의 손에 넘겨 주는 것은 가능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看護員은 開業醫師의 도움을 받지 않거나 病院으로 부터 퇴원 직후의 母性과 子女를 위한 가정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The Statistical Division of the Bureau of Vital Records는 매일 각 區域 保健所에 이 區域에 거주하는 어머니의 出生名單을 송부한다. 이들 名單은 Index Tabulating Cards에서 작성되고, 出生順位, 體重, 開業醫師 또는 病院에서의 出生 區分 등의 情報와 함께 各 嬰兒의 姓名, 住所, 出生場所, 피부색 및 性別 등을 알려준다. 각 區域의 가정방문 看護員은 이들 名單에 관한 검토를 거쳐 母性과 嬰兒가 방문을 요하는 것인지 결정하고, 우선권을 첫 아이 分娩이나 出生時 低體重인 경우에 부여한다.

肉體의 不具 또는 未熟兒를 위한 事業이나 豫防接種事業은 出生申告管理所에서 넘어온 出生記錄을 活用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것이다.」

死亡 記錄 :

家庭이나 地域社會 內의 傳染病管理事業은 흔히 死亡申告 報告에서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家庭 內의 結核患者 발견은 家族中 結核 死亡申告에서 이룩되는 경우가 많다. 天然痘나 페스트와 같은 주요 전염병이 근절된 地域에서, 이들이 死因인 死亡의 出現은 故人이 질병을 가졌던 시기에 가질 수 있던 모든 가능한 接觸者를 포괄토록 계획된 일련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公共安全, 事故豫防, 범죄근절 등 事業은 어느 정도 保健事業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死亡申告 記錄을 活用한다.

이 외에 死亡申告 記錄은 社會保障 記錄, 罹患者 登錄, 選舉人 軍 및 納稅 등의 記錄을 말소하고, 질병과정의 醫學的 研究의 完成에 이용된다.

(3) 國家的 利用

앞에서 公衆保健, 福祉 및 기타 事業을 수행하는 政府 및 私設機關과 個人의 出生, 死亡, 結婚, 離婚 등 法的 記錄에 관한 活用に 관하여 기술하였지만, 한 事件發生의 事實, 時期, 場所 등을 증명하는 諸記錄의 法的 有意性에 관해서 누구도 異議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증거적 기록을 마련하는 이 중요한 기능은 統計의 見地에서 그 制度의 궁극적 目的은 아니다. 統計에서 記錄에 관한 情報가 統計의 目的을 위해 이용되지

8) "The Use of Vital Records in the Reduction of Fetal, Infant, and Maternal Mortality" by Thomas J. Duffield and Louis Weiner.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32, No. 8, August 1942, P. 803-810.

않는 한 많은 價値가 무시될 것이다.

개인 그 자신의 요구가 人口動態 記錄에 의하여 여러 측면에서 충족된 경우에, 人口動態 統計는 이들 事業의 計劃, 運營, 評價의 道具로서 利用하는 것을 除外하고 별로 흥미를 갖지 않는다.

政府機關, 商業 및 公衆保健分野의 活動은 여러 방법으로 人口動態 記錄에서 由來한 統計에 의존한다. 國家事業에 있어 人口動態 統計의 役割은 다음과 같은 두 主要觀點에서 논급될 수 있다.

① 人口 및 醫學的 研究의 基礎的 要素로서의 人口動態 統計의 利用

② 公共行政의 不可避한 要素와 行政措置의 決定要因으로서의 役割

(가) 研究의 要素로서의 利用

人口學的 研究 :

人口動態 統計의 가장 중요한 利用의 하나는 經濟 및 社會의 目的을 위한 人口의 人口學的 分析이다. 人口運動과 經濟 및 社會 要因과의 人口學的 相互關聯性의 研究는 社會에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技術의 發展에 따라 그리고 公衆保健이 人口學的 問題에 注意를 돌에 따라 더욱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分析은 ① 人口推定 ② 人口推計 ③ 分析的 研究 등 3個 方向에서 취급될 수 있다.

人口推定(population estimation) : 대체로 기초적 觀點에서, 地上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와 이들의 分布에 관한 지식은 기본적인 것이다. 運輸施設, 農業生産, 經濟財의 生産과 分配, 住宅, 保健事業 등의 計劃은 人口의 基礎的 數值없이 불가능하다. 이 기초적 人口의 數値는 대부분 전국적 人口센서스에 근원을 두지만, 완전한 센서스는 高價가 투입되기 때문에 보통 10년 간격으로 실시되고 있다. 센서스期間의 人口數値는 人口動態 統計의 도움으로 推定되어야 한다. 出生 및 流入人口에 의한 증가와 死亡 및 流出人口에 의한 감소에 따른 센서스人口는 그 地域 人口를 推定케 한다. 人口推定을 가능케 하는 이러한 決定的 情報를 위하여 人口學者는 주로 人口動態 統計라는 出生 및 死亡의 計定인 “人間簿記”(human book-keeping)에 의존해야 한다⁹⁾.

어떤 선정된 순간의 人口規模를 아는 것은 많은 목적을 위하여 바람직하고 유용하다. 그러나 예컨대 年齡, 性, 結婚狀態 別로 人口構成을 아는 것은 經濟 및 社會的 研究를 위한 要求條件의 견지에서 더욱 바람직하다. 人口動態 統計는 최근의 死亡, 出生, 結婚 패턴을 고려하고, 年齡, 性, 結婚狀態 別로 人口推定值를 生産함으로써 센서스 調査值의 年度別 調整을 위한 基礎를 마련한다.

그러므로 申告統計가 합리적으로 정확하다는 전제하에서, 自然增加에 관한 資料의 利用에 의한 人口推定은 가장 信賴度 높은 方法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 方法에 적용되는 技法이나 假定은 다른 冊子¹⁰⁾에서 소개되지만, 여기서 人口動態統計

9) Vital Statistics and Public Health Work in the Tropics Including Supplement on the Genealogy of Vital Statistics by P. Granville Edge, London, 1947, P. 4.

10) Methods of Estimating Total Population for Current Dates, Manual I of Manuals on Methods of Estimating Population, United Nations. Document ST/SOA/Series A/10, 1952, P. 45.

의 適用이 種族, 國籍 등과 같은 要因別로 分포되는 人口의 推定值를 마련하는 程度는 주로 根源의인 申告 기록의 細項數, 적용된 定義, 製表의 종류 등에 의하여 제한 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人口推定의 目的을 위하여 완전한 申告,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적 보고, 광범한 製表計劃 등에 기초를 둔 人口動態 統計의 가치는 높이 평가된다.

人口推計(population projections) : 人口의 現況에 관한 知識이 중요한 것과 같이 미래 어떤 時點의 人口規模, 地理的 分布, 構成의 知識은 經濟 및 社會計劃의 目的을 위하여 重要하다. 이들 분야의 計劃은 人口의 가치있는 推計 및 人口動態 統計의 推計에 기초를 둔다. 出生力, 死亡力, 結婚率 등이 人口規模와 分布에 주는 效果의 分析은 장래 人口推計值가 계산될 수 있는 資料를 제공한다.

分析的 研究 : 人口推計와 밀접히 연관되어 人口學의 情況 分析과 未來의 發展 예측에 人口動態 統計가 이용된다. 地理的 地域 間 또는 地域 內의 여러 社會的 政治 的 問題에 대한 이들의 影響을 밝히기 위하여 出生, 死亡, 結婚, 離婚 등 諸率의 규모와 過程을 분석하는데 커다란 과학적 관심이 쏠린다.

結婚統計는 出生率과 人口增加에 관련지어서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國家經濟의 趨勢와 地方의 社會的 慣習의 指標로서 關心을 갖게 된다. 出生의 統計는 人口規模 및 特性의 研究에 있어 1次的 原因이지만, 社會的 差異에 의한 矯子 및 出生力 研究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社會的 問題에 관한 研究의 主要 要因이다.

死亡統計는 가장 복잡할 뿐만 아니라 公衆保健과 衛生條件에 대한 影響의 견지에서 가장 흥미있는 指數가 된다. 生命表, 再生產率, 코호트分析 등과 같은 指數의 計算 및 研究은 人口學의 分析을 위해 사용되는 技術이다.

이들 모든 分析的 技術은 완전하고 정확하며, 자세한 일련의 人口動態 統計를 요구한다. 모든 人口學的 要因의 相互關聯性과 經濟 및 社會的 要因과의 個別的 또는 綜合的 關聯性은 人口政策이 立案되는 人口學의 研究의 基礎를 형성한다.

醫學的 研究 :

人口學의 研究에 있어 人口動態 統計의 役割에 대단히 밀접히 연관지어, 研究에 종사하는 醫學專門職이 이들 統計를 利用한다. 人口學의 研究과 같이 醫學 및 藥學의 研究은 어떤 많은 數의 도표를 요하며 적어도 부분적으로 死亡 및 出生 統計가 이들을 위하여 이용된다.

肺炎, 癌, 心臟循環系 疾病과 같은 死因에 관한 研究은 死亡率에 의하여 나타남과 같이 이들 死因으로 死亡한 數에 관심을 갖는데서 시작된다. 예컨대 당뇨병에서의 死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治療法이 모색되고, 死因으로서의 盲腸炎은 일찍이 높았던 死亡率에 대하여 시작된 研究의 結果로서 대체로 제거되었다. 鉛中毒과 같은 職業病的 統計는 產業衛生 措置를 확립케 하였다. 母性 및 嬰兒 死亡率 水準은 妊娠 및 產後管理의 問題에 접근하는 醫學專門職에 影響을 준다.

死亡統計에 의하여 적어도 部分的으로 豫防醫學에 있어서의 많은 問題가 경감되었고, 더 나아가서 治療的 措置의 充分度는 최종 分析에서 이들 同一 統計에 반영

된다. 스트렙토마이신에 반응하는 結核死亡率, DDT에 반응하는 말라리아 死亡率 抗生劑에 반응하는 母性死亡率 등의 趨勢는 명확히 이 과정의 2次 段階를 묘사하는 것이다.

(나) 公共 및 私立 行政에서의 利用

一般 統計 및 人口動態 統計는 先進 또는 後進地域의 經濟 및 社會開發의 모든 公的 事業을 수행하는 公共 및 私立 行政에 필요한 基本的 要素이다. The United Nations Technical Assistance Administration¹¹⁾의 한 小委員會에 의하여 마련된 公共行政의 標準과 技術의 한 研究에 따르면, 「(經濟 및 社會開發이나 行政改革의 어느 事業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政府計劃에서) 기초적 資料 및 신뢰성 있는 統計없이 이룩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基礎的 統計는 出生, 死亡, 罹患 등을 나타내는 人口學的 및 社會的 分野에서 利用되어야 한다.…… 또한 同委員會는 進行이 이룩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統計는 嬰兒死亡率과 平均壽命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經濟 및 社會開發의 전반적 計劃 및 評價에 있어 人口動態 統計의 役割은 이들 資料가 둘 수 있는 가장 중요한 利用이다. 그러나 國民의 生命이란 특별한 측면과 연관해서, 중요한 것은 公衆保健의 分野에서 人口動態 統計를 利用하는 것이다.

公衆保健 機關의 利用

國家나 國際의으로 出生, 死亡, 胎兒死亡 등의 統計는 保健分野의 事業, 計劃, 運營, 評價에 요구된다. 公衆保健은 과거에 事業의 方向 및 範圍 결정을 위해 대체로 死因과 個人的 特性別 死亡統計에 의존하였다. 事業의 進歩 및 退步 兩者는 人口動態 指數에 의한 測定에 따른다. 嬰兒와 母性 死亡의 問題는 嬰兒死亡率과 母性死亡率로 出生率에 반영된다. 기타 諸率도 保健事業의 其他 側面과 관련된다.

嬰兒死亡率: 嬰兒死亡率은 環境과 個人養護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初年度의 生命 損失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保健 및 衛生 事業의 가장 민감한 指標로 고려된다. 또한 嬰兒死亡率은 保健看護事業의 效果와 간접적으로 產前管理의 充分성을 반영한다.

모든 胎兒, 初生 및 嬰兒 死亡 등을 포함하는 妊娠損失 問題의 크기는 現在 많은 注意를 경주하고 있는 것이며, 出生, 死産, 嬰兒死亡의 統計와 관련되는 것이다. 出生時 “早産”의 定義, 적용된 基準, 그와 같은 條件下에서의 生命의 기회 등 모든 것은 妊娠期間, 出生時 體重, 生命의 期間 등과 같은 特性으로 製表된 人口動態 統計의 分析에서 由來된다. 嬰兒死亡 報告와 出生記錄의 相關關係는 妊娠의 結果에 연관되는 年齡, 結婚狀態, 種族, 社會經濟狀態 등과 같은 어머니의 特性을 나타낸다.

胎兒死亡: 胎兒死亡의 진실한 測定値는 定義 規定의 문제와 완전한 申告 획득상의 難點으로 인하여 아직 이용되지 않지만, “後期 胎兒死亡”과 같은 이용 가능한 資料는 保健事業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 嬰兒死亡率이 최소로 감소된 國家에서, 醫

11) Standards and Techniques of Public Administr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Technical Assistance for Under-developed Countries. Report by the Special Committee on Public Administration Problems. United Nations. Document ST/TAA/M1, 20 November 1951, P 65.

學 및 保健 專門職의 注意는 胎兒死亡에 경주하기 시작한 것은 확실하다. Major Problems in Fetal Mortality¹²⁾ 報告書의 序文에서 同題目에 대한 이용 가능한 統計는 거의 없고, 胎兒死亡에 관한 완전한 統計를 획득하는데 難點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오늘날 胎兒死亡은 嬰兒死亡과 동등하거나 더 큰 醫學 및 社會的 問題가 된다는 것을 概略的 推定値는 밝히고 있다. 嬰兒死亡率의 減少가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保健的 關心은 妊娠損失의 問題에 경주되어야 할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母性死亡 : 극도로 높은 母性死亡率은 醫學的 研究 問題인 母性死亡原因 뿐만 아니라 이들 死亡이 일어난 環境에 관한 研究의 필요성을 示唆한다. 이것과 연관지어, 分娩介助者의 種類別 母性死亡의 製表는 家庭分娩 중에 母性死亡의 發生이 높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病院施設이나 기타 豫防措置의 증가를 정당화시키게 된다 .

死因 : 충분한 罹患統計 없이 예컨대 結核, 癌, 말라리아 등의 問題는 1차적으로 死因別 特殊死亡率로 묘사된다.

結核患者의 養護를 위한 病院은 死亡率에 의하여 표시되는 바와 같이, 보통 그 질병의 높은 發生에 대한 關心의 結果로 설립된다. 예컨대 結核管理를 위한 私立機關은 이들 事業의 긴급성 설정과 事業의 成敗를 평가하기 위하여 特殊死亡率을 이용한다. 年齡, 性, 種族別 結核死亡率은 研究 및 治療를 위한 資金配定 뿐만 아니라 學校와 家庭을 통한 保健教育의 方向 設定에 유용하다.

癌死亡率은 충분한 醫療, 疾病原因에 대한 研究, 가능한 새로운 종류의 治療法 등을 위해 필요하다. 職業, 種族, 年齡 등과 같은 어떤 要因別 癌死亡率은 事業을 資源의 가장 효과적 活用을 기하도록 하는데 이용된다. 또한 그들은 結核死亡率과 같이 그 問題에 대한 一般의 關心을 끌고, 保健教育의 가장 效率的인 分野를 제시하는데 이용된다.

특히 모든 保健問題 즉 環境衛生, 傳染病管理, 營養 등의 問題는 人口動態 統計의 分析을 통하여 더욱 명확히 제시한다. P. Granville Edge는 “組織화된 制度는 ① 신뢰할 수 있는 事實의 신속한 集成 ② 資料의 知的 解釋 ③ 이용 가능한 情報의 신속한 活性化¹³⁾ 등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 制度에서 人口動態 記錄은 公衆 保健의 知的 서어비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같이 保健問題의 묘사는 1次段階에 불과하다. 結果의 評價와 事業의 再評價는 순환하는 것이다.

保健機關 以外 政府機關의 利用

人口動態 統計는 保健과 관련된 機關 以外 政府機關의 事業에도 광범하게 利用된다.

12) Major Problems in Fetal Mortality, by J. Yerushalmy and Jessie M. Bierman. Federal Security Agency, Public Health Service, National Office of Vital Statistics, Vital Statistics-Special Reports, Selected Studies, Vol. 33, No. 13, Washington, 22. May 1952, P. 215.

13) Vital Statistics and Public Health Work in the Tropics Including Supplement on the Genealogy of Vital Statistics by P. Granville Edge, London, 1947, P. 3.

家族規模와 構成에 관한 資料는 물론 최근 및 추계된 出生, 死亡, 結婚의 諸率은 公共住宅 分野의 知的 및 재정적으로 현명한 計劃에 甚要하다. 다른 指數는 새로운 住宅의 위치설정에 필요한 人口의 規模 및 分布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못한다.

教師의 訓練은 물론 教育을 위한 物理的 施設의 供給은 出生 및 結婚率의 趨勢와 地理的 差異에서 표시된 要求와 조정되어야 한다. 社會保障制度는 물론 公共保險會社는 人口와 死亡率에서 계산된 生命表에 직접 의존한다. 기초적 人口動態 統計가 신뢰도 높고 충분하지 않는 한 계산된 數値는 오차가 있게 되고, 保險制度는 재정적으로 불건전하거나 일반인 그 자체가 과도한 保險料 支拂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生命表의 役割 以外에, 未亡, 再婚, 孤兒 등의 발생은 保險 coverage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政府統制下에 있는 地域의 食品供給은 出生 및 死亡率에 반영된 바와 같은 가능한 要求에 따라 계획된다. 한편 長期 經濟開發 計劃에서, 때로는 여러 地域 및 職業 部門의 勞動力 잠재공급의 아이디어 제공을 위하여 出生 및 死亡率에 의존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들 많은 問題 중에서 出生 및 死亡 統計 뿐만 아니라 結婚 및 離婚의 統計도 매우 중요하다. 人口動態 統計의 여러 형태는 教育, 住宅, 福祉 등 分野의 事業着手나 이미 진행되는 事業過程에 영향을 주는 주요 要因이 되는 것이다.

商業機關의 利用

商業分野에서 人口動態 統計의 가장 중요한 消費者는 保險機關이다. 保險統計 科學은 人口動態 統計에 뿌리를 박고 있고, 그 企業의 成敗는 統計의 信賴度에 두고 있다.

醫藥, 食品, 衣類, 家具, 其他 등과 같은 消費財의 所要 예측의 問題는 그 解決에 많은 부분을 人口動態 統計에 의존한다. 만약 장기간에 걸쳐 出生率이 높다면, 母性을 위한 衣類需要는 계속 높을 것이라고 안전하게 가정될 수 있고, 嬰兒를 위한 醫藥, 食品, 器具, 家具, 住宅 및 주택장식품 등의 需要도 높을 것이다. 앞으로 높은 出生率이 지속된다면 商業的 企業은 자라나는 兒童을 위한 衣類在庫의 확장, 住宅의 확장, 玩具 및 기타 유희器具 需要의 증가, 自動車, 기타 등을 위하여 안전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특히 結婚과 出生率의 人口動態 統計를 적용하는 한 分析인 廣告企業의 市場分析 機能도 이와 같은 범주로 논급될 수 있다.

人口成長의 전반적 효과 이 외에 최근의 死亡率과 그 地理的 分布는 醫藥品 生產者와 病院行政者로부터 葬儀社 및 棺製造業者까지 여러 商業機關의 企業計劃에 중요하다.

結婚數는 住宅産業에 중요하고, 結婚率의 趨勢는 貴金屬과 衣類 및 家具 生產者의 企業 展望에 영향을 준다.

어느 정도로, 人口動態 統計에 관심을 갖는 企業의 범위는 대단히 광범하다. 앞에서 제시한 實例는 人口動態 統計 制度의 產物로 뒷받침되는 商業的 利用의 程度

를 시사한 것에 불과하다.

2. 申告制度의 歷史

各 統計制度의 基本的 要因은 政府機關에게 이의 責任을 수행하는 權限과 資源을 규정하고 統計를 생산토록 인정하는 法規이다. 人口動態 統計의 경우에 보통 그와 같은 權能을 부여하는 法律이 있고, 흔히 一般 “統計法”이외에 申告機能 자체를 위하여 마련한 法規가 있다.

人口動態 申告 法規는 보통 申告해야할 事件(events), 申告期限, 申告義務者, 申告場所, 申告되어야 할 情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記錄이 作成되어야 할 方法과 이의 維持, 이들 각 機能에 관한 申告管理所의 責任이나 義務 등을 特記하고 있다. 자세한 內容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共通의인 몇 가지 要素가 있다. 이들 基本的 要素는 法規의 義務의 또는 強制的 性格과 전국적 규모의 완전한 포괄(地域 및 種族)이다.

〈表 1-1〉은 世界 主權國家 중 義務申告의 發展을 요약한 것으로서, 申告制度의 창설과 出生 및 死亡의 義務의 法規의 實施 時期를 年度別로 나타낸 것이다.

이 表에서 과거 1850年에서 1949年의 100年 間에 40個 國家가 義務的 申告制度를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國家는 대부분 아시아와 南美 諸國이며, 이들의 대부분은 19세기의 최종 4분기 기간에 戶籍申告法을 제정하였다.

〈表 1-1〉 年度別 義務의 人口動態申告 實施 國家數(1950年 1月 1日 現在)

實 施 年 度	國 家 數
1625—1649	2
1650—1674	0
1675—1699	2
1700—1724	0
1725—1749	1
1750—1774	0
1775—1799	5
1800—1824	2
1825—1849	1
1850—1874	9
1875—1899	14
1900—1924	8
1925—1949	9
行政區域에 따라 다른 國家	5
未詳	2
全地域을 통계할 法規가 없는 國家	5
計	65

資料 : United Nations, Handbook of Vital Statistics Methods, 1965, P. 24.

1850年 以前에 義務的 申告를 규정한 國家는 13個國에 불과하다. 이들은 申告가 시작된 유럽諸國이며, 敎會의 機能으로 유지되고, 나폴레온 法典에 의하여 강력히 영향을 받았다.

人口動態 申告는 聯邦이나 國家의 責任이 아닌 道나 州의 責任이었던 國家는 캐나다, 美國, 아르헨티나, 호주 등의 4個國이다. 이들 國家의 歷史는 대체로 유사하다. 1850~1949年 기간에, 아르헨티나의 15個 모든 道, 美國의 48個 州 중 42個 州, 캐나다의 10個 道 중 8個 道, 호주의 8個 州 및 領土 중 4個 등이 出生 및 死亡의 義務的 申告制度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義務的 申告制度는 대체로 1850年 以來 120年間 發展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人口動態 統計의 起源은 戶籍制度가 실시된 新羅時代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申告方法에 의하여 各家 各人의 身分關係를 記錄에 나타낸 것은 1915. 4. 1. 의 民籍法 一部 改定과 1915. 8. 7. 의 官通牒 이후부터로 볼 수 있다. 이 法의 改定을 통하여 과거의 戶口調査式 方法은 止揚되었다¹⁴⁾.

그러므로 法規에 근거를 둔 우리 나라의 人口動態 申告制度의 實施年度는 <表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國家에서 이 制度를 실시한 1900~1924년에 속할 수 있고, 歷史적으로 우리 나라 보다 훨씬 일찍 시작한 국가도 많으나, 그렇게 늦지 않은 시기에 실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4) 법정출판사, 호적실무총서, 1970, P. 47~49.

第 2 章 研究의 背景

1. 우리 나라 人口動態 統計의 現況

申告方法에 의하여 수집된 出生 및 死亡數에 관한 人口動態 記錄은 1910年 以後 부터 볼 수 있다. 1910~1937年까지 戶籍申告에 따른 行政統計로서 法院이 이 資料를 集計하였다.

1938년부터 朝鮮人口動態 調查規則이 制定 施行되어 信憑度 높은 資料가 생산되 었으나, 第 2 次大戰 기간에는 그 信憑度가 낮아졌다(表 2-1 참조). 1945年 8·15 解放 以前의 人口動態 統計는 요약해서 利用 가능한 수준의 信憑性을 갖는 것이며, 특히 1938~42年 기간의 人口動態 資料는 과거 우리나라의 信憑性¹⁵⁾ 있는 唯一한 資料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1945年 8·15 解放 이후 現在까지 利用가능한 人口動態 統計는 생산되지

8·15解放以前의 年度別 人口動態率 : 1928~42年

<表 2-1> (단위 : 千인당비율)

年 度	粗 出 生 率	粗 死 亡 率	自 然 增 加 率
1928	37.7	22.6	15.1
1929	37.9	23.9	14.0
1930	38.2	18.9	19.3
1931	35.5	20.3	15.2
1932	30.1	22.2	7.9
1933	29.1	19.3	9.8
1934	29.8	19.3	10.5
1935	29.3	19.7	9.6
1936	28.7	19.7	9.0
1937	28.8	17.7	11.1
1938	32.9	16.0	16.9
1939	33.3	16.9	16.4
1940	32.0	18.0	14.0
1941	32.5	16.2	16.3
1942	42.0	18.8	23.2

못하였다.

1945年 以後 人口動態를 담당하는 政府機構는 美軍政 官房(1945~1947.5.), 保健 厚生部(1947.6.~1948.6.), 公報處(1948.7.~1955.2.), 內務部(1955.2.~1961.7.) 등을 거쳐, 1961.7.以後 현재까지 經濟企劃院으로 변화하여 왔다.

經濟企劃院이 人口動態統計를 관장케 됨으로써 이의 改善을 위한 여러 側面에서

15) 金哲 : 韓國의 人口와 經濟, 岩波書店, 1965 P. 15.

의 努力이 경주되어 왔다. 1962년에 「統計法」을 제정하고, 이에 의거한 「人口動態 調査規則」은 院令으로 施行하여 法的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人口動態 申告率을 높이기 위하여 1961年 以後 「人口動態 申告強調期間」을 설정하여 계몽선전을 통한 申告 독려에 힘써 많은 效果를 거두었다.

그러나 申告를 통하여 수집되는 자료는 전혀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도가 낮았다. 그러므로 1963년부터 週期的 標本調査(年 4回實施)와 몇 가지 試驗 또는 特別調査로써 人口動態 水準을 파악하기 위한 努力도 경주하였으나 所期한 目的 達成에는 미치지 못 하였다.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이 1966년에 人口動態 申告資料를 人口動態 推定發生件數와 比較分析한 結果(表 2-2 참조)를 보면, 1966年 推定出生數에 대한 當年發生分

<表 2-2>

人口動態 申告狀況 : 1966年

區 分	出 生	死 亡
(1) 年間推定發生數(人)	1, 018, 000	291, 000
(2) 年間總申告件數	770, 147	157, 947
(3) 申告率 (2)/(1)×100	75. 7	54. 3
(4) 66년에 發生하여 當年에 申告한 件(件)	349, 711	122, 756
(5) 當年申告率 (5)/(1)×100	34. 4	42. 2

資料 : 經濟企劃院, 1966年 人口動態統計, 1968, P. 9

의 申告件數(1966년에 出生하여 1966년에 申告된 數)의 比率은 34. 4%, 死亡의 경우는 42. 2%였다.

金泉市와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한 1965年 1年間의 調査結果¹⁶⁾에 의하면 出生에서 32%, 死亡에서 27%로서, 이 結果는 全國申告 資料에서 分析된 것보다 특히 死亡에서 낮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록 人口動態 事件의 發生과 동일한 年度에 申告되었을지라도, 法定申告期限을 고려하여 실제의 發生日이 아닌 申告日과 가까운 期日(法定申告日 以內, 出生인 경우 發生後 14일 이내임)을 發生日로 申告하는 傾向이 많다. 이러한 傾向은 發生年度와 동일한 年度에 申告된 資料에 過年度 發生分을 많이 포함시킬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出生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앞의 자료에서 제시된 當年發生分의 當年申告率은 실제 發生日을 고려할 때 이보다 훨씬 낮을 수 있음이 지적된다.

2. 人口動態 申告 不振理由와 이의 改善努力

人口動態 申告의 不振形態는 申告의 不履行 또는 遲滯申告로 區分될 수 있으나,

16) 梁在模, 外 5人: 韓國家族計劃事業의 支援方案과 正確한 人口動態統計의 把握을 위한 研究, 1969, P. 65-66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체신고이다.

각국에서 人口動態 事件의 申告期限을 法規로 규정하고 있고 이 期限滿了 후의 申告事件은 필연적으로 期限內 申告件과는 상태가 약간 다르다. 遲滯申告는 이러한 特定 申告期限을 넘긴 여러형태의 申告를 의미한다.

실제에 있어 法定期限 內에 完全한 신고가 이루어진 국가는 아직 하나도 없다. 하나 또는 몇 가지 이유로 어떤 事件은 期限을 넘겨 申告된다. 어떤 것은 신고기한을 수일 또는 몇주를 넘겨 신고되지만, 다른 것은 수년 지체되며, 어떤 경우 특정개인의 요구가 신고을 이행케 할 때까지 지체된다.

法定期限를 넘긴 申告의 문제는 주로 出生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出生신고의 지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냉담 또는 태만이 하나의 요인이지만, 기록에 대한 실제적 요구가 느껴지기 까지 우물 쭈물 미루는 습성은 더욱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와 반대로 死亡記錄의 이용은 신고가 즉각적인 것과 연관된다.

지체신고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비교적 발생후 단기한 내 신고와 發生 후 수년이 경과하여 신고한 人口動態 事件을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고려된다. 이 區分은 신고에 있어 장기 및 단기 지체를 야기한 주요인은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것이다. 의무의 태만, 잠정적인 이행 불능상태, 냉담 또는 기타 이유는 보통 事件 발생 후 다소 합리적 기한내에서 申告法規를 이행케 한다.

그러나 不正한 記入 또는 細項의 허위작성을 기도하는 意圖는 事件發生 후 수년 또는 직접적 증거가 소멸되는 시기에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

申告不振을 惹起케 한 諸原因은 여러 側面에서 把握이 可能하다. 우리나라는 經濟企劃院을 위시하여 관심있는 研究者에 의하여, 申告不振 理由를 제시하고 이의 改善方向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된 바 있다.

먼저 申告義務者의 側面에서 파악된 申告不振 理由를 보면, 經濟企劃院이 1965年 5월에 서울시, 京畿道, 忠南 등의 일부 地域에서 밝힌 申告하지 않은 理由는 다음과 같다.

<出 生>

1. 申告期限이 너무 짧아서	27.4%
2. 申告期限을 몰라서	21.0%
3. 本籍地 申告가 귀찮아서	9.7%
4. 申告手續이 복잡해서	8.1%
5. 申告자체를 몰라서	6.5%
6. 申告전에 死亡하여	6.5%
7. 其他 7개항	20.8%
計	100.0%

<死 亡>

1. 相續手續 및 稅金 때문에	32%
------------------	-----

2. 申告期限이 짧아서	16%
3. 申告期限을 몰라서	8%
4. 死亡診斷書 등 手續 때문에	8%
5. 申告手續이 복잡하여	8%
6. 其他 4개항	28%
計	100%

1965年 10월에 經濟企劃院에 의하여 實施된 忠南 大德郡의 事列研究에서 밝힌 申告하지 않은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出生>

1. 適期申告하면 進學이 어려워서	31.6%
2. 申告期限이 너무 짧아서	23.2%
3. 申告期限을 몰라서	10.6%
4. 申告制度 자체를 몰라서	8.0%
5. 其他 6개항	26.6%
計	100.0%

<死亡>

1. 申告期限이 너무 짧아서	26.2%
2. 申告制度 자체를 몰라서	15.5%
3. 申告期限을 몰라서	15.1%
4. 出生 申告를 안했기 때문에	10.4%
5. 申告하여도 實利가 없어서	8.5%
6. 其他 5개항	24.3%
計	100.0%

人口動態調査 改善 推進委員會가 1966년에 지적한 申告不振의 주요 要因은 無籍者가 많다는 이유를 포함한 22個 事項을 열거한 바 있다.

人口問題研究所는 1967년에 52名の 區, 市, 邑, 戶籍擔當者에게 보낸 質疑書를 分析하여 申告不振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1. 認識不足으로	25.8%
2. 經濟的 理由로	23.0%
3. 社會文化的 理由로	34.2%
4. 其他	17.0%
計	100.0%

한편 申告業務 擔當者와 申告制度의 側面에서도 申告不振을 제시한 人口問題研究所¹⁷⁾의 人口動態統計 改善方案은 다음 3개 方向에서 우리 나라 人口動態統計의

17) 人口問題研究所, 人口動態統計 改善方案, 1967.

改善을 건의하였다.

- (1) 申告業務에 대한 國民의 認識 向上
- (2) 申告義務 및 蒐集業務에 대한 行政力의 強化
- (3) 現 申告制度의 改善

이외에 崔仁鉉¹⁸⁾ 특히 農村地域에 있어 現申告制度의 큰 弱點의 하나는 末端 行政部署인 邑·面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Notification System 과 母子保健奉仕의 제공을 통하여 人口動態 水準의 파악을 試圖한 事業이 1966~1967年의 1年間 金泉市와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바 있다¹⁹⁾

現在까지의 우리 나라 人口動態統計의 不振理由를 多角의 分析 評價하여, Dr. Eli S. Marks²⁰⁾는 “Vital Statistics and Population Growth Measurement”에서 계속적인 人口動態 申告制度를 확립하기 위하여

- ① 지나간 期間의 出生 및 死亡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面 接 조사가 실시될 계속적 家口標本
 - ② 家口調査의 完全性을 추정하고, 누락된 人口動態 事件의 調整을 위한 家口調査에 의하여 보고된 出生 및 死亡과 申告된 出生 및 死亡과의 Match
 - ③ 10~15 邑面의 標本에서 出生 및 死亡 申告의 向上을 위하여 邑面에서 活動할 特別造成員(經濟企劃院 統計局 또는 保健社會部 소속)의 配置
- 등으로 구성된 하나의 制度를 발전시킬 것을 建議하였다.

이 制度는 現實의 으로 導入할 수 있는 合理性과 實踐性을 검미한 것으로 고려되며, Dr. Marks 는 파키스탄에서 特別申告制度를 통하여 80~85%의 完全率을 성취하였음을 지적하고, 주의 깊은 訓練과 감독으로 韓國에서도 파키스탄과 동일한 좋은 成果가 얻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3. 外國의 人口動態統計 改善努力

Dr. Coale²¹⁾은 世界人口의 45~66%(中共포함하는 경우 66%)가 出生, 死亡, 結婚 등의 申告資料가 不完全한 地域에 거주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 不完全한 人口動態統計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地域은 開發途上 國家이다. 그러므로 이 統計를 改善하려는 努力이 여러 側面에서 경주되고 있다.

1968年 西파키스탄에서 개최된 CENTO²²⁾ (Central Treaty Organization) 5個國

18) 崔仁鉉, 韓國人口動態 統計의 現況과 問題點,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附設 人口研究所, 1967.

19) 梁在模의 5人, 韓國 家族計劃事業의 支援方案과 正確한 人口動態統計의 把握을 위한 研究, 1969.

20) Eli S. Marks, Vital Statistics and Population Growth Measurement, Recommendations on 197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and Vital Statistics, 1970, P. 103~109.

21) Ansley J. Coale, The Determination of Vital Rates in the Absence of Registration Data, The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Vol. XLIX, No. 4, Oct. 1971, P. 175.

22) CENTO, Proceedings of a Symposium Held in Karachi, West Pakistan Nov. 5~12, 1968.

의 Demographic Statistics 심포지움에 의하면, 터키,²³⁾ 이란,²⁴⁾ 東파키스탄,^{25) 26)} 등 國家에서 人口動態 申告의 問題點과 이의 改善策의 강구에 대단한 關心을 갖코 있다. 한편 Kenya²⁷⁾에서도 人口動態統計의 發展을 위한 노력의 일단을 볼수 있다.

특히 開發途上 國家의 不正確한 人口動態統計를 개선하려는 努力은 1945年 以後 현저하였다. Seltzer²⁸⁾는 아시아 5개 國家의 19個 研究事業을 검토하였고, 이 資料에서 나타난 研究方法 및 內容은 <表 2-3>과 같다.

이들 5개국의 人口動態 統計에 관한 調査는 두 개의 각각 다른 方法에 의한 資料 蒐集 結果를 比較해서 정확한 人口動態 및 申告狀態를 파악토록 되어 있다.

<表 2-3> 아시아 人口成長推定研究 資料 (by Seltzer)

Study number	Country	Period covered	Study name and area within country	Description of first system	Description of second system	Approximate population covered
1	India	1945	Singur Health Centre, Bengal	Civil registration	One-time household survey with approx. two-year recall	64,000
2	India	1946	Singur Health Centre, Bengal	Civil registration	One-time household survey with approx. one-year recall	64,000
3	India	1950-52	Mysore Population Study-three rural zones	Civil registration	One-time household survey with recall period varying from about one to two years	23,300
4	India	1950-52	Mysore Population Study-Bangalore City	Pregnancy history in one-time fertility and attitude survey with female interviewer	One-time household survey with recall period varying from about one to two years	1,011
5	India	1964	Gujarat sample registration scheme (Pilot) rural	Special registration by local resident serving as part-time registrar	Household survey conducted every six months by supervisor	36,000

23) Sabahaddin Alpat, Current Practices and Problems in Demographic Statistics, Turkey, 전게서 P. 57~64

24) Manouchehr Rais-Zadeh, Vital Registration System, Problems and Practices, Iran, P. 65~68.

25) M. A. Chaudhury, An Overview of the Sources and Method of Collection of Vital Statistics in East Pakistan, 전게서 P. 69~76.

26) Mahbud-ud-Din Ahmad, Problems and Prospects of Vital Registration in East Pakistan, 전게서, P. 77~82.

27) D. L. Huxtable, Vital Statistics Aid in Developing Countries, Amer J. Pub Health 57 : 504~8, 1967.

28) William Seltzer, Some Results from Asian Population Studies, Population Studies, (Nov. 1969) P. 395~406.

6	India	Holi 1964-May 1966	Vaso (Pilot) urban, Gujarat	Civil registration	One-time household survey with recall period of up to 28 months	9,480
7	India	December 1963-November 1966	Five villages in Mehrauli Block, South Delhi	Special registration by part-time non-resident registrar making fortnightly visits to local informants	Household survey conducted every six months by female interviewer	5,582
8	India	July 1965-June 1967	Kerala Sample Registration Scheme	Special registration by local resident serving as part-time registrar	Household survey conducted every six months by supervisor	260,000
9	Korea	October 1963-October 1965	Taeduk Gun Matching Project	Civil registration	One-time household survey with recall period of up to two years	100,000
10	Pakistan	January 1962-December 1965	Population Growth Estimation (PGE), East Pakistan	Special registration by full-time registrar living in the area and visiting local contacts on a regular basis	Household survey conducted every three months with one-year overlapping recall periods	42,000
11	Pakistan	January 1962-December 1965	Population Growth Estimation (PGE), West Pakistan	Special registration by full-time registrar living in the area and visiting local contacts on a regular basis	Household survey conducted every three months with one-year overlapping recall periods	42,000
12	Thailand	July 1964-June 1965	Survey of Population Change (SPC)	Civil registration	Household survey conducted every three months	172,000
13	Turkey	November 1965-October 1966	Turkish Demographic Survey (TDS) Region I (Central Anatolian Plateau) rural	Special registration by part-time local registrar making monthly household visits	Household survey conducted every six months by staff supervisor	32,500
14	Turkey	October 1965-September 1966	Turkish Demographic Survey (TDS) Region I (Central Anatolian Plateau) rural	Special registration by part-time local registrar making monthly household visits	Household survey conducted every six months by staff supervisor	38,100
15	Turkey	November 1965-	Turkish Demographic Survey (TDS) Region 2	Special registration by part-time local registrar	Household survey conducted every six months	29,700

		October 1966	(Black Sea Coastal Provinces) urban	making monthly household visits	hs by staff supervisor	
16	Turkey	October 1965-September 1966	Turkish Demographic Survey (TDS)-Region 2 (Black Sea Coastal Provinces) rural	Special registration by part-time local registrar making monthly household visits	Household survey conducted every six months by staff supervisor	37,600
17	Turkey	December 1965-November 1966	Turkish Demographic Survey (TDS)-Ankara City	Special registration by part-time local registrar making monthly household visits	Household survey conducted every six months by staff supervisor	24,900
18	Turkey	January 1966-	Turkish Demographic Survey (TDS)-Istanbul City	Special registration by part-time local registrar making monthly household visits	Household survey conducted every six months by staff supervisor	15,600
19	Turkey	February 1966-January 1967	Turkish Demographic Survey (TDS) Izmir City	Special registration by part-time local registrar making monthly household visits	Household survey conducted every six months, staff supervisor	13,400

자료 :

- Study 1. C. Chandrasekaran and W. Edwards Deming, 'On a method of estimating birth and death rates and the extent of registr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44, 245 (1949), Table I.
- Study 2. C. Chandrasekaran and W. Edwards Deming, loc., cit., Table 1.
- Study 3. United Nations, *The Mysore Population Study*,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Studies No. 34 (New York, 1961), Tables 16.2 and 16.5
- Study 4. United Nations, op. cit., Tables 16.6 and 16.7
- Study 5. D.C. Mehta and M.H. Shah, *Report on Sample Registration Scheme (Pilot), Rural Gujarat*, Director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s (Health) Gujarat (Ahmedabad, 1966), p. 9. Data refer to resident population only.
- Study 6. D.C. Mehta, *Report on Under-Registration Study (Pilot), Urban Vaso Project Gujarat*, State Bureau of Health Intelligence, Directorate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s (Health) Gujarat (Amedabad, 1967), pp. 7-8. Data refer to resident population only.
- Study 7. D.V.R. Murty and P.K. Jain, 'Report on Pilot Sample Registration Scheme in Five Villages in Mehrauli Block, South Delhi: December 1, 1963-November 30, 1966', Central Family Planning Institute, New Delhi, February 1967, Table 2. Mimeographed report labelled 'Preliminary'. Data refer to de

jure population and were obtained by summing the results presented separately for three 12-month periods.

- Study 8. Sample Registration Kerala State, 'Report No. 1 for the Period 1965-66', the Bureau of Economic and Statistics, Trivandrum, November 1967, Table V: and Sample Registration Kerala State, Report No. 2 for the Period 1966-67', the Bureau of Economics and Statistics, Trivandrum, August 1968, Table 6. Coverage estimates are derived from the summed unweighted sample data presented for individual 12-month periods in the cited tables. The text of 'Report No. 1 for the Period 1965-66' indicates (page 15) a Chandrasekaran-Deming estimates of 112 births and 32 deaths for the category missed by both systems during the 12-month period ending June 1966, the comparable estimates derived from the data shown in Table V are 124 births and 35 deaths. The source of this minor discrepancy is not known.
- Study 9. E. H. Choe, Problems and Adequacy of Vital Statistics in Korea, The Population Studies Centre, Publication Series No. 1,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April 1967, Table 4. Excludes registered events from outside survey area and survey events with Hojuk (Permanent domicile) outside survey area or in a different Myeon (township). For approximate population covered, see E. H. Choe, Registration and other Estimates of Vital Ev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ASTAT/CRVS/CR7), Paper presented at the ECAFE Seminar on Civil Registration and Vital Statistics, Copenhagen, July-August 1968, Table 8.
- Study 10. Farhat Yusuf, Population Growth Estimation: Studies in Methodology 1-Matching of Vital Event', Research Report No. 67 Pakistan Institute of Development Economics, Karachi, April 1968, Tables 3A and 3C. Data are based on unweighted de facto reports for eight sample areas in East Pakistan where both collection systems were in operation and summed over four calendar years. For approximate population covered, see Population Growth Estimation, Report of the Population, Growth Estimation Experiment: Description and Some Results for 1962 and 1963. Special Publication, Pakistan Institute of Development Economics, Karachi, 1968, Table II.
- Study 11. Farhat Yusuf, op. cit., Tables 3B and 3D. Data are based on unweighted de facto reports for eight sample areas in West Pakistan where both collection systems were in operation and summed over four calendar years. For approximate population covered, see 'Population Growth Estimation', op. cit., Table II.
- Study 12. National Statistical Office, 'Report of the Survey of Population Change: 1964-67',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Government of Thailand, Bangkok, February 1969, Tables 4 and 5. Mimeographed report labelled 'to be used as provisional report until publication is completed', Data refer to de jure population of the full sample and cover the first year of operation only. The est-

imated number of events shown in Tables 4 and 5 are obtained from the sum of individual estimates for population sub-groups.

Study 13-19. John C. Rumford, Yasar Heperkan and Nuray Fincancioglu, 'The Principles and Preliminary Results of the Turkish Demographic Survey', Public Health Reports, Vol. 83, No. 17 (July 1968), pp. 573-582, Table 4: and Turkish Demographic Survey, Vital Statistics from the Turkish Demographic Survey, 1965-66, School of Public Health,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Republic of Turkey, Ankara, 1967, Appendix Tables I. II and 26.

第 3 章 研究目的 및 範圍

1. 研究目的

人口動態 統計의 주요 利用者는 保健關係 機關이다. 本研究는 既存 人口動態 申告制度의 變化없이 保健從事員의 活動에 의하여 人口動態의 發生 파악과 이의 申告率을 向上시킬 수 있는 범위를 측정하는데 1次的 目的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本研究의 성격은 일정한 地域의 人口에 대한 保健從事員(本 研究에서는 人口動態 統計造成員이라고 稱하고 있음)의 자금투여에 의하여 나타나는 效果 즉 人口動態 事件의 發生과 이의 申告 向上 程度를 파악하는 Action Research Program 이다.

本 研究를 위하여 특별히 임명된 人口動態 統計 造成員은 現 申告制度下의 弱點이 되고 있는, 두 개의 주요 要因인

① 住民의 人口動態 申告에 대한 낮은 關心과 認識水準,

② 主管部處가 갖는 問題 즉 人口動態 統計 자체에 관심이 별로 없는 法院 감독 하에 戶籍申告가 이루어지고, 經濟企劃院은 資料의 집계를 맡고 있으나 現地에서의 資料수집이나 이의 직접적 改善을 위한 要員이 不足하고, 申告를 담당한 邑, 面 職員은 신고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에 열의도 부족하다.

이들 弱點의 시정에 活動目標을 두며, 活動方法은 계몽교육과 계속관찰이다.

造成要員의 活動은 全國 保健組織網을 통하여 이들 弱點을 해소시킴에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고려되며, 既存 人口動態申告 制度下에서 保健組織網이 人口動態申告의 向上에 기여할 수 있는 범위와 정도를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造成要員의 活動效果로 나타나는 人口動態 事件의 發生 및 申告結果는 別個의 資料蒐集(同一 地域의 同一 人口 對象으로 實施) 方法으로 比較評價토록 되어 있다.

이러한 本 研究의 特性을 감안하여 設定된 研究目的은 다음과 같다.

① 標本地域을 설정하여 기존 申告制度의 테두리 내에서, 人口動態統計 造成員을 활용하여 人口動態 統計의 蒐集이 개선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한다.

② 造成員에 의하여 파악된 人口動態 事件의 發生 및 申告結果는 別個의 調查 方法으로 수집된 資料와 比較 評價(matching study)하여 정확한 人口動態 諸率을 추정케 한다.

③ 標本地域에서의 造成員 活動 制度를 全國保健所로 확장시킬 가능성을 평가할 基礎資料를 제공한다.

2. 研究範圍

1) 研究期間

全體 研究期間은 1971년 7월 1일에서 1973년 2월 28일의 20개월이며, 이 중 1971

년 7월과 8월은 研究準備 期間이며, 人口動態 統計造成事業은 1971년 9월 1일날
터 착수되었다.

2) 標本抽出 및 研究對象

本 研究目的을 고려하여, 標本抽出은 事業成果의 比較分析, 將來 本 研究體系의
확장을 위한 行政區域別 標本 按配, 25個 事業地域 選定 등의 前提原則에 입각하고
研究事業의 重點은 農村地域에 두었다. 특히 本 研究는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이
1971年 10월에 實施한 人口動態 特別調查(CDS) 地域의 調查結果와 比較(matching)
分析이 가능토록 設計되어야 하기 때문에, 人口動態特別調查(CDS)의 標本抽出節
次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經濟企劃院의 CDS 標本の 母集團은 1970年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이 實施한 人
口센서스의 全體 調查區중에서 特別調查區 2,067個를 除外한 75,150個의 調查區로
하였고, 150個의 調查區가 標本으로 선정되었다.

抽出方法은 먼저 母集團을 서울, 市部, 郡部 등 3個의 副母集團으로 區分하여
各 副母集團 內에서 調查區는 人口의 크기 순으로 나열된 후, 1層當 約 1,000個
의 調查區를 갖도록 層化되었다. 즉 서울은 16個, 市部는 20個, 郡部는 39個로서
모두 75개로 層化되었다. 이와 같이 層化된 各層에서 2個의 調查區가 無作爲抽出
(random sampling)되어 모두 150個의 調查區가 抽出되었다.

本 研究事業 標本の 母集團은 以上과 같은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의 150個 CDS
標本調查區가 포함된 邑·面·洞으로 삼았다.

이 母集團에서 本 研究의 標本地域을 抽出함에 있어 앞에서 제시된 標本抽出의
前提原則과 事業의 重點地域을 고려하여, 25個 地域이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抽出
되었다.

서울과 市部에서 5個 洞(全 標本地域의 20%), 즉 서울에서 32個 調查區중 1個

<表 3-1>

地域別 母集團의 調查區數와 標本地域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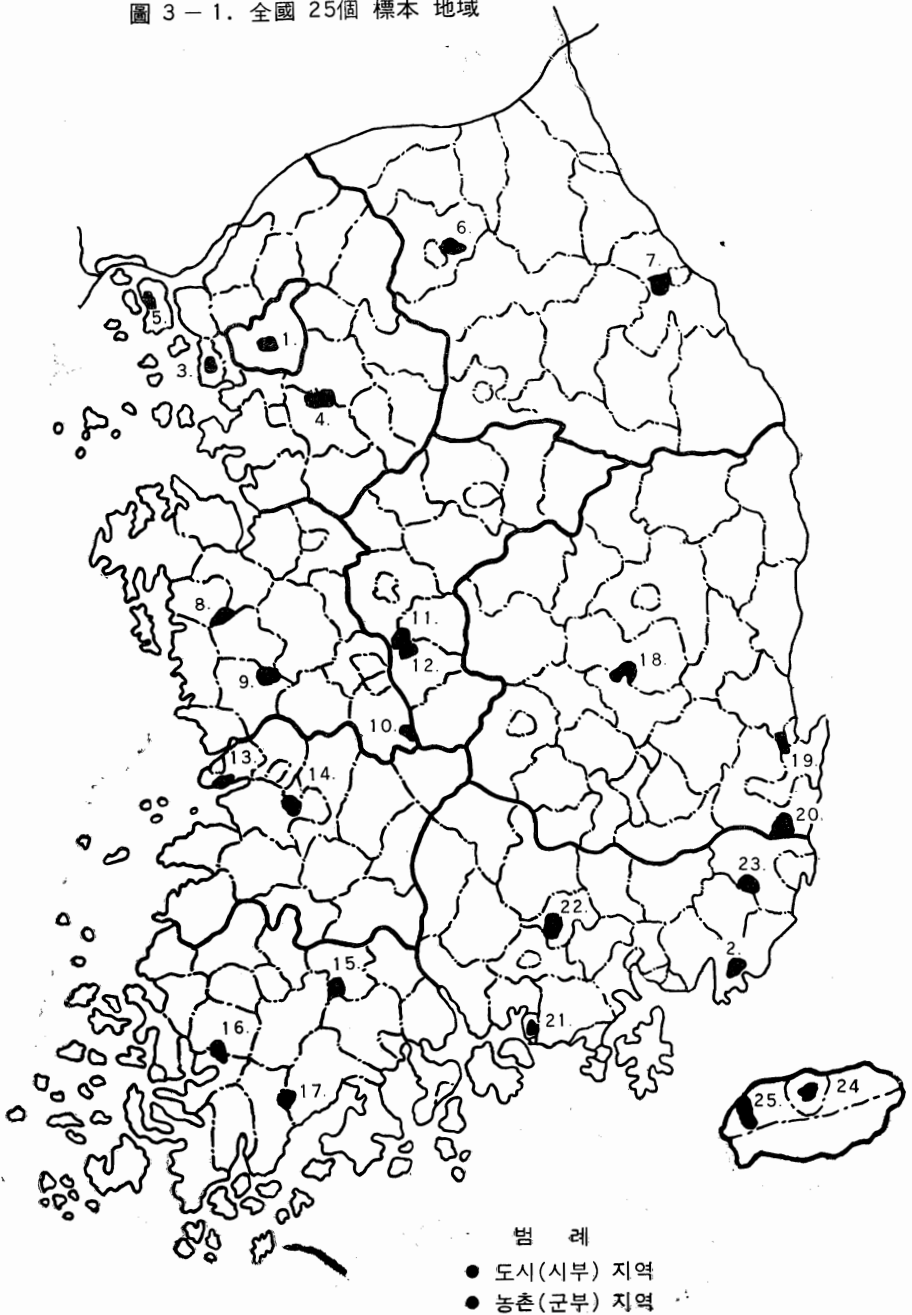
地	域	母集團 調查區數	標本地域數
(1) 서	울	32	1
(2) 市	部	40	4
(3) 郡	部	78	20
1) 경	기	10	2
2) 강	원	9	2
3) 충	남	12	3
4) 충	북	6	2
5) 전	남	11	3
6) 전	북	10	2
7) 경	남	6	2
8) 경	북	12	3
9) 제	주	2	1
	계	150	25

洞, 市部에서 40個 調査區중 4個洞 地域이 無作爲抽出되었다.

本 研究의 重點의 事業地域인 郡部에서 20個의 標本地域이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抽出되었다. 郡部에 속하는 78個 調査地域(母集團)을 먼저 道別로 分類하여 調査地域(母集團) 數의 크기에 따라 道別 標本地域數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標本抽出에 의한 地域別 標本地域數는 <表 3—1> 및 圖 <3—1>과 같다.

圖 3—1. 全國 25個 標本 地域



이와 같은 節次에 따라 抽出된 本 研究의 標本地域은 25個 邑·面·洞이며, 이들 各 標本地域은 1個 保健所 管轄 地域내에 있게 된다.

標本으로 抽出된 邑·面·洞의 全 地域 家口 및 家口員은 本 研究事業의 對象이 된다. 그러나 本 研究事業의 效果를 比較分析하기 위하여 各 標本地域은 造成地域과 對照地域으로 區分되었다. 造成地域 家口數는 對照地域의 약 2倍에 달한다.

한편 精確한 人口動態 事件의 發生과 申告狀態를 추정하기 위하여 比較地域(matching area)이 造成地域內에 선정되었다. 이 比較地域은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CDS 標本調査區이며, 本 研究結果를 調查統計局의 調查結果와 比較토록 계획된 地域이다.

以上 記述된 標本抽出方法에 의거하여 抽出된 25個 標本地域의 造成地域과 對照地域의 家口 및 家口員數는 <表3-2>와 같다.

地域別 造成地域과 對照地域의 家口 및 家口員數 (1971.9.1. 현재)

<表 3-2>

地域番號	地 域 名	計		造成地域		對照地域	
		家口數	家口員數	家口數	家口員數	家口數	家口員數
計		31,684	168,216	21,101	113,257	10,583	54,959
1	서울 용산 원효	950	4,345	555	2,489	395	1,856
2	부산 서구 대신	937	4,752	425	2,206	512	2,546
3	경기 인천 송월	956	4,548	682	3,245	274	1,303
4	용인 모현	1,116	5,995	759	4,080	357	1,915
5	강화 내기	1,244	6,058	759	3,687	485	2,371
6	강원 춘성 동면	1,064	6,190	789	4,628	275	1,562
7	명주 성산	1,069	5,743	713	3,710	356	2,033
8	충남 홍성 장곡	1,279	7,220	842	4,947	437	2,273
9	금산 제원	1,598	9,474	1,000	6,072	598	3,402
10	부여 부여	1,313	7,478	921	5,326	392	2,152
11	충북 보은 회남	1,060	6,161	691	4,004	369	2,157
12	옥천 안남	1,352	7,907	1,071	6,283	281	1,624
13	전북 옥구 회현	1,123	6,133	858	4,701	265	1,432
14	완주 이서	1,462	8,109	1,032	5,900	430	2,209
15	전남 곡성 곡성	1,343	7,207	991	5,349	352	1,858
16	나주 세지	1,425	7,827	969	5,284	456	2,543
17	보성 응치	1,057	5,760	754	4,154	303	1,606
18	경북 의성 봉양	1,623	8,578	1,046	5,291	577	3,287
19	영일 연일	1,584	7,997	1,022	5,184	562	2,813
20	월성 의동	1,690	8,965	1,124	5,963	566	3,002
21	경남 삼천포 동좌	733	4,361	383	2,452	350	1,909
22	의령 의령	1,309	7,123	880	4,845	429	2,278
23	울주 삼남	1,882	9,869	1,333	7,011	549	2,858
24	제주 제주 1도 동	972	4,224	542	2,510	430	1,714
25	북제주 한림	1,543	6,192	960	3,936	583	2,256

1971년 9월 1일 현재 造成地域의 總家口數는 21,101家口, 家口員數 113,257人이며, 對照地域의 總家口數는 10,583家口, 家口員數 54,959人이었다. 그리고 本研究의 總對象人口는 168,216人, 家口數는 31,684家口에 達한다.

3) 研究內容

研究內容은 基礎(家口)調査에서 利用된 家口現況 記錄票와 造成員의 活動結果를 報告하는 週末業績報告로 區分될 수 있다.

가. 基礎(家口)調査

- (1) 地域番號, 家口番號
- (2) 家口主 姓名
- (3) 現 住 所
- (4) 戶籍上 戶主姓名
- (5) 本 籍
- (6) 家口員 姓名
- (7) 家口主와의 關係
- (8) 性 別
- (9) 生年月日
- (10) 婚姻關係
- (11) 學 歷
- (12) 職 業
- (13) 轉入日字
- (14) 轉入前 住所
- (15) 轉出日字
- (16) 轉出地 住所
- (17) 住民登錄 確認
- (18) 出生(姓名, 性別, 發生日字, 申告與否 및 日字, 母의 年齡, 出生場所)
- (19) 死亡(姓名, 性別, 發生日字, 申告與否 및 日字, 死亡者年齡, 死因)
- (20) 婚姻 및 離婚(姓名, 性別, 發生日字, 申告與否 및 日字, 當事者의 年齡, 結婚期間)
- (21) 지난 2年間の 人口動態 事項(1969. 9. 1. ~1971. 8. 31.) 動態種類, 發生日字, 申告與否 및 日字 등.

나. 週末業績報告

가) 自然動態

- (1) 地域 및 家口番號
- (2) 家口主 姓名
- (3) 現 住 所
- (4) 應 答 者

- (5) 自然動態 種類(出生, 死亡, 死産)
- (6) 發見日字
- (7) 發生日字
- (8) 申告與否(申告日 또는 未申告 理由)
- (9) 確認(申告與否)

出生關係

- (1) 母의 年齡 및 姓名
- (2) 出生兒 性別
- (3) 出生順位
- (4) 出生場所

死亡關係

- (1) 死亡者 姓名
- (2) 死亡者 年齡
- (3) 死 因
- (4) 死亡場所

死 産

本 研究에서 除外하였음.

나) 社會動態

- (1) 地域番號 및 家口番號
- (2) 家口主 姓名
- (3) 應 答 者
- (4) 社會動態 種類(轉出, 轉入, 結婚, 離婚)
- (5) 發見日字
- (6) 發生日字
- (7) 申告與否(申告日 또는 未申告 理由)
- (8) 確認(申告與否)

人的事項

- (9) 姓 名
- (10) 年 齡
- (11) 性 別
- (12) 職 業
- (13) 轉出 또는 轉入前 住所
- (14) 離婚의 경우 結婚期間

3. 研究方法

研究方法은 크게 事業展開와 事業效果의 評價 즉 本 研究는 一定地域의 人口에 造成員의 活動으로써 人口動態 事件 發生의 파악과 이의 申告水準을 높이는데 주

요 목적을 둔 Action Program 이기 때문에 刺戟投與와 이 刺戟投與에 의하여 나타난 效果의 正確한 評價라는 두 側面에서 論述될 수 있다.

1) 刺戟投與

가. 造成員의 選定 및 訓練

本 研究事業의 效果는 人口動態統計造成員의 活動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造成員의 資質, 訓練 및 活動方法, 指導監督 등에 세밀한 주의를 집중하였다.

人口動態統計 造成員의 選定은 保健所 家族計劃指導員 중에서 保健所長이 本 研究事業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要員을 추천하고, 家族計劃研究院長은 이 추천된 要員에게 一定期間의 特殊訓練을 실시한 후 위촉하는 절차를 거쳤다.

造成員은 1次訓練으로 1971. 8. 9. ~ 8. 21. 의 2주간에 걸쳐 人口動態統計의 造成에 관한 理論과 實際에 관하여 훈련되었고(별첨 부록 訓練時間表 참조), 補修教育(2次 訓練)이 1972. 1. 18. ~ 1. 21. (4일간) 실시되었다.

나. 造成員의 活動

造成員은 造成地域(action area) 내의 人口動態 事件의 發生 把握과 申告의 向上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活動을 전개하였다.

主要活動方法은 한 地域社會 內에서 일어나는 여러 事件에 관한 情報에 밝고 타인의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例 面長, 里長, 어머니회장, 의사, 조산원, 동, 반, 구장, 기타 등)의 협조 획득, 가정방문, 읍면사무소의 협조 획득, 각종 선전 인쇄물의 배포 등으로써 이용 가능한 모든 方法을 活用하여 活動케 하였다.

活動方法은 訓練課程에서 강조되었고, 조성원명심서(별첨 부록 참조), 조성원활동지침(별첨 부록 참조)에 따르게 하여, 造成員 活動의 強度와 質을 均一化토록 노력하였다.

다. 造成員에 대한 指導監督

철저한 現地 指導監督이 本部 要員에 의하여 주기적(造成地域當 평균 1~2개월에 1回)으로 실시된다. 現地指導의 內容에는 報告結果(報告方法은 後述됨)의 지정 및 補完, 地域의 特性을 감안한 活動方案의 제시, 관계기관 즉 保健所, 邑 面事務所와 面·里長 등의 협조획득의 촉진, 지역사회 지도자 등의 원활한 협조획득의 조성 등이 포함된다.

한편 우편을 통하여 수시 各造成員이 當面한 問題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며, 모든 造成員이 갖는 問題의 解決에 관해서는 조성활동 업무지도서(별첨 부록 참조)를 보내어 이에 기준을 두도록 하였다.

업무지도서는 造成員이 當面한 문제 해결의 지침이 될 뿐 아니라, 造成員 報告 實績을 地域別로 中間集計한 結果도 첨가되어, 스스로 事業評價를 할 수 있는 資料로 利用된다.

2) 研究結果의 評價

가. 評價對象

造成員의 活動效果는 人口動態 事件發生의 發見과 이들 事件의 申告水準의 變動으로 나타난다.

本 研究에서는 研究事業 期間 중 造成事業이 시작된 1971년 9월 1일 이후에 발생한 人口動態 事件인 出生, 死亡, 婚姻, 離婚, 轉出入의 發見과 이들 事件의 申告 또는 登錄與否가 評價의 對象이 되었다. 그러므로 1971년 9월 1일 이전에 발생한 人口動態 事件은 本 研究의 對象에서 除外된다.

나. 評價方法

造成員에 의하여 投與된 刺戟의 效果를 正確히 測定하기 위하여 ① 各研究事業 地域은 刺戟이 投與되는 造成地域과 전혀 刺戟이 없는 對照地域으로 區分하여 造成地域의 事業成果를 對照地域의 경우와 比較分析하는 方法과 ② 別個의 方法에 (survey) 의하여 수집된 資料와 造成員 報告結果를 比較(matching)하여 正確한 人口動態事件의 發生水準을 파악하는 方法을 併用하였다.

한편 이들 두 評價方法을 適用하기에 앞서 研究對象 家口 및 人口의 特性和 過去 申告狀態를 파악하기 위한 基礎調査(baseline survey)가 실시되었다.

基礎(家口)調査(baseline survey): 基礎(家口)調査는 전국 25개 標本地域의 造成 및 對照地域 全역에 걸쳐 동일한 형태의 調査票(가구현황기록표)에 의거 1971년 9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이 調査의 目的은 ① Action Program 이 실시되기 이전의 家口 및 家口員의 人口學의 特性和 과거 2년간의 人口動態 事件의 發生 및 申告水準을 파악하여 造成事業의 效果測定을 위한 基準資料로의 利用, ② 調査研究 全期間에 걸쳐 造成員이 報告한 人口動態 事件의 發生과 申告狀態를 기록 보존하기 위한 가구현황기록표의 작성 ③ 造成地域과 對照地域間의 人口學의 特性和 과거 2年間의 人口動態 事件의 發生 및 申告水準의 差異比較 등을 위한 것이다.

基礎調査는 本部要員의 지도감독하에 各地域의 造成員에 의하여 약 1개월(지역 간에 표본규모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음)간 실시되었다.

造成員은 이 調査를 完了한 후 家口現況 記錄票는 本部로 송부하고, 家口要計票(별첨 부록 참조)를 갖고, 造成活動에 利用한다.

家口要計票에는 가구번호, 가구주 성명, 호적상 호주 성명, 현주소, 본적, 가입부수, 임신부 유무(임신기간), 거주신고 여부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對照地域과의 比較: 各造成地域에서의 造成員 活動 結果는 每週 1회 정하여진 날에 造成員에 의하여 本部에 報告된다. 週報의 報告樣式은 부록에 첨부되어 있다.

各 造成員은 造成地域에서 일어난 지난 1週間의 人口動態 事件의 發生 및 申告狀態를 보고하며, 申告與否는 戶籍簿 및 住民登錄表에 의거 확인된다.

造成地域의 事業效果는 1次的으로 전혀 刺戟의 投與가 없는 對照地域의 人口動

態 申告狀態와 比較함으로써 評價될 수 있다.

造成事業이 着手된 1971. 9. 1. 이후 6개월마다 造成地域과 對照地域의 申告結果가 比較分析된다.

比較地域(matching area)과의 比較 : 各 造成地域에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이 1971年 10월에 실시한 人口動態 特別調査 (CDS)區가 포함되어 있다.

당초 계획에서 經濟企劃院은 이 CDS 조사구에서 人口動態에 관한 調査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同조사구의 造成員 活動結果와 비교분석토록 되어 있었다. 즉 別個의 두 方法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比較分析해서 精確한 人口動態 水準을 추정하기 위한 CD Method²⁹⁾가 적용토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經濟企劃院의 사정으로 주기적 조사방법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本 研究院은 별도의 면접조사원을 채용하여 經濟企劃院의 조사방법 즉 주기적인 가구조사로써 人口動態 및 申告狀態에 관한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同一 期間, 同一 地域, 同一 人口에 대한 人口動態事件의 자료는 別개의 두 方法 즉 하나는 造成員, 다른 하나는 面接調査員에 의하여 수집되며, 이 두 資料는 本部에서 CD Method에 의거 比較 評價된다. 이 比較地域은 別첨 부록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調査家口要圖(enumeration district map)가 작성되어 있다.

29) C. Chandrasekaran and W.E. Deming; On a Method of Estimating Birth and Death Rates and Extent of Registr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44 (March 1949), P.101 155.

第4章 基礎調查 結果

1. 基礎調查의 目的 및 內容

第3章 研究目的 및 範圍에서 記述된 바와 같이 基礎調查(baseline survey)는 다음과 같은 目的을 위하여 本 研究의 主要部分인 人口動態 造成事業이 시작되기 以前인 1971年 8月 1개월 간(標本地域의 人口 및 地域의 크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에 恣行된 造成員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① 人口動態 造成事業이 實施되기 이전의 家口 및 家口員의 人口學的 特性과 과거 2年間の 人口動態 事件의 發生 및 申告水準의 파악.

② 造成地域과 對照地域 間의 人口學的 特性과 과거 2年間の 人口動態 事件의 發生 및 申告水準의 差異 與否와 이의 比較.

③ 本 研究 全期間에 걸쳐 造成員이 報告한 人口動態 事件의 發生과 申告狀態를 記錄으로 保存하기 위한 家口現況記錄表의 作成.

이들 記述된 基礎調查의 目的은 人口動態 造成事業의 效果測定을 위한 基準資料이며, 本 研究의 基礎가 된다.

調査基準日은 1971年 9月 1日이며, 本 調査는 全國 25개 標本地域의 造成 및 對照地域 全域에 걸쳐 동일한 형태의 調査表(가구현황기록표 별첨 부록 참조)를 사용하여 造成員에 의한 家口面接 調査方法에 의하여 實施되었다.

調査內容은 第3章에서 記述된 研究內容 또는 부록에 첨부된 家口現況記錄表와 같다.

家口現況記錄表는 3種의 색깔로 區分되어 있다. 黃色은 造成地域, 분홍은 對照地域, 靑色은 比較地域을 各各 나타낸다.

本 報告에서는 本 調査의 目的 중 ① 人口動態 造成事業이 시작되기 이전의 造成地域과 對照地域의 家口 및 家口員의 人口學的 特性과 과거 2年間の 人口動態 事件의 發生 및 申告水準의 파악 ② 造成地域과 對照地域間 이들 特性의 差異與否 및 比較分析에 관한 調査結果를 제시한 것이다.

2. 人口學的 特性

1) 家口 및 家口員數

本 調査에서 사용된 家口 및 家口員의 定義는 1966年 人口 센서스의 用語解說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家口 : 家口라 함은 1人(單獨家口) 또는 數人이 居住와 生計를 같이 하는 獨立的 모임을 말한다.

普通家口는 家口主를 중심으로 겨레붙이가 한테 모여 살거나 또는 1家口를 形成하여 살고 있는 單身者 家口를 말한다. 즉

① 家口主와 그 家族만이 살고 있는 집.

② 家口主 및 그 家族과 그 밖의 사람(下宿生, 同居人, 食母, 머슴, 店員)과 같이 살고 있는 집.

③ 혼자 살림하는 單獨家口 단, 獨立된 부엌 施設을 갖춘 살림 집.

本 調査에서는 普通家口만이 調査對象이 되었으며, 準家口는 除外되어 있다.

家口員은 以上 定義된 家口의 構成員이며, 이들은 本 調査의 對象人口에 해당한다. 調査對象人口은 인구 센서스에서 사용된 用語解說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調査日(1971年 9月 1日)을 基準으로 하여 調査地域에 常時 居住하는 者 全部가

<表 4-1> 地域別 造成地域과 對照地域의 家口 및 家口員數

地番	城號	地 域 名	計		造成地域		對照地域	
			家口數	家口員數	家口數	家口員數	家口數	家口員數
計			31,684	168,216	21,101	113,257	10,583	54,959
1		서 울 용 산 원 효	950	4,345	555	2,489	395	1,856
2		부 산 서 구 대 신	937	4,752	425	2,206	512	2,546
3		경 기 인 천 승 월	956	4,548	682	3,245	274	1,303
4		" 용 인 모 현	1,116	5,995	759	4,080	357	1,915
5		" 강 화 내 가	1,244	6,058	759	3,687	485	2,371
6		강 원 춘 성 동 면	1,064	6,190	789	4,628	275	1,562
7		" 명 주 성 산	1,069	5,743	713	3,710	356	2,033
8		충 남 홍 성 장 곡	1,279	7,220	842	4,947	437	2,273
9		" 금 산 제 원	1,598	9,474	1,000	6,072	598	3,402
10		" 부 여 부 여	1,313	7,478	921	5,326	392	2,152
11		충 북 보 은 회 남	1,060	6,161	691	4,004	369	2,157
12		" 옥 천 안 남	1,352	7,907	1,071	6,283	281	1,624
13		전 북 옥 구 회 현	1,123	6,133	858	4,701	265	1,432
14		" 완 주 이 서	1,462	8,109	1,032	5,900	430	2,209
15		전 남 곡 성 곡 성	1,343	7,207	991	5,349	352	1,858
16		" 나 주 세 지	1,425	7,827	969	5,284	456	2,543
17		" 보 성 응 치	1,057	5,760	754	4,154	303	1,606
18		경 북 의 성 봉 양	1,623	8,578	1,046	5,291	577	3,287
19		" 영 일 연 일	1,584	7,997	1,022	5,184	562	2,813
20		" 월 성 의 동	1,690	8,965	1,124	5,963	566	3,002
21		경 남 삼천포 동 좌	733	4,361	383	2,452	350	1,909
22		" 의 령 의 령	1,309	7,123	880	4,845	429	2,278
23		" 울 주 삼 남	1,882	9,869	1,333	7,011	549	2,858
24		제 주 제 주 1도동	972	4,224	542	2,510	430	1,714
25		" 북제주 한 립	1,543	6,192	960	3,936	583	2,256

調査對象 人口가 된다. 常時居住者는 調査日을 기준으로 하여 同一한 場所에서 居住한 期間, 居住하려는 期間 또는 이를 通算한 期間이 3個月 以上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특수한 人口는 除外되어 있다.

全國 25個 標本地域의 地域別 家口 및 家口員數는 表 <4-1>과 같다.

造成地域의 總 家口數는 21,101家口, 對照地域의 總 家口數는 10,583家口로써 本研究의 總 對象家口數는 31,684家口이다.

總 研究對象 人口는 造成地域 113,257人, 對照地域 54,959人으로써 168,216人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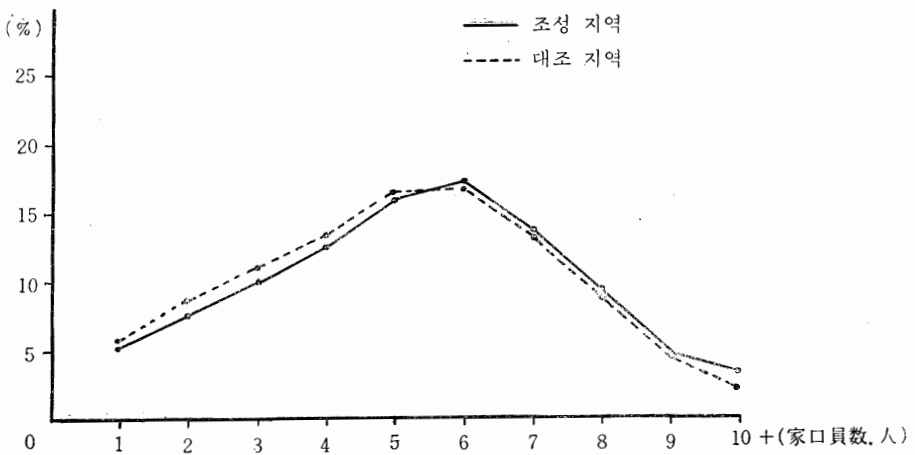
25個 造成地域當 家口數의 範圍는 最少 383家口(地域番號 21), 最大 1,333家口(地域番號 23)이며, 造成地域當 平均 家口數는 844家口, 人口는 4,530人이다.

<表 4-2> 造成地域과 對照地域의 家口員數別 家口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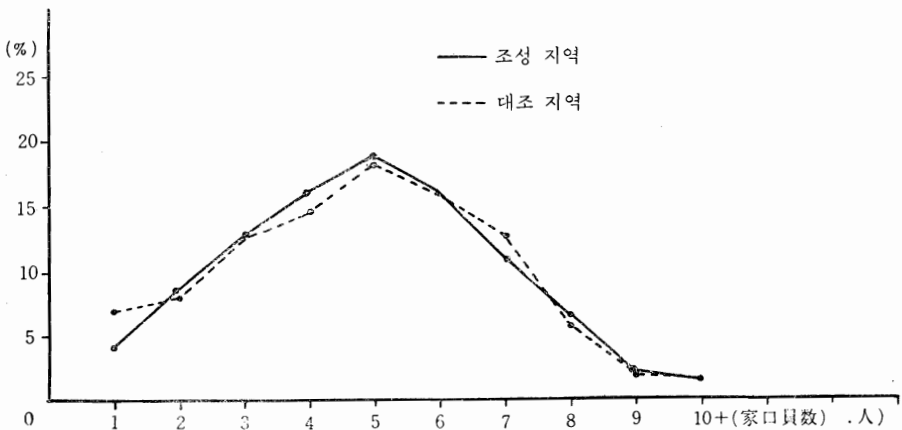
家 口 當 家口員數(人)	造 成 地 域		對 照 地 域	
	都 市	農 村	都 市	農 村
	家 口 數			
計	2,587	18,514	1,920	8,663
1	106	946	129	507
2	230	1,404	165	745
3	331	1,836	254	951
4	424	2,317	277	1,141
5	484	2,950	346	1,426
6	430	3,203	303	1,445
7	294	2,582	254	1,139
8	173	1,732	115	754
9	67	876	43	383
10+	48	669	34	172
	構 成 比(%)			
計	100.0	100.0	100.0	100.0
1	4.1	5.1	6.7	5.9
2	8.9	7.6	8.6	8.6
3	12.8	9.9	13.2	11.0
4	16.4	12.5	14.5	13.2
5	18.7	15.9	18.0	16.5
6	16.6	17.3	15.8	16.7
7	11.4	13.9	13.2	13.1
8	6.7	9.4	6.0	8.7
9	2.6	4.7	2.2	4.4
10+	1.8	3.5	1.8	2.0
(平均家口員數)	(5.1)	(5.4)	(4.8)	(5.3)

家口員數別 家口分布는 表 <4-2>와 <圖 4-1> 및 <圖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造成地域이나 對照地域에서 都市는 5人家口, 農村은 6人家口에서 가장 높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造成地域과 對照地域 間의 家口員數別 家口分布의 差異는 별로 없다. 다만 造成地域은 對照地域에 비하여 都市에서 4人家口 比率이 약간 높은 반면 1人 및 7人家口 比率이 약간 낮고, 農村에서는 5人以下 家口 比率이 일률적으로 약간 적 낮은 반면 6人以上 家口 比率은 약간 높다. 그러나 이들 差異는 크지 않은 것이다



<圖 4-1>



<圖 4-2>

家口當 平均 家口員數는 造成地域에서 5.4人, 對照地域에서 5.2人이며, 다시 都市 및 農村으로 區分하면, 造成地域의 都市當 平均 家口員數는 5.1人, 對照地域에서 4.8人이며, 農村의 家口當 平均 家口員數는 造成地域에서 5.4人, 對照地域에서 5.3人이다.

25個 標本地域別로 造成地域과 對照地域의 家口當 平均 家口員數는 表 <4-3>과 같다. 各 地域別로 대부분 同一 하거나 근소한 差異를 나타내지만, 標本地域番號 8, 14, 21, 24에서 비교적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差異의 특징은 造成地域이 對照地域 보다 平均 家口員數가 많다는 것이며, 이는 몇個 地域이 基礎調査에서 對照地域 보다 造成地域에 努力의 力點을 두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같이 보인다. 그러나 造成地域과 對照地域 間에 家口 및 家口構成의 差異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表 4-3> 地域別 家口當 平均家口員數

地 域 番 號	造 成 地 域(1)	對 照 地 域(2)	差 異(3)=(1)-(2)
計	5.4	5.2	0.2
1	4.5	4.7	-0.2
2	5.2	5.0	0.2
3	4.8	4.8	0
4	5.4	5.4	0
5	4.9	4.9	0
6	5.9	5.7	0.2
7	5.2	5.7	-0.5
8	5.9	5.2	0.7
9	6.1	5.7	0.4
10	5.8	5.5	0.3
11	5.8	5.8	0
12	5.9	5.8	0.1
13	5.5	5.4	0.1
14	5.7	5.1	0.6
15	5.4	5.3	0.1
16	5.5	5.6	-0.1
17	5.5	5.3	0.2
18	5.1	5.7	-0.6
19	5.1	5.0	0.1
20	5.3	5.3	0
21	6.4	5.5	0.9
22	5.5	5.3	0.2
23	5.3	5.1	0.2
24	4.6	4.0	0.6
25	4.1	3.9	0.2

한편 1970年 人口센서스에 의한 地域別 家口當 平均 家口員數는 都市에서 5.2人 農村에서 5.6人 이었다.

本 調査 結果는 人口센서스 結果보다 약간 낮다. 이 差異는 調査對象이 된 家口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다. 本 調査에서는 普通家口만을 對象으로 하였고, 人口센서스에서는 準家口를 포함시켰다. 그러므로 人口센서스에 의한 家口當 平均 家口員數는 本 調査 結果 보다 항상 높게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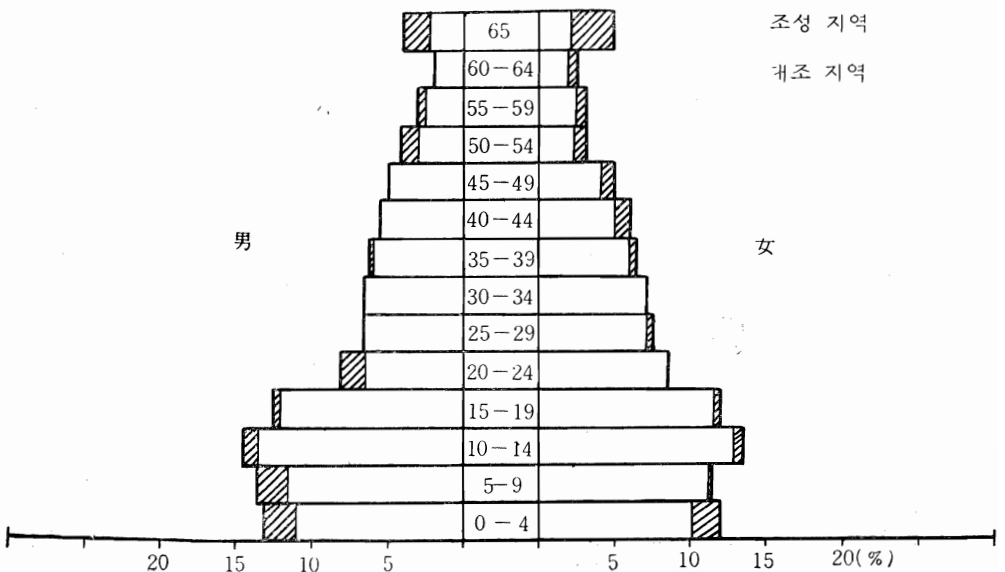
2) 人口構造

造成地域과 對照地域 間의 性別, 年齡別 人口構造는 表 <4-4>와 같다.

都市와 農村으로 區分하여 造成地域과 對照地域을 人口 피라미드로 比較한 것은 <圖 4-3> 및 <圖 4-4>와 같다.

性別, 年齡別 人口構造는 造成地域이나 對照地域의 都市 및 農村에서 대체로 유사하다.

그러나 都市地域에서 특히 0~4歲 人口比率이 造成地域에서 약간 높은 반면, 65歲以上の 人口比率은 對照地域에서 약간 높다. 이 差異는 標本人口의 규모가 적은 데서 올 수 있는 範圍內的 것으로 추정된다. 標本規模가 비교적 컸던 農村地域의 造成地域과 對照地域 間의 年齡別 人口構造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



<圖 4-3>

〈表 4—4〉

造成地域対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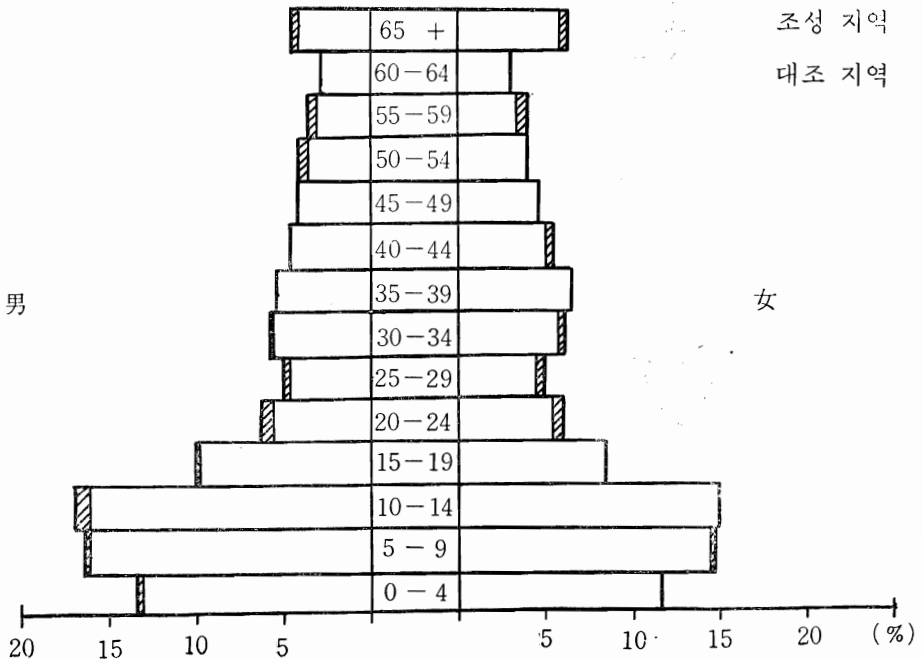
年 齡	造 成 地 域					
	都 市			農 村		
	計	男	女	計	男	女
	人 口					
計	12,902	6,449	6,453	100,355	50,388	49,967
0—4	1,607	839	768	12,695	6,634	6,061
5—9	1,574	856	718	15,603	8,224	7,379
10—14	1,793	925	868	15,883	8,398	7,485
15—19	1,570	805	765	9,435	5,003	4,432
20—24	969	418	551	5,365	2,687	2,678
25—29	892	422	470	4,922	2,434	2,488
30—34	885	419	466	5,786	2,846	2,940
35—39	861	403	458	5,821	2,714	3,107
40—44	755	37	384	4,912	2,224	2,691
45—49	642	318	324	4,454	2,177	2,277
50—54	465	259	206	3,976	1,913	2,063
55—59	307	156	151	3,548	1,697	1,851
60—64	240	122	118	2,889	1,340	1,549
65	342	136	206	5,063	2,097	2,966

構 成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	12.5	13.0	11.9	12.7	13.2	12.1
5—9	12.1	13.3	11.1	15.5	16.3	14.8
10—14	13.9	14.3	13.5	15.8	16.7	15.0
15—19	12.2	12.5	11.9	9.4	9.9	8.7
20—24	7.5	6.5	8.5	5.3	5.3	5.4
25—29	6.9	6.5	7.3	4.9	4.8	5.0
30—34	6.8	6.5	7.2	5.8	5.6	5.9
35—39	6.7	6.2	7.1	5.8	5.4	6.2
40—44	5.9	5.8	6.0	4.9	4.4	5.4
45—49	4.9	4.9	5.0	4.4	4.3	4.6
50—54	3.6	4.1	3.2	4.1	3.8	4.1
55—59	2.4	2.4	2.3	3.5	3.4	3.7
60—64	1.9	1.9	1.8	2.9	2.7	3.1
65	2.7	2.1	3.2	5.0	4.2	5.9

地 域 の 年 齡 別 人 口 構 造

對 照 地 域					
都 市		農 村			
計	男	女	計	男	女
數 (人)					
9,342	4,616	4,726	45,617	22,784	22,833
1,017	530	487	5,775	2,980	2,795
1,086	545	541	7,006	3,677	3,329
1,250	628	622	7,135	3,684	3,451
1,140	584	556	4,213	2,217	1,996
759	352	407	2,611	1,348	1,263
672	338	334	2,150	1,034	1,216
656	328	328	2,478	1,238	1,240
606	302	304	2,664	1,241	1,423
569	284	285	2,224	1,044	1,180
449	216	233	2,015	929	1,086
297	146	151	1,848	911	937
281	140	141	1,691	804	887
204	91	113	1,388	646	742
356	132	224	2,419	1,031	1,388
比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9	11.5	10.3	12.7	13.1	12.2
11.6	11.8	11.4	15.4	16.1	14.6
13.4	13.6	13.2	15.6	16.2	15.1
12.2	12.7	11.8	9.3	9.7	8.6
8.1	7.5	8.7	6.4	6.6	6.2
7.2	7.3	7.1	4.7	4.5	4.4
7.0	7.1	6.9	5.4	5.5	6.1
6.5	6.5	6.4	5.8	5.4	6.2
6.1	6.2	6.0	4.9	4.6	5.2
4.8	4.7	4.9	4.4	4.1	4.8
3.2	3.2	3.2	4.1	4.1	4.1
3.0	3.0	3.0	3.7	3.5	3.9
2.2	2.0	2.4	3.0	2.8	3.2
3.8	2.8	4.8	5.3	4.5	6.1



〈圖 4-4〉

3) 地域間 特殊年齡層 比較

25個 各事業地域別로 造成地域과 對照地域 間的 年齡構造의 差異를 알기 위하여 全體人口에 대한 14歲以下 및 60歲以上 人口比率을 25個 地域別로 算出해 보았다.

造成地域과 對照地域 間的 全體人口에 대한 14歲以下 人口比率은 表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造成地域은 41.7%, 對照地域은 40.8%로써 造成地域에서 不過 0.9% 높다.

한편 都市와 農村으로 區分하여 造成地域과 對照地域 間的 0~14歲 人口比率을 比較하면, 都市에 있어 0~14歲 人口比率은 造成地域에서 38.5%, 對照地域에서 35.9%로써 2.6%, 農村地域의 0~14歲 人口比率은 造成地域에서 44.0%, 對照地域에서 43.7%로써 0.3%의 差異가 난다.

1966年 人口센서스에 의한 0~14歲 人口比率은 市部에서 40.1%, 郡部에서 45.2%였고, 1971年은 市部 37.8%, 郡部 42.7%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本 調査結果는 이들 推定値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25個 各地域別로 造成地域과 對照地域 間 14歲 以下 人口比率을 보면, 地域番號 7, 13, 16, 21에서 比較的 큰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其他地域은 造成地域과 對照地域 間에 큰 差異없이 거의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5個 地域別 全體 人口에 대한 60歲 以上 人口比率은 表 <4-6>과 같다.

都市에 있어 60歲 以上 人口比率은 造成地域 4.6%, 對照地域 6.0%였고, 農村에 있어서는 造成地域 7.9%, 對照地域 8.3%로써 對照地域이 都市 및 農村에서 약간 높다.

地域別 14歲以下 人口比率

<表 4-5>

(全人口에 대한 14세이하 人口比(%))

地 域 番 號	造 成 地 域	對 照 地 域	差 異
計	41.7	40.8	0.9
1	33.5	31.3	2.6
2	33.5	32.8	0.7
3	39.9	40.9	-1
4	42.7	40.2	2.5
5	39.5	41.7	-2.2
6	43.3	44.4	-1.1
7	38.1	41.8	-3.7
8	44.3	45.9	-1.6
9	42.3	43.3	-1.0
10	45.2	48	-2.8
11	44.2	44.7	-0.5
12	45.0	47.8	-2.8
13	40.7	37.2	3.5
14	44.1	43.7	0.4
15	45.6	41.6	4.0
16	46.4	50.2	-3.8
17	44.2	45.4	1.2
18	38.9	39.6	-0.7
19	38.5	36.3	2.2
20	37.1	34.6	2.5
21	47.8	43.9	3.9
22	44.8	44.4	0.4
23	37.1	35.3	1.8
24	39.9	37.5	2.4
25	40.1	41.0	-0.9

1966年 人口센서스에 의한 60歲 以上 人口比率은 都市에서 3.5%, 農村에서 6.0% 였고, 1971년에는 都市에서 3.9%, 農村에서 7.1%로 각각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人口센서스 및 推定値에 비추어 本 調査 結果는 약간 높다.

25個 標本地域別로 造成地域과 對照地域間의 60歲以上 人口比率은 表 <4-6>과 같이 差異가 없다. 그러나 비교적 큰 差異를 보인 調査地域番號는 1, 5, 10, 24 였다.

4) 結婚狀態

標本地域의 結婚狀態別 人口分布는 <表 4-7>과 같다. 結婚狀態는 未婚, 有配偶, 死別 및 其他로 區分해서, 全人口에 대한 比率로 표시되어 있다.

男子 未婚比率은 造成地域 都市에서 63.3%, 對照地域 都市에서 59.3%로써 都市地域의 男子 未婚比率은 造成地域과 對照地域 間에 差異가 거의 없다. 農村 男

地域別 60세以上 人口比率

<表 4-6>

(全人口에 대한 60歲이상 人口比(%))

地 域 番 號	造 成 地 域(1)	對 照 地 域(2)	差 異(3)=(1)-(2)
計	7.8	7.8	0
1	5.0	7.2	-2.2
2	4.4	4.3	0.1
3	3.6	2.8	0.8
4	9.1	10.1	-1.0
5	9.9	7.5	2.4
6	6.8	5.4	1.4
7	10.9	8.3	2.6
8	7.4	7.5	-0.1
9	7.1	6.4	0.7
10	8.0	5.9	2.7
11	8.5	9.2	-0.7
12	8.5	7.9	-0.6
13	7.5	7.8	-0.3
14	7.0	7.7	-0.7
15	7.6	8.9	-1.3
16	7.5	7.4	-0.1
17	9.9	8.4	1.5
18	6.9	8.4	-1.5
19	8.4	8.8	-0.4
20	10.0	9.0	1.0
21	5.7	5.9	-0.2
22	6.5	6.8	-0.3
23	7.9	8.5	-0.6
24	4.4	10.4	-6.0
25	12.1	12.2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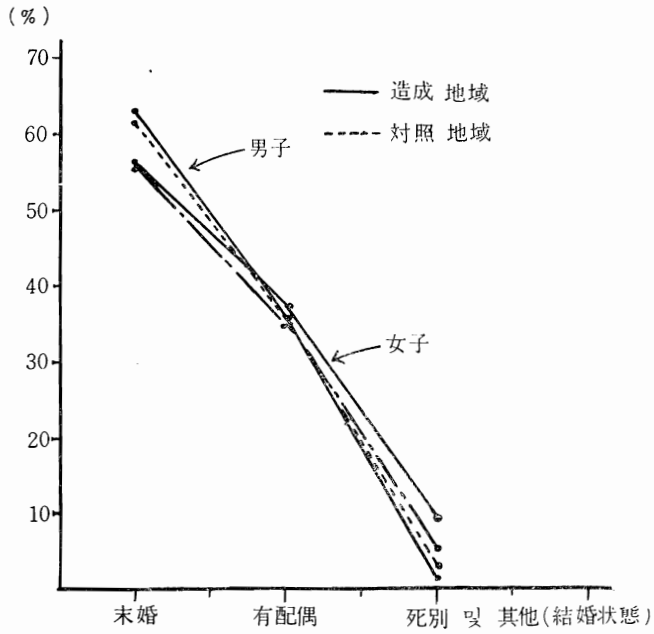
子 未婚率은 造成地域에서 63.6%, 對照地域에서 62.4%로써 약간의 차이가 있다.

女子 未婚率은 造成地域과 對照地域에서 별로 차이가 없다. 有配偶比率은 造成地域과 對照地域 間에 性別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들 差異는 극히 微少한 것이다. <圖 4-5> 및 <圖 4-6>에서 간략히 제시된 바와 같이 結婚狀態別로 造成地域과 對照地域 間에 거의 差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造成地域과 對照地域 間의 結婚狀態別 人口比率의 差異는 거의 없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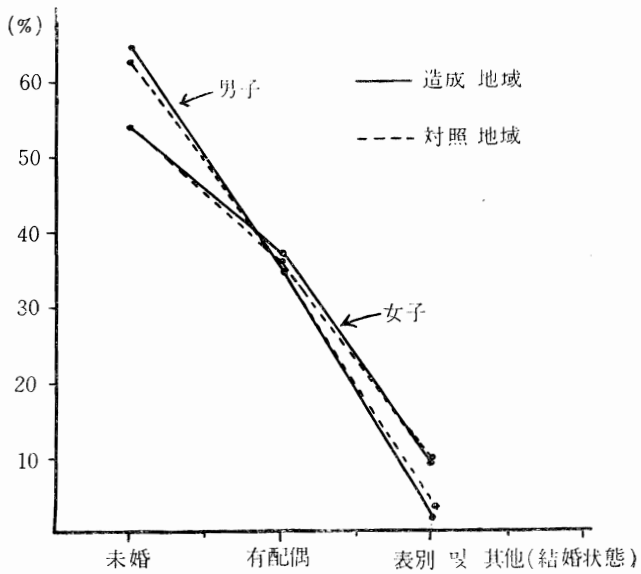
3. 出生申告

1) 一般의 水準

本 研究의 人口動態 造成事業 成果를 測定하는데 도움이 될 과거 出生申告狀態



<圖 4-5>



<圖 4-6>

<表 4-8> 造成地域과 對照地域의 出生申告狀態(1969. 9. 1. ~1971. 8. 31. : 2年間)

申告期日	計		造成地域		對照地域	
	都市	農村	都市	農村	都市	農村
	頻 度 (件)					
計	1,131	6,639	734	4,981	397	1,658
未申告	609	4,543	385	3,373	224	1,170
申告	522	2,096	349	1,608	173	488
~14日	167	502	109	388	58	114
15日-1月	70	141	47	94	23	47
1~12月	142	485	88	388	54	97
1~2年	8	93	7	60	1	33
未詳	135	875	98	678	37	197
	百 分 率 (%)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未申告	53.8	68.4	52.4	67.7	56.4	70.6
申告	46.2	31.6	47.6	32.3	43.6	29.4
1~14日	14.8	7.6	14.9	7.8	14.6	6.9
15日~1月	6.2	2.1	6.4	1.9	5.8	2.8
1~12月	12.6	7.3	11.8	7.8	13.6	5.9
1~2年	0.7	1.4	1.0	1.2	0.3	2.0
未詳	11.9	13.2	13.4	13.6	9.3	11.8

를 標本家口 全體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1969. 9. 1. ~1971. 8. 31. 의 2 個年에 일어난 出生 및 出生申告狀態는 <表 4-8>과 같다.

全體 標本人口中 都市에서 파악된 出生件數는 1,131件이며, 과거 2년간 出生申告를 한 比率는 46.2%, 未申告率은 53.8% 였다.

과거 2년간 標本地域에 農村에서 파악된 出生은 6,639件이며, 이중 申告한 것은 31.6%, 未申告率은 68.4% 였다.

그러므로 과거 2年間에 일어난 出生 중 出產申告率은 農村보다 都市에서 약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法定 申告期間인 出產後 14日以內 申告率은 都市(14.8%)가 農村(7.6%)보다 높았고, 出生後 1年以內 申告率은 都市 33.6%, 農村 17.0%로서 역시 都市에서 높았다.

經濟企劃院이 추정한 1966年 推定出生件數에 대한 當年度 出生申告率은 34.4%³⁰⁾ 였고, 延世大學校의 金泉市 및 그 주변 地域은 對象으로 한 調査에서 밝혀진 1965年 申告率은 32%³¹⁾ 였다.

30) 經濟企劃院 : 1966年 人口動態統計, 1968, p. 9.

31) 梁在模 外 5人 : 韓國家族計劃事業의 支援方案과 正確한 人口動態統計의 把握을 위한 研究, 延世大學校, 1969, p. 65.

이들 當年度 申告率에 比하여 本 研究의 標本人口에서 밝혀진 申告率은 약간 낮다. 이 差異는 다음과 같은 理由에 起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本 研究에서는 出生 發生年度와 申告年度는 實際值이며 이 實際值에 기준을 두어 계산되었다. 그러나 經濟企劃院과 延世大學校의 申告率은 人口動態申告書 또는 戶籍申告에 기재된 出生年度와 申告年度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다.

둘째, 戶籍上의 出生 및 申告年度는 實際值과 다를 수 있다. 申告된 出生의 많은 部分은 實際 出生日이 아닌 申告日과 동일한 또는 인접된 (약 14日以內) 날은 出生日로 하여 자체신고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신고는 當年度 申告일지라도 實際發生日은 申告年度가 아닌 過年度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人口動態申告書나 戶籍申告에 기초를 두고 當年度 發生分에 대한 當年度 申告率을 계산한 經濟企劃院 또는 延世大 調査는 本 研究의 調査結果 보다 높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本 調査에서 밝혀진 當年度의 出生申告率은 實際보다 높을 수 있다. 과거 2年間 파악된 出生件數를 1971年 9月 1日 現在人口로 計算된 年平均 粗出生率 (1,000人 比率)은 都市에서 26.9 農村에서 22.6 였다. 1971年 本 研究院에서 實施한 全國出產力調査에 의한 粗出生率은 이들 數値보다 높다.

이러한 粗出生率의 差異는 全國出產力調査에서 과거 婦人의 出產力 즉 出產歷에 조사의 力點을 둔데 반하여 本 研究는 現在人口의 파악에 力點을 둠으로써 本 調査結果는 결국 과거 出生歷에 관한 事項에 누락이 많아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러한 調査目的과 性格의 差異에 의하여 과거 2年間의 出生 파악에 있어 本 調査는 많은 누락을 갖게 되었고, 이 누락된 出生은 申告된 것보다 未申告의 比率이 더 높을 수 있다. 出生 파악에 있어 누락이 많은 比率은 新生兒死亡, 嬰兒死亡 등을 포함한다. 이들 死亡의 대부분은 出生申告도 死亡申告도 하지 않으며, 비록 이러한 申告를 하였다 할지라도 응답자는 기억을 살려 이러한 사실을 응답해 주지 않는다.

이러한 現實을 고려할 때, 本 調査에서 밝혀진 出生申告率은 申告率이 낮을 수 있는 出生이 際外된 出生에 基礎를 두었기 때문에 즉 Base population이 되는 出生數에 未申告分이 많이 際外됨으로써 實際보다 높을 수 있는 것으로 推定된다.

標本 對象 地域을 造成地域과 對照地域으로 區分하여 과거 2年間의 出生 및 出生申告率을 보면, 都市의 경우 造成地域에서 47.6%, 對照地域에서 43.6%로 4.0%의 差異가 나고, 農村의 경우 造成地域에서 32.3%, 對照地域에서 29.4%로서 2.9%의 差異가 난다. 한편 出產後 1年 以內의 出生申告率은 都市의 경우 造成地域에서 33.1%, 對照地域에서 34.0%였고, 農村의 경우 造成地域에서 17.5%, 對照地域에서 13.7%로써 造成地域과 對照地域 間의 差異는 都市에서 0.9% 農村에서 1.9%로서 비교적 크다.

한편 申告期間 未詳의 申告率은 都市의 경우 造成地域에서 13.4%, 對照地域에서 9.3% 였고, 農村의 경우 造成地域에서 13.6%, 對照地域에서 11.8%로써 대체로 造成地域보다 對照地域에서 약간 높았다.

2) 教育水準別

家口主의 教育水準別 出生申告 狀態는 表 <4—9>와 같다.

全標本地域 人口의 家口主 教育水準別 과거 2年間 出生에 대한 出生申告率은 都市에서 教育水準이 높아짐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즉 無學~中等 教育水準에서 申告率은 51.1~58.0%의 범위내에 있지만 高等~大學은 37.6~37.8%로써 상당히 낮다. 法定期間 內 申告率 역시 無學~中等 教育水準에서 16.1~25.9%지만, 高等~大學水準은 8.5~9.0%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都市地域의 家口主 教育水準은 申告率向上의 否定的 影響을 주며, 이러한 結果는 教育水準이 높을 수록 申告認識이 높을 수 있다는 一般的 期待와 상치되는 것이다.

農村地域의 家口主 教育水準別 出生申告率은 都市의 경우와 반대로 大學教育水準에서 39.9%이며, 無學~高等水準은 28.0~33.4%의 범위내에 있다. 그러나 法定申告日 以內 出生申告率은 無學~中等에서 5.8~9.6%이며, 高等~大學教育水準은 4.0~4.6%로써 낮은 教育水準의 경우보다 낮다. 그러므로 農村地域의 높은 教育水準은 申告率을 높이는데 긍정적 影響을 주지만, 法定期日內 申告는 촉진시키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과거 2年間의 出生에 대한 出生申告率을 造成地域과 對照地域으로 區分하여 보면 都市에서 國民學校 教育水準의 경우 造成地域에서 57.8%, 對照地域에서 46.7%로써 11.1%, 中學校水準의 경우 10.0%의 비교적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외의 教育水準에서는 별로 차이가 크지 않다. 이들 教育水準別 造成地域과 對照地域間의 差異는 특히 對照地域의 觀察例數가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農村의 경우 教育水準別로 造成地域과 對照地域 間에 차이가 크지 않다. 無學教育水準에서 2.1%, 國民教育水準에서 1.8%, 中等教育水準에서 1.0%의 차이를 나타낸다.

과거 2年間 出生 중 申告期限 1年以內 申告率은 都市의 경우 無學에서 造成地域 44.4%, 對照地域 53.9%, 國民教育水準에서 각각 43.9%, 36.9%, 中等水準에서 각각 43.3%, 28.8%로써 中等教育水準에서 비교적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農村의 경우 1年以內 申告率은 無學에서 造成地域 23.0% 對照地域에서 23.8% 國民教育水準에서 각각 16.9%, 13.0%, 中等教育水準에서 각각 15.4%, 13.5%로써 造成地域과 對照地域 間에 큰 차이가 없다.

3) 職業別

과거 2年間의 家口主 職業別 出生에 대한 出生申告率은 <表 4—10>과 같다.

標本地域 전체의 家口主 職業別 出生申告率을 보면, 都市에서 과거 2년간의 出生에 대한 出生申告率은 肉體的 勞動에서 가장 높은 65.9%였고, 다음은 農, 漁, 林業(53.2%), 公務員, 事務員, 商業(40.6%)이며, 技術的 勞動(36.4%), 專門 및

〈表 4-9〉

造成地域과 對照地域의 家口主

地域	教育水準	計								造成		
		計	申告與否		申告期間					計	申告與否	
			未申告	申告	1-14日	15日-1月	1-12月	1-2年	未詳		未申告	申告
類												
都市	計	1,131	609	522	167	70	142	8	135	734	385	349
	無學校	112	47	65	29	5	21	—	10	54	23	31
	國中學校	302	141	161	57	21	46	3	34	180	76	104
	高中學校	237	116	121	40	15	36	2	28	157	71	86
	大學	267	166	101	24	17	23	2	35	182	108	74
	未詳	189	118	71	16	10	16	1	28	149	97	52
農村	計	6,639	4,543	2,096	502	141	485	93	875	4,981	3,373	1,608
	無學校	1,320	879	441	127	34	145	36	99	1,073	718	355
	國中學校	3,795	2,572	1,223	288	77	242	45	571	2,875	1,941	934
	高中學校	672	484	188	39	9	53	4	83	531	374	157
	大學	453	328	125	18	8	20	3	76	346	239	107
	未詳	153	92	61	7	6	6	4	38	117	74	43
百分												
都市	計	100.0	53.8	46.2	14.8	6.2	12.6	0.7	11.9	100.0	52.4	47.6
	無學校	100.0	42.0	58.0	25.9	4.5	18.7	—	8.9	100.0	42.6	57.4
	國中學校	100.0	46.7	53.3	18.9	7.0	15.2	1.0	11.2	100.0	42.2	57.8
	高中學校	100.0	48.9	51.1	16.1	6.3	15.2	0.8	11.9	100.0	45.2	54.8
	大學	100.0	62.2	37.8	9.0	6.4	8.6	0.7	13.1	100.0	59.3	40.7
	未詳	100.0	62.4	37.6	8.5	5.3	8.5	0.5	14.0	100.0	65.1	34.9
農村	計	100.0	68.4	31.6	7.6	2.1	7.3	1.4	13.2	100.0	67.7	32.3
	無學校	100.0	66.6	33.4	9.6	2.6	11.0	2.7	7.5	100.0	66.9	33.1
	國中學校	100.0	67.8	32.2	7.6	2.0	6.4	1.2	15.0	100.0	67.5	32.5
	高中學校	100.0	72.0	28.0	5.8	1.3	7.9	0.6	12.4	100.0	70.4	29.6
	大學	100.0	72.4	27.6	4.0	1.8	4.4	0.7	16.7	100.0	69.1	30.9
	未詳	100.0	60.1	39.9	4.6	3.9	3.9	2.6	24.9	100.0	63.2	36.8
農村	計	100.0	76.4	23.6	9.3	2.8	7.7	0.4	3.4	100.0	69.2	30.8
	無學校	100.0	66.6	33.4	9.6	2.6	11.0	2.7	7.5	100.0	66.9	33.1
	國中學校	100.0	67.8	32.2	7.6	2.0	6.4	1.2	15.0	100.0	67.5	32.5
	高中學校	100.0	72.0	28.0	5.8	1.3	7.9	0.6	12.4	100.0	70.4	29.6
	大學	100.0	72.4	27.6	4.0	1.8	4.4	0.7	16.7	100.0	69.1	30.9
	未詳	100.0	60.1	39.9	4.6	3.9	3.9	2.6	24.9	100.0	63.2	36.8

*例數가 적어 無의미함.

教育水準別出生申告状態

地 域					對 照 地 域								
申 告 期 間					計	申 告 與 否			申 告 期 間				
1-14日	15日-1月	1-12月	1-2年	未詳		未申告	申 告	未申告	申 告	1-14日	15日-1月	1-12月	1-2年
度 (件)													
109	47	88	7	98	397	224	173	58	23	54	1	37	
9	2	13	—	7	58	24	34	20	3	8	—	3	
41	13	25	3	22	122	65	57	16	8	21	—	12	
33	11	24	2	16	80	45	35	7	4	12	—	12	
15	14	16	1	28	85	58	27	9	3	7	1	7	
10	6	10	1	25	40	21	19	6	4	6	—	3	
1	1	—	—	—	12	11	1	—	1	—	—	—	
388	94	388	60	678	1,658	1,170	488	114	47	97	33	197	
99	25	123	23	85	247	161	86	28	9	22	13	14	
231	58	199	30	416	920	631	289	57	19	43	15	155	
32	7	43	3	72	141	110	31	7	2	10	1	11	
15	4	16	2	70	107	89	18	3	4	4	1	6	
4	—	4	2	33	36	18	18	3	6	2	2	5	
7	—	3	—	2	207	161	41	16	7	16	1	6	
率 (%)													
14.9	6.4	11.8	1.0	13.4	100.0	56.4	43.6	14.6	5.8	13.6	0.3	9.3	
16.7	3.7	24.0	—	7.0	100.0	41.4	58.6	34.5	5.2	13.7	—	5.2	
22.8	7.2	13.9	1.7	12.2	100.0	53.3	46.7	13.1	6.6	17.2	—	9.8	
21.0	7.0	15.3	1.3	10.2	100.0	56.2	43.8	8.8	5.0	15.0	—	15.0	
8.2	7.7	8.8	0.6	15.4	100.0	68.2	31.8	10.6	3.5	8.2	1.2	8.3	
6.7	4.0	6.7	0.7	16.8	100.0	52.5	47.5	15.0	10.0	15.0	—	7.5	
*8.3	*8.3	—	—	—	*	*	*	—	*	—	—	—	
7.8	1.9	7.8	1.2	13.6	100.0	70.6	29.4	6.9	2.8	5.9	2.0	11.8	
9.2	2.3	11.5	2.1	8.0	100.0	65.2	34.8	11.3	3.6	8.9	5.3	5.7	
8.0	2.0	6.9	1.0	14.6	100.0	68.6	31.4	6.2	2.1	4.7	1.6	16.8	
6.0	1.3	8.1	0.6	13.6	100.0	78.0	22.0	5.0	1.4	7.1	0.7	7.8	
4.3	1.2	4.6	0.6	20.2	100.0	83.2	16.8	2.8	3.7	3.7	0.9	5.7	
3.4	—	3.4	1.7	28.3	100.0	50.0	50.0	8.3	16.7	5.6	5.6	13.8	
17.9	—	7.7	—	5.2	100.0	77.8	22.2	7.7	3.4	7.7	0.5	2.9	

〈表 4-10〉

造成地域과 對照地域 家

地域	職 業	計								計	
		計	申告與否		申 告 期 間				未 詳		
			未申告	申 告	~14日	15日 ~1月	1月~ 12月	1~2年			
頻											
都 市	計	1,131	609	522	167	70	142	8	135	734	
	農, 漁, 林 業	269	126	143	57	19	52	2	13	103	
	勞 動 (肉體的)	91	31	60	24	8	16	2	10	65	
	〃 (技術的)	44	28	16	6	4	2	—	4	37	
	公務員, 事務員, 商業	458	272	186	39	22	48	3	74	328	
	專 門 및 管理 職	39	28	11	2	3	1	—	5	33	
	其 他	77	27	50	17	9	7	1	16	56	
農 村	未 詳	52	27	25	10	2	10	—	3	40	
	無 職	101	70	31	12	3	6	—	10	72	
	計	6,639	4,543	2,096	502	141	485	93	875	4,981	
	農, 漁, 林 業	5,438	3,730	1,708	438	107	432	78	653	4,056	
	勞 動 (肉體的)	149	97	52	6	1	3	1	41	116	
	〃 (技術的)	65	47	18	3	1	2	—	12	46	
	公務員, 事務員, 商業	603	403	200	21	19	31	13	116	476	
都 市	專 門 및 管理 職	22	16	6	4	—	—	—	2	19	
	其 他	85	61	24	2	2	1	—	19	67	
	未 詳	129	94	35	15	1	8	—	11	89	
	無 職	148	95	53	13	10	8	1	21	112	
	百										
	都 市	計	100.0	53.8	46.2	14.8	6.2	12.6	0.7	11.9	100.0
		農, 漁, 林 業	100.0	46.8	53.2	21.2	7.1	19.3	0.7	4.9	100.0
勞 動 (肉體的)		100.0	34.1	65.9	26.4	8.8	17.6	2.1	11.0	100.0	
〃 (技術的)		100.0	63.6	36.4	13.6	9.1	4.5	—	9.2	100.0	
公務員, 事務員, 商業		100.0	59.4	40.6	8.5	4.8	10.5	0.7	16.1	100.0	
專 門 및 管理 職		100.0	71.8	28.2	5.1	7.7	2.6	—	12.8	100.0	
其 他		100.0	35.1	64.9	22.1	11.7	9.1	1.3	20.7	100.0	
農 村	未 詳	100.0	51.9	48.1	19.2	38.0	19.2	—	5.9	100.0	
	無 職	100.0	69.3	30.7	11.9	3.0	5.9	—	9.9	100.0	
	計	100.0	68.4	31.6	7.6	2.1	7.3	1.4	13.2	100.0	
	農, 漁, 林 業	100.0	68.6	31.4	8.1	2.0	7.9	1.4	12.0	100.0	
	勞 動 (肉體的)	100.0	65.1	34.9	4.0	0.7	2.0	0.7	27.5	100.0	
	〃 (技術的)	100.0	72.3	27.7	4.6	1.5	3.1	—	18.5	100.0	
	公務員, 事務員, 商業	100.0	66.8	33.2	3.5	3.2	5.1	2.2	19.2	100.0	
都 市	專 門 및 管理 職	100.0	72.7	27.3	*	—	—	—	*	*	
	其 他	100.0	71.8	28.2	2.3	2.3	1.2	—	22.4	100.0	
	未 詳	100.0	72.9	27.1	11.6	0.8	6.2	—	8.5	100.0	
	無 職	100.0	64.2	35.8	8.8	6.8	5.4	0.7	14.1	100.0	

*例數가 적어 無意味함.

口主職業別出生申告狀態

造 成 地 域							對 照 地 域							
申告與否		申 告 期 間					計	申告與否		申 告 期 間				
未申告	申 告	14~15日	15日~1月	1月~12月	1~2年	未詳		未申告	申 告	14~15日	15日~1月	1日~12月	1~2年	未詳
度 (件)														
385	349	109	47	88	7	98	397	224	173	58	23	54	1	37
37	66	24	11	20	2	9	166	89	77	33	8	32	—	4
22	43	19	4	13	2	5	26	9	17	5	4	3	—	5
22	15	6	4	2	—	3	7	6	1	—	—	—	—	1
195	133	24	17	34	2	56	130	77	53	15	5	14	1	18
26	7	1	1	1	—	4	6	2	4	1	2	—	—	1
16	40	16	6	6	1	11	21	11	10	1	3	1	—	5
22	18	8	1	7	—	2	12	5	7	2	1	3	—	1
45	27	11	3	5	—	8	29	25	4	1	—	1	—	2
3,373	1,608	388	94	388	60	678	1,658	1,170	488	114	47	97	33	197
2,784	1,272	336	72	343	52	469	1,382	946	436	102	35	89	26	184
70	46	4	1	3	—	38	33	27	6	2	—	—	1	3
31	15	1	—	2	—	12	19	16	3	2	1	—	—	—
304	172	19	10	26	7	110	127	99	28	2	9	5	6	6
15	4	2	—	—	—	2	3	1	2	2	—	—	—	—
48	19	1	2	1	—	15	18	13	5	1	—	—	—	4
54	35	15	1	8	—	11	40	40	—	—	—	—	—	—
67	45	10	8	5	1	21	36	28	8	3	2	3	—	—
分 率 (%)														
52.4	47.6	14.9	6.4	11.8	1.0	13.5	100.0	56.4	43.6	14.6	5.8	13.6	0.3	9.3
35.9	64.1	23.3	10.7	19.4	1.9	8.8	100.0	53.6	46.4	19.9	4.8	19.3	—	2.4
33.8	66.2	29.2	6.2	20.0	3.1	7.7	100.0	34.6	65.4	19.2	15.4	11.5	—	19.3
59.5	40.5	16.2	10.8	5.4	—	8.1	*	*	*	—	—	—	—	14.3
59.5	40.5	7.3	5.2	10.4	0.6	17.0	100.0	59.2	40.8	11.5	3.8	10.8	0.8	13.9
78.8	21.2	7.0	3.0	3.0	—	12.2	*	*	*	*	*	—	—	*
28.5	71.5	28.5	10.7	10.7	1.8	19.6	*	*	*	*	*	*	—	*
55.0	45.0	2.0	2.5	17.5	—	5.0	*	*	*	*	*	*	—	*
62.5	37.5	15.3	1.2	6.9	—	11.1	100.0	86.2	13.8	*	—	*	—	*
67.7	32.3	7.8	1.9	7.8	1.2	13.6	100.0	70.6	29.4	6.9	2.8	5.9	2.0	11.8
68.6	31.4	8.3	1.8	8.5	1.3	11.5	100.0	68.5	31.5	7.4	2.5	6.4	1.9	13.3
60.3	39.7	3.4	0.9	2.6	—	32.8	*	*	*	*	—	—	*	*
67.4	32.6	2.2	—	4.3	—	26.1	*	*	*	*	*	—	—	—
63.9	36.1	4.0	2.1	5.5	1.5	23.0	100.0	78.0	22.0	1.6	7.1	3.9	4.7	4.7
*	*	*	—	—	—	*	*	*	*	*	—	—	—	—
71.6	28.4	1.5	3.0	1.5	—	22.4	*	*	*	*	—	—	—	*
60.7	39.3	16.9	1.1	9.0	—	12.3	100.0	100.0	—	—	—	—	—	—
59.8	40.2	8.9	7.1	4.5	0.9	18.8	100.0	77.8	22.2	8.3	5.6	8.3	—	—

管理職(28.2%)에서 가장 낮았다.

農村에서 職業別 申告率은 큰 差異가 없다. 다만 肉體의 勞動(34.9%), 公務員, 事務員, 商業(33.2%)에서 비교적 높았고, 技術的 勞動(27.7%), 專門 및 管理職(27.3%)에서 낮음을 알 수 있다.

法定申告期間(出生後 14日以內) 內 申告率 역시 都市에서 肉體의 勞動(26.4%), 農, 漁, 林業(21.2%)이 가장 높고, 專門 및 管理職(5.1%)이 가장 낮다.

農村의 法定期間內 申告率은 農, 漁, 林業(8.1%)이 가장 높고, 公務員, 事務員, 商業(3.5%)이 가장 낮았다.

出生後 1年以內 申告率은 都市에서 33.6%였고, 肉體의 勞動이 가장 높은 52.8%, 農, 漁, 林業이 47.6% 였고, 專門 및 管理職은 15.4%에 불과하였다.

農村의 1年以內 申告率은 農, 漁, 林業에서 가장 높은 18.0% 였고, 肉體의 勞動에서 6.7%에 불과하였다.

造成地域과 對照地域 間 과거 2年間の 出生에 대한 家口主 職業別 出生申告率은 都市에서 造成地域과 對照地域 間에 農, 漁, 林業의 경우 17.7%의 차이가 나는 이외 기타 職業에서는 거의 유사하다.

農村의 경우 造成地域과 對照地域 間 職業別 出生申告率의 차이는 肉體의 勞動에서 21.5%, 公務員, 事務員, 商業에서 14.1%의 비교적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 이외에 기타 직업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造成地域과 對照地域 間的 職業別 出生申告率의 차이는 특히 직업을 細分化함으로써 對照地域의 觀察例數가 더욱 적어져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細分化된 職業別 出生申告率을 造成地域과 對照地域을 더 자세히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4. 死亡申告

과거 2年間 死亡에 대한 死亡申告率은 <表 4-11>과 같이 都市地域이 農村地域보다 약간 높다.

전체 本地域의 과거 2年間 死亡에 대한 申告率을 보면, 都市 58.0%, 農村 47.2%였다.

法定申告日(死亡後 10日以內) 內 申告率은 都市에서 29.0%, 農村에서 13.2% 였고, 1年以內 申告率은 都市에서 ~~38.0~~^{45.0}%, 農村에서 26.3% 였다.

造成地域과 對照地域 間的 차이는 農村의 경우에만 比較 가능하다. 2年以內 申告率은 造成地域에서 46.2%, 對照地域에서 51.2% 였고, 1年以內 申告率은 造成地域에서 25.4%, 對照地域에서 28.3%로써 農村의 경우 造成地域과 對照地域 間 死亡申告率의 차이는 비교적 적음을 알 수 있다.

死亡申告에 관한 家口主의 教育 및 職業別 차이는 觀察例數가 적어서 算出되지 않았다.

造成地域と 對照地域の 死亡申告状態

<表 4-11>

(1969. 9. 1. ~1971. 8. 31. : 2個年間)

申告期間	計		造成地域		對照地域	
	都市	農村	都市	農村	都市	農村
	事 件 數 (件)					
計	100	1,426	82	1,178	18	248
未申告	42	753	37	632	5	121
申告	58	673	45	546	13	127
~ 10日	29	188	25	160	4	28
11日 ~ 1個月	6	47	5	42	1	5
1個月~12個月	10	140	6	98	4	42
1年 ~ 2年	1	13	—	10	1	3
未詳	12	285	9	236	3	49
	百 分 率 (%)					
計	100.0	100.0	100.0	100.0	*	100.0
未申告	42.0	52.8	45.1	53.8	*	48.8
申告	58.0	47.2	54.9	46.2	*	51.2
~ 10日	29.0	13.2	30.5	13.6	*	11.3
11日 ~ 1個月	6.0	3.3	6.1	3.6	*	*
1個月~12個月	10.0	9.8	7.3	8.2	*	17.0
1年 ~ 2年	1.0	0.9	—	0.8	*	*
未詳	12.0	2.0	11.0	20.0	*	19.7

附 錄

1. 人口動態 申告 造成員 訓練時間表

1. 신규 인구동태 신고 조성원 훈련시간표

(1971. 8. 9. — 8. 21)

	1	2	3	중 식	4	5	6	7
	09 : 00 10 : 20	10 : 30 11 : 20	11 : 30 12 : 20	12 : 20 13 : 20	13 : 30 14 : 20	14 : 30 15 : 20	15 : 30 16 : 20	16 : 30 17 : 20
월	개강식 및 입명장 수여	인구동태 개요	본 연구사 업의 취지		인구문제와 가족계획		각종 인구지 수의 출산 요령	
8.9		최 인 현	최 인 현		고 갑 석		권 호 연	
화	호적신고제도		한국의 가 족계획		주민등록 제도와 신고요령			
8.10	법원 행정처 법정과장		한 대 우		내무부 주민등록 과장			
수	인구일반학		조성활동의 필요성		호적 신고 요령			
8.11	최 인 현	최 인 현			법원 행정처 호적담당관			
목	조사방법론		한국의 모 자보건		인구동태조사개요	인구동태 자료처리	토 의	
8.12	김 중 현		노 인 봉		윤 공 력	김 동 희		
금	보건통계		민원사무 처리요령		조성원의 무	가구기록표 기입요령	토 의	
8.13	이 병 무		정 만 근		최 인 현	직 원		
토	조성원 명집서 설명		활동지역개 요					
8.14	직 원		직 원					
월	통계국 견학				법원 견학			
8.16	직 원				직 원			
화	도시 지역 실습(호적관계)						토 의	
8.17	직 원							
수	도시 지역 실습(주민등록관계)						토 의	
8.18	직 원							
목	농촌 지역 실습(호적관계)							
8.19	직 원							
금	농촌 지역 실습(주민등록 관계)						토 의	
8.20	직 원							
토	최 종 토 의							
8.21								

2. 인구동태 요원 보수훈련 시간표

(1972. 1. 18. —1. 21.)

I

	1	2	3		4	5	6	7	교체요원특별 훈련(2명)
	09:30 10:20	10:30 11:20	11:30 12:20		12:20 13:20	13:30 14:20	14:30 15:20	15:30 16:20	
화	개강식 및 원장훈시	가족계획 사업의현 황과문제 점	보건통계 의정확성 이용성	중 식	본연구사 업과가족 계획사업 과의관계	실무수행 중 부각된 문제(지 역별 실 적에 중 심으로)	인구동태 의 기초개 념		
1. 18		부원장	김태룡		고감석	담 당 직 원	김 응 익		
수	인구동태 신고부진 이유	호적제도 와 신고요 령	중 식		실 (기초자료 의 상호 검증)	습 검증	보고의 정확성 검증		
1. 19	윤공혁	대법원 행정처 주담관	호		담 당 직 원	김 동 현			
목	본연구사 업의전망	주민등록 신고	제도 와	중 식	실 (주말보고 사항의 상호검 증)	습 검증	조성 활동의 필 요성		
1. 20	고감석	내무부 과장	주민 등록		담 당 직 원	김 의 철			
금	통계국 이 있는 인구동태 조사개요	실시 하 가 가족 계획 사업 의 전 망	중 식	주말보고 사업 적평가	사항의 최 종 토 의				
1. 21	인구통계 과장	가족 계획 과장		담 당 직 원	담 당 직 원				

II

(1972. 5. 22. ~5. 27.)

	1	2	3		4	5	6	7	8
	09:00 09:50	10:00 10:50	11:00 11:50		11:50 12:50	13:00 13:50	14:00 14:50	15:00 15:50	16:00 16:50
월		본연구사 업과가족 계획사업 과의관계	보건통계 정확 성이 이용성	중 식	본 연구 사업의 취지	인구동태 신고부진 이유	가족 계획 사업 의 전 망	각종 인구 지 수 의 산 출 요 인	
5. 22		부원장	김태룡		송건용	박승후	김응익	김 영 기	
화	인구일 반 학	호적 신고 제도 요령	중 식	주민 등록 신고	제도 와	조성 활동 의 필 요 성	토 의		
5. 23	문현상	박 승 후		박 승 후	송 건 용	연 구 제 1 실 직 원			
수	가구현 황 표 작성	기록 표 및 요 개	중 식	조성 위원 의 업 무	조사 방법 론	인구 동태 자 료 처리	토 의		
5. 24	연구제 1 실 직원			공세권	김 영 기	김 응 석	연 구 제 1 실 직 원		
목	조성 위원 명 칭 및 업 무 지 도	중 식	주말 보고 서 기 재 요 령				토 의		
5. 25	박 승 후		연 구 제 1 실 직 원				연 구 제 1 실 직 원		
금	실	습	중 식	실	습	토 의			
5. 26	연구제 1 실 직원			연 구 제 1 실 직 원		연 구 제 1 실 직 원			
토	중 합 토 의	중 식	다 과 회						
5. 27	연구제 1 실 직원								

2. 造成員 銘心書

조성원 활동일정표

1. 조성원 훈련

기간 : 1971. 8. 9. ~ 1971. 8. 21.

장소 : 가족계획연구원

2. 기본준비조사

종합표작성 : 1971. 8. 23. ~ 1971. 8. 31.

가구기록표작성 : 1971. 8. 23. ~ 1971. 9. 15.

3. 조성활동개시

1971. 9. 15.

4. 조성활동 결과보고

주 말 보 고 : 매주 월요일, 지난 1주일분 보고

분기별보고 : 1. 1972. 1 (9. 10. 11. 12월분)

2. 1972. 4 (1. 2. 3월분)

3. 1972. 7 (4. 5. 6월분)

4. 1972. 10 (7. 8. 9월분)

5. 1973. 1 (10. 11. 12월분)

조 성 원 메 모

보건소 _____

조성원이름 _____

주 소 _____

진 화 _____

1. 조성활동지역 및 번호

도	구 시 군	읍 면 동
---	-------------	-------------

2. 조성활동 비교 지역번호

BOS ED NO. _____

3. 조성활동 조성지역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6. _____

4. 조성활동 대조지역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6. _____

1. 조성사업 및 조성원의 직무

1) 인구동태 조사 및 주민등록

가. 인구동태조사(호적신고)

호적신고와 동시에 수집되는 우리 나라의 인구동태 조사(신고통계)는 적기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과소신고와 지연신고의 타성이 강하게 작용하여 신고건수는 발생추정수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출생, 사망, 혼인 및 사산에 관한 인구동태 통계의 미비는 경제개발 사회발전 및 장기교육계획 등의 기본계획수립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구·시·읍·면에서 국민신고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호적사무는 법원의 감독하에 구·시·읍·면장이 관장하며 원칙적으로 2부를 작성하여 법원 및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되어 조사통계국에서 출생 및 사망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에서는 과거 수년간 신고율의 향상을 위하여 신고강조기간의 설치 및 국민계몽을 전개하고 있으나 1968년도의 당년분 신고율은 추정수에 비하여 출생의 경우 겨우 36%, 사망의 경우 49%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나. 주민등록

과거의 기류제도를 뒷받침으로한 주민등록 신고제도는 주민등록 법에 따라 현 거주지인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주민등록에 관한 가구별 기록 카드는 행정 구역별 인구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자연동태인 출생, 사망과 더불어 특히 전입 및 전출에 관한 상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근년에 와서는 18세 이상인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되므로 상당히 정리가 되었으나, 18세 이하의 인구의 경우 미비한 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느낌을 주고 있다.

2) 조성활동은 왜 하는가?

우리는 발전하고 성장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특히 인구는 사회구성의 요소이며 이와 같은 인구는 지난 10여년간 우리 나라의 경우 급진적인 성장을 보여왔다.

인구성장에 관한 자료는 경제 및 사회개발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을 위하여 기본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1962년 이래 인구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가족계획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성과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인구동태의 정확한 파악은 국가계획 및 보건통계의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사실상 신빙성이 대단히 빈약한 실정에 있다.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본 연구원에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호적 및 주민등록에 관한 국민의 신고의식을 향상시키며 더욱 신빙성이 높은 현황 인구의 파악을 위하여 보건조직망을 통한 인구통태신고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첫째로 신고율을 향상시키고 다음으로 더욱 좋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기여코저

한다.

3) 조성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나?

가. 조성활동 기간

조성활동은 1971년 9월 1일부터 1973년 2월까지 1차적으로 선정된 25개 시범지역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1973년부터는 점차적으로 활동지역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나. 조성활동 방법

선정된 25개 시범지역에 대하여 조성요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성활동을 계속적으로 실시한다.

- ① 지방행정 조직(읍·면사무소, 보건소 및 보건지소, 리·동사무소) 및 지역사회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얻어 선정된 지역내의 정확한 인구동태 상황을 계속 파악하기 위한 신고독촉 및 계몽을 실시한다.
- ② 지방유지 및 의료망을 충분히 활용하여 신고업무에 누락 혹은 지연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
- ③ 가구방문 및 집단계몽을 통하여 적극적인 신고 독려를 전개함과 동시에 저기 신고를 위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 ④ 호적 및 주민등록관계 실무자와 매주 수시로 접촉하여 신고내용 및 신고부진 현황을 파악하여 가족계획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2명으로 구성된 본부 감독관은 수시로 시범지역을 순방하여 조성요원의 업무실패를 파악하여 신고수준의 향상을 위한 뒷받침에 전력을 다하도록 한다.

4) 조성요원의 직무와 책임

인구동태신고 개선을 위한 조성요원은 해당관내 보건소장의 지도감독하에 가족계획연구원에서 지시된 조성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성공여부는 조성요원 여러분의 활동여하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으리 만큼 각 조성요원의 직무와 책임은 크고 무겁다. 사업본부에서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작성하더라도 제일선에서 실제로 조성활동을 담당하는 조성요원의 눈부신 활동이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각 조성요원은 무엇을(사업대상), 어떤방법(활동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자세히 파악하여 각자의 직무와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조성요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 책임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① 제 1의 3(나)에서 언급한 활동방법을 광범위하게 실천에 옮겨 담당지역내의 신고의식을 최대한으로 높인다.
- ② 사업본부에서 지시한 주말업적 보고를 매주 빠짐없이 보고토록 한다.
- ③ 조성요원은 담당 활동지역을 일일이 순방하면서 가구현황요개표 및 가구현황 기록표의 변동을 수시로 보고토록 한다.
- ④ 가구변동상황은 즉시 이를 파악하여 호적 또는 주민등록과 대조한 후 그 내용을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토록 촉구하며,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활동지역과 활동대상

1) 조성활동 지역

본 사업의 조성활동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조성활동지역 { 조성지역 { 조성지역
 { 대조지역 { 비교지역

조성활동지역은 조성원이 전담하여야 할 1개 면을 말하며, 조성지역은 1개 면의 1/2을 분할하여 실제활동할 지역을 말한다. 조성지역내에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실시하는 표본조사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 표본조사구를 비교지역이라고 한다. 대조지역은 조성활동을 실제로 가하지 않는 나머지 1/2면을 의미하며, 실제활동은 하지 않으나 앞으로 조성지역과 비교하기 위한 지역이다.

선정된 25개 조성활동지역은 별표와 같다.

2) 조성활동 대상

조성활동의 대상은 각 조성원이 담당하는 활동지역(action area)내에 상주하는 모든 사람이며, 이들이 살고 있는 가구를 한 단위로 하여 가구현황요개표 및 가구현황기록표를 작성하게 된다.

그러나 외국인 및 군기관 및 경찰구치소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다.

상주하는 사람이란 과거 1개월 이상 살아왔거나, 앞으로 1개월 이상 거주할 자를 말한다. 따라서 상주하는 사람이란 다리밑에 살거나, 방공호 같은 토굴에 살고 있다하더라도 사는 장소나 형태에 관계없이 정의하는 바에 따라 모두 활동대상으로 간주한다.

가. 호적에 관한 사항

1. 호적에 관한 사항은 출생, 사망, 사산, 혼인 및 이혼에 관한 것으로서 시·읍면 혹은 구청의 호적실무자와 최소한 주 1회씩 접촉하여, 동태사건에 대하여 신고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 결과를 주말업적 보고로서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매주 파악되는 동태전수는 상주개념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분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a. 타지역에서 발생한 동태사건이 활동지역의 호적에 신고되는 동태사건.
 - b. 활동지역내에서 발생한 동태사건이 타지역의 본적지에 신고되는 사건.
 - c. 활동지역내에서 발생하여 활동지역내에 신고되는 사건.
 - d. 조성요원 자신이 발견하여 신고독려에 의하여 신고되는 사건.

나.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항상 움직이고 있다. 개인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겠으나 가구가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인 구 통 태 조 성 성 지 지 역

시	도	지	역	명	비 교 지 지				조 성 활 동				지	역	
					가	구	수	계	남	여	가	구			수
서울	특별시	용산구	원효로제 1동		74	444	199	245	2,343	13,432	6,465	6,967			
부산	직할시	서구	동대신동제 3동		85	467	231	236	2,671	14,451	7,030	7,421			
경	기	도	인용강	시	60	335	149	186	2,474	12,402	6,223	6,179			
				천인화	96	499	245	254	1,141	6,361	3,248	3,113			
강	원	도	출법	동	69	425	214	211	1,775	8,591	4,929	4,662			
				성산	69	347	173	174	1,111	5,972	3,044	2,928			
충	청	남	도	홍금부	장	55	326	170	156	2,211	12,931	6,542	6,389		
					제부	59	319	155	164	1,928	11,046	5,906	5,740		
충	청	북	도	부유	읍	97	597	312	285	4,538	26,047	12,965	13,082		
					칠	74	403	205	155	1,095	6,476	3,298	3,178		
진	라	북	도	육환	회	64	422	200	312	1,307	7,632	3,948	3,684		
					서	71	371	192	179	1,836	10,408	5,140	5,268		
진	라	남	도	구나보	군	91	499	250	249	2,230	13,225	6,625	6,600		
					성주	42	220	104	116	2,885	15,860	7,825	8,035		
경	상	북	도	의영	성	69	352	156	196	1,847	10,283	5,079	5,204		
					일	90	508	241	267	1,078	6,171	3,069	3,102		
경	상	남	도	삼의	동	82	449	223	226	2,195	10,025	4,981	5,044		
					령	50	254	119	145	2,367	12,904	6,397	6,507		
제	주	도	도	철	시	81	405	207	198	3,941	21,768	10,791	10,977		
					주	66	368	184	184	418	2,211	1,099	1,112		
제	주	도	도	주	시	67	346	166	180	2,767	14,439	7,169	7,270		
					시	71	414	198	216	2,184	12,046	6,009	6,037		
제	주	도	도	주	시	66	341	185	156	3,752	18,182	8,910	9,272		
					시	83	318	138	180	6,082	23,500	11,018	12,482		
계					1,824	9,889	4,851	5,038	57,468	303,326	150,886	152,440	자료 : 1970년 인구센서스 추보		

주민등록은 이러한 인구의 움직임을 알기 위한 것으로서 전입과 전출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조성원은 조성활동지역 인구의 변화를 알기 위하여, 누가, 어느 가구가, 어디로 전출해 가고, 어디서 전입해 오는지, 주의깊게 관찰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자료수집 및 보고요령

1) 가구현황 요개표

조성활동지역 내의 인구에 관한 자연 및 사회동태의 신고의식을 향상시키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자료(base-line data)를 수집코져 다음 순서에 따라 가구현황요개표를 작성한다.

한편 가구현황요개표는 지역의 구분에 따라 3색으로 분리된다.

① 가구 번호

가구라 함은 1인 혹은 2인 이상이 한데 모여 취사, 취침 및 생계를 같이하는 모임을 말한다.

따라서 한집에 두 가구 이상이 있을 수 있다.

가구 번호는 법정리를 기준으로 하되, 각 반별로 순서를 주어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가구주 성명

가구주 혹은 대표자의 이름을 기입한다.

가구주란 그 가구의 생계를 사실상 주관하고 가구원이 대표로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자란 고아원, 기숙사, 요양원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의 대표로 되는 한 사람을 말한다.

③ 호적상의 호주성명

가구주는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구의 대표이며, 호적상의 호주성명과는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호적상에 기재되어 있는 호주의 이름을 기입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④ 현 주소

가구가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의 동리명, 번지 및 호수를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⑤ 본 적

현거주지와 본적지가 같은 경우도 있으나, 전입 혹은 전출하였을 경우 본적지를 지방에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호적부가 있는 본적지 주소를 기입하여야 한다.

⑥ 가임부 유무

기혼 부인으로서 15~44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인수를 기입하여야 한다.

⑦ 임신 여부

⑥란에 해당하는 부인이 있을 경우에는 임신여부를 확인하여 ㉠ 임신중인 경우에는 개월수 ㉡ 모르겠다. ㉢ 아니다.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⑧ 거주 신고 여부

가구 혹은 가구원이 현 거주지의 주민등록에 정리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고 주민등록 실무자에게 문의하여 이를 확인 구분하여야 한다.

⑨ 비 고

비고란에는 출생, 사망 및 전출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

출생은 출생일, 출생시 모의 연령, 사망인 경우 사망일, 사망자연령, 신고여부 사망원인을 기입한다. 한편 전출입인 경우는 전출입일자 및 전입전주소 혹은 전출지주소와 주민등록 신고여부를 기록한다.

2) 가구현황 기록표

가구현황 기록표는 매가구당 1매씩 작성하여 연구원에 비치하며 조성지역에 한하여 변동상황이 있을 때마다 조성요원의 보고를 얻어 이를 수정 보완하여 가구및 가구원의 현황을 항상 파악토록 한다.

가구현황 기록표의 기입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가구번호

② 가구주 성명

③ 현주소

④ 호적상의 호주성명

⑤ 본적은 제 3·1가의 기입요령에 준하여 기입한다

⑥ 가구원 성명

가구수와 가구원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⑦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처, 장남, 차남, 장녀 등의 순으로 자세히 기입할 것.

⑧ 성 별

남녀의 성별을 분명히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할 것.

⑨ 생년월일

출생년도를 기입한 다음 월일이 양력인지 음력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⑩ 혼인관계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의 네가지로 분류하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기입하여야 한다.

⑪ 학 력

국민, 중학, 고등, 대학, 무학으로 5등분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⑫ 직 업

주로 많이 한 일에 대하여 가급적 자세히 적도록 한다.

작성년월일 : 197 년 월 일

가 구 형 황 요 계 표

지역번호

(1) 가구번호	(2) 가구주성명	(3) 상 호 주 성 명	(4) 현 주 소	(5) 본 적	(6) 가 임 부 수	(7) 임 신 부 수 (임 신 기 간)	주 거 신 고 여 부	비 고 (출 생 사 망 및 전 출 입 사 항 기 재)
								노 랑→조성지역
								분 흥→대조지역
								하늘책→비교지역

[인구 통계 양식 2]

⑬ 전입일자

⑭ 전입전 주소

현주소에 전입해 온 날짜 및 전입 전입이전의 주소를 기입할 것.

⑮ 전출일자

⑯ 전 출 지

전가구 및 가구원중 전출한자는 전출일자 및 전출지 주소를 기입할 것.

⑰ 주민등록 확인

읍·면·동의 주민등록표에 전 출입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확인된 날짜와 내용을 기재한다.

⑱ 출생의 경우에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출생시 모의 연령을 가족계획연구원에 보고 기재토록 한다.

⑲ 사망의 경우에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사망일자, 사인, 신고여부를 기재하도록 한다.

⑳ 혼인 및 이혼

혼인 및 이혼의 경우에는 부, 처의 성명, 생년월일, 혼인 또는 이혼날짜 및 신고여부를 기입한다.

㉑ 사 산

사산을 발견하였을 때는 발생일 및 신고여부를 기입하도록 한다. 특히 사산은 파악이 어려우므로 주의를 요한다.

㉒ 비 고

비고란에는 과거 2년간에 일어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사산, 전입, 전출에 관하여 해당 사항을 자세히 기록한다.

(1)지역번호 가구번호 가 구 련 활 기 록 표 작성년월일 1971 년 월 일

(2) 가구주명성	(3) 원주소	(4) 시	(5) 구	(6) 시	(7) 구	(8) 시	(9) 동	(10) 면	(11) 리	(12) 호	(13) 점	(14) 점	(15) 점	(16) 점	(17) 점
(6) 가구원성명	(7) 가구주와의관계	(8) 성별	(9) 생년월일	(10) 혼인관계	(11) 학력	(12) 직업	(13) 전입일자	(14) 전입전주소	(15) 전출일자	(16) 전출지주소	(17) 주민등록확인				
		남 여	년양 월 일												
		남 여	년양 월 일												
		남 여	년양 월 일												
		남 여	년양 월 일												
		남 여	년양 월 일												
		남 여	년양 월 일												
		남 여	년양 월 일												
		남 여	년양 월 일												

[인구동태양식 4] ※ 직업은 구체적으로(모든 사항은 구분으로)

가 구 원 의 자 연 동 태

동태사항	성 명	성 별	발 생 일 자	신고여부(일자)	비 고
(18) 출 생					모의 연령: 세 출생장소:
(19) 사 망					사망자연령: 세 사 인:
(20) 혼인 및 이혼					당사자연령: 세 결혼기간: 년 월
(21) 사 진					모의 연령: 세 모의 임신회수 회

(22) 지난 2년간의 동태사항(1969. 9. 1. ~1971. 8. 31.)

동태내용	발 생 일 자	신고여부(일자)	비 고

※ 비고란에는 출생-모의 연령, 출생장소 혼인-당사자연령, 결혼기간
사망-사망자 연령, 사인 자산-모의 연령, 모의 임신회수로 기입한다.

3) 주말 업적 보고

조성요원은 별지 2종의 보고양식에 의한 주말 업적보고를 자세히 기록하여 매주 초 지체없이 가족계획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주말업적보고(사회동태).....양식 A

나. 주말업적보고(자연동태).....양식 B

양식 A와 B의 기입요령은 가구현황 기록표의 작성요령에 따라 해당 항목을 자세히 기입 보고한다.

주말업적보고 (사회동태)

가족계획연구원장 귀하

보고년월일 197 년 월 일

지역번호	가구번호	가구주 성명	현주소

응답자 :

1. 사회동태내용 :	<input type="checkbox"/> ①전출	<input type="checkbox"/> ②전입	<input type="checkbox"/> ③결혼	<input type="checkbox"/> ④이혼
2. 발 견 일 자	197	년	월	일
3. 발 생 일 자	197	년	월	일
4. 신 고 여 부	<input type="checkbox"/> 했다면 신고일 : 197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안했다면 이유 _____			
5. 확 인	<input type="checkbox"/> 신고필 <input type="checkbox"/> 미신고			
<인 적 사 항>				
6. 성 명	_____			
7. 연 령	만	_____	세	
8.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9. 직 업	_____			
10. 전출지 혹은 전입전 주소	_____			
11. 이혼의 경우	결혼기간	_____	년	_____
비 고				

※ 본 보고서는 매주 월요일 본부로 우송함

_____ 시군보건소 조성원 성명 _____ 인

[인구동태양식 5]

주 말 업 적 보 고 (자연동태)

가족계획연구원장 귀하

보고년월일 197 년 월 일

지역번호	가구번호	가구주 성명	현주소

응답자 :

1. 자연동태내용 :	<input type="checkbox"/> ①출생	<input type="checkbox"/> ②사망	<input type="checkbox"/> ③사산
2. 발 견 일 자	197	년	월 일
3. 발 생 일 자	197	년	월 일
4. 신 고 여 부	<input type="checkbox"/> 했다면 신고일 : 197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안했다면 이유 : _____		
5. 확 인	<input type="checkbox"/> 신고필 <input type="checkbox"/> 미신고		
<출생관계 사항>			
6. 모 의 년 령	_____세 성명(_____)		
7. 출생아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8. 출생 순 위	_____회 출생		
9. 출생 장 소	<input type="checkbox"/> ①병원 <input type="checkbox"/> ②자택 <input type="checkbox"/> ③기타		
<사망관계 사항>			
10. 사망자성명	_____		
11. 사망자연령	만 _____세 _____월		
12. 사 인	_____ (사망장소 _____)		
<사산관계 사항>			
13. 모 의 연 령	_____세		
14. 임신 순 위	_____회		
비 고			

※ 본 보고서는 매주 월요일 본부로 우송함

_____ 시 군 보 건 소 조성원 성명 _____ 인

[인구동태양식 6]

부 록

인구동태 및 주민등록의 요점 및 신고양식

호적 신고

1. 출생은 호적법 49조에 의거 14일 이내에 구·시·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망은 호적법 87조에 의거 10일 이내에 구·시·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산은 매 화장신고와 동시에 구·시·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혼인 및 이혼은 성립과 동시에 구·시·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민등록

1. 주민등록법 11조에 따라 전출입자의 경우는 1개월 이상 거주하는 능력이 있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도착 후 14일 이내에 해당 동사무소 혹은 읍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본적지와는 별도로 현 거주지의 주소를 명백히 할 의무가 있고, 한 사람이 두 곳 이상의 현주소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다.
2. 주민등록법 6조에 의하여 30일이상 거주지를 변경할 때에는 전출시 주민등록을 동시에 옮겨 전입지에서 다시 신고하여야 하며 원본을 전출지로부터 전적하여야만 신고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3,000원의 벌칙규정(주민등록법 20조)이 있음.

3. 주민등록 신고서에 허위의 사실 혹은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조사를 거부 혹은 기피하였을 때에는 30,000원의 벌금 또는 구류처분이 규정되어 있다(주민등록법 21조).

신고양식

- | | |
|---------|----|
| 1. 출생신고 | 별첨 |
| 2. 사망신고 | " |
| 3. 혼인신고 | " |
| 4. 이혼신고 | " |

출 생 신 고

장 귀 하

년 월 일

1	출	본 적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 계	
2	생	주 소				
		세대주 성 명			세 대 주 와의관계	
3	자	성 명			본	혼인중의자(남녀별) 혼인외의자()
		출 생 년월일	서기 壹千九百 년 월 일 시 분			
5	출생장소			1. 자택 2. 병원 3. 기타		
6	부모성명	부	본	모	본	
7	기 타 사 항					
8	신 고 인	본 적			호주성명	
		주 소			자 격	
	서명날인			출 생 년월일	년 월 일	

비고

1. 문자는 한글을 쓰되 성명은 한자 또는 한글을, 숫자는 壹, 貳, 參, 拾의 문자를 써야 한다.
2. 출생자가 들어가기로 정하여진 가의 본적을 제 1 란에 기재하고 부가 혼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하는 때에는 모의 본적표시는 기타란에 한다.
3. 출생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경우에는 제 1 란에 기재를 하지 하니하고 제 7 란에 그 취지 및 원인과 장소를 기재한다.
4. 제 5 란 출생장소의 구분중 해당 숫자에는 ○인을 표시한다.

5. 모(母)가 혼인의 출생자에 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 6 란중 부에 관한 부분의 기재 를 하지 아니 한다.
6. 호적법 제53조에 의하여 모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 6 란중 부의 성명란에만 부미정이라 기재한다.
7. 제 3 란중 혼인중 또는 혼인외의 자의 구별에 따라 남녀로 기재한다.
8. 제 7 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무능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선순위자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 출생년월일, 본적 및 무능력의 원인 또는 신고할 수 없는 사유.
 나. 기타 호적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사유.
9. 신고인의 자격은 부, 모, 호주, 동거자, 후견인, 분만관여 의사, 기타 해당 자격을 기재 한다.

인 구 동 태 사 항

(지정통계 제 3 호)

9	부 출생년월일	부	서기	년	월	일	생	모	서기	년	월	일	생
10	부 직	부						모					
11	부 모 의 교 육 정 도	부	1. 미취학 3. 중·고교	2. 국민학교 4. 대학교				모	1. 미취학 3. 중·고교	2. 국민학교 4. 대학교			
12	부 모 의 동 거 년 월	서기 년 월 일					부터 동거(혼인)						
13	모 의 출 산 회	총출산	명	생존	명	사망	명	사산	명				
14	임 신 월 수 및 태	임신	만	개월	태	수	1. 단태아 2. 쌍태아		3. 3태아 이상				
15	조 산 자	1. 의 사		2. 조산원			3. 기 타						

비고

1. 부모의 출생년월일과 동거년월일은 사실상의 년월일로 기입하십시오.
2. 조산자 부, 모의 교육정도 및 태수의 난은 해당하는 곳에 ○인을 표시하십시오.
3. 모의 출산회수는 실제로 이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이제까지 낳은 수를 각각 기입하며 재혼인 경우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도 포함 하십시오.

사 망 신 고

장 귀 하

년 월 일

1	사	본 적	호 성	주 명		호 주와의 관 계	
		주 소	세 대주 성 명	세 대주와 의 관 계	혼 인 중 의 자 (남 녀 별)	혼 인 외 의 자 ()	
3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서 기 壹九 年 월 일				
4	사 망 년 월 일		서 기 壹九 年 월 일 시 분				
5	사 망 장 소		1. 자택 2. 병원 3. 기타				
6	기 타 사 항						
7	신 고 인	본 적	호 성	주 명			
		주 소			자 격		
	서 명 날 인			출 생 년 월 일			

비 고

1. 제 6 란에는 호적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2. 신고인 자격은 호주, 동거하는 친족, 기타의 동거인, 건물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 해당 자격자를 기재한다.
3. 제 5란 해당 사항에는 숫자에 ○인으로 표시한다. (예 ①)
4. 제 3 란중 혼인중 혼인외의 자의 구별에 따라 남, 여로 기재한다.

인 구 동 태 사 항

(지정통계 제 3 호)

8	사 망 원 인		직업	
9	사망진단자	1. 의 사 2. 한 의 사 3. 기 타		
10	혼인상태	1. 미 혼 2. 유 배 우 3. 이 별 4. 사 별		
11	교육정도	1. 미취학 2. 국민학교 3. 중·고교 4. 대학교		

비고

1. 사망진단자, 혼인상태, 교육정도란은 해당하는 곳에 ○인으로 표시하십시오.
2. 사망원인은 되도록 상세하게 기입하십시오.

혼 인 신 고

장 귀 하

년 월 일

1	구 분	부(夫)	처	
2	당 본 적			
		호주 성명	호주와 의관계	호주 성명
3	사 주 소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 의관계	세대주 성명
4	자 성 명	본	본	
		출년 월 생일	서기 년 월 일	서기 년 월 일
5	부 모 성 명 및 본 적	부	본적	본적
		성명	성명	성명
	도	본적	본적	본적
		성명	성명	성명
6	양 친 성 명 및 본 적	양부	본적	본적
		성명	성명	성명
	양모	본적	본적	본적
		성명	성명	성명

7	혼인해소 년월일				
8	신 본 적				
9	수 반 입 적 자	성 명	분가자와 의 관계	성 명	분가자와 의 관계
10	기 타 사 항				
11	증인	본 적		서날 명인	
		주 소		출생 년월일	
	증인	본 적		서날 명인	
		주 소		출생 년월일	
12	동 의 자	부(夫)의부 서명날인		출생 년월일	
		부(夫)의모 서명날인		출생 년월일	
		처 의 부 서명날인		출생 년월일	
		처 의 모 서명날인		출생 년월일	
13	신고인	부(夫)서명 날		처서명 날	

비고

1. 처가에 입적하는 혼인 또는 서양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명칭에 표시한다.
2. 제 8 란에는 법정분가 장소를 기재한다.
3. 제10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당사자가 동성동본일지라도 동일 혈족이 아닌 때에는 “혼인당사자는 시조를 달리 함”이라는 취지.
 - 나. 당사자의 일방이 혼가로부터 재혼하는 때에는, 친가의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 및 그 본적.
 - 다. 민법 제11조 단서 기타 호적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사항.

인 구 동 태 사 황

(지정통계 제 3 호)

14	실제상동거 년 월 일	서기 19	년	월	일부터 동거
15	성 혼 과 정	1. 자 유	2. 중 매	3. 절 층	
16	혼 인 장 소	1. 자 택	2. 예 식 장	3. 기 타	
17	직 업 부			처	
18	교 육 정 도	부	1. 미취학 3. 중·고교	2. 국민학교 4. 대학교	처
	혼 인 종 류	부	1. 초 혼	2. 재 혼	처
					1. 초 혼 2. 재 혼

비고

성혼과정, 혼인장소, 교육정도 및 혼인종류란은 해당하는 곳에 ○인으로 표시하십시오.

이 혼 신 고

장 귀 하

년 월 일

1	구 분	부(夫)	처
2	당 본 적		
		호 주 성 명	호 주 와 의 관 계
3	사 주 소		
		세 대 주 성 명	세 대 주 와 의 관 계
4	자 성 명	본	본
		출 생 년 월 일	서 기 년 월 일
5	부 모 성 명	부	본 적
			성 명
	본 적	부	본 적
			성 명

6	양친성명 및 본적	양부	본적		본적	
			성명		성명	
		양모	본적		본적	
			성명		성명	
7	부적할가		본적		호성주명	
8	신본적					
9	수반입적자		성명	분가자와의 계관	성명	분가자와의 계관
10	기타사항					
11	재판확정년월일					
12	일가창립원인		장소			
13	부흥장소					
14	증인	본적			서남명인	
		주소			출생년월일	
		본적			출생년월일	
		주소			출생년월일	
15	등의자	부(夫)의부 서명날인			출생년월일	
		부(夫)의모 서명날인			출생년월일	
		처(妻)의부 서명날인			출생년월일	
		처(妻)의모 서명날인			출생년월일	
16	신고인	부(夫) 서명날인			처(妻) 서명날인	

비고

1. 제 8란에는 법정분가 장소를 기재한다.
2. 제10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혼가를 떠난자가 일가 창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 나. 친가를 부흥하는 때에는 그 취지.
 - 다. 기타 호적법 제29조 제 2 항, 제34조에 해당하는 사항.

인 구 동 태 사 황

(지정통계 제 3 호)

17	실 제 상 동 거 일 (혼인) 년 월 일	서기 19	년	월	일부터	동거
18	실 제 상 이 혼 일 년 월 일	서기 19	년	월	일에	이혼
19	성 혼 과 정	1. 자 유	2. 중 매	3. 절 층		
20	이 혼 사 유	1. 부부불화 2. 가족간불화 3. 건강상 4. 경제문제 5. 기타				
21	교 육 정 도	부	1. 미취학 3. 중·고교	2. 국민학교 4. 대학교	처	1. 미취학 3. 중·고교 2. 국민학교 4. 대학교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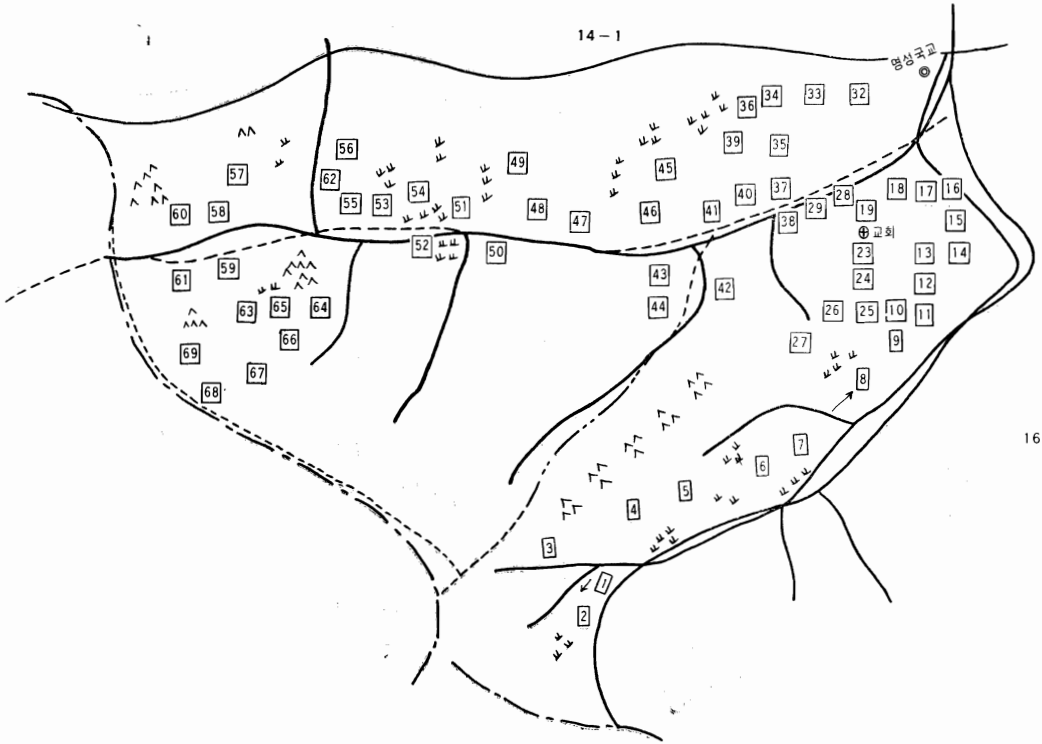
1. 성혼과정과 이혼 사유란은 해당하는 곳에 ○인으로 표시하십시오.
2. 17란과 18란은 사실상의 년월일을 기입하십시오.

3. 調査區 要圖 Sample



조사구역도

강원도 춘성군 동면 조사구 번호 15-1



4. 造成員 週末業績 報告 作成要領(活動指針)

조성원 주말 업적보고 작성요령

- 내용 : 1. 용어의 정의 및 조성한계
2. 주말업적 보고의 기입방법
1) 자연동태 주말업적 보고
2) 사회동태 주말업적 보고
3) 수정보고

별첨 : 주말업적보고 양식

1972. 1.

가족계획연구원

1. 용어의 정의 및 조정의 한계

1) 사 산

- (1) 임신 7개월 이후 생명없이 분만된 상태.
- (2) 사산관계는 조성범위에서 제외한다. 이는 인구의 증·감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신고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2) 상주인구

- (1) 1개월이상 거주할 목적을 갖고 거주하는 모든 사람.
- (2) (1)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입 및 전출신고의 의무를 갖는다.
- (3) 조성원은 상기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한편 신고를 조정할 것.
- (4) 영내거주 군인은 가족과 같은 곳에 주민등록을 하도록 되었으나 본 인구동태 사업에서는 제외한다.

3) 출 생

- (1) 혼인 중 또는 혼외의 모든 출생은 사업대상이 된다.
- (2) 혼외 출생시의 성과 본은 부·모의 순에 따르며 출생 후 14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다.
- (3) 상주인구가 아닌자의 출생은 조성대상이 안된다.

4) 사 망

- (1) 상주인구 중의 사망은 사업대상이 된다.
- (2) 상주인구 아닌자의 사망은 조성대상에서 제외된다.
- (3) 신고는 사망후 10일 이내에 한다.

5) 결 혼

- (1) 사실혼 주의를 채택한다.
- (2) 사실혼은 공동생활의 목적을 갖고 가족형태를 이룬 것을 말하며 최소한 주민등록의 정리가 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 (3) 신고는 결혼과 동시에 함이 원칙이다.

6) 이 혼

- (1) 결혼의 각항에 준한다.
- (2) 협의 이혼인 경우에는 협의와 동시에 신고함이 원칙이다.
- (3) 소송이혼인 경우에는 이혼조정 성립후 10일내에 신고한다.

7) 전입·전출

- (1) 지역외의 전출입은 상주인구 개념에 따라 그 주민등록상의 절차를 밟는다.
- (2) 지역내(조성지역) 이동은 사회동태 주말업적보고 요령중 전출·입 사항에 준한다.

8) 조성의 시간적 한계

- (1) 1971년 9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자연 및 사회적 동태 사건은 본 사업에서 모두 제외된다.

2. 주말업적 보고의 기입방법

1) 자연동태 주말업적 보고

- (1) 보고년월일 : 각 조성원이 가족계획 연구원으로 보고서를 우송하는 일자로 한다.
- (2) 지역번호 : 각 지역 고유번호를 기재한다(예 : 서울=1, 북제주군=25)
- (3) 가구번호
 - ㄱ) 각 가구에 하나씩 매겨진 그 지역내의 고유번호이다.
 - ㄴ) 전출의 경우 그 가구번호는 소멸하며, 그 번호는 타가구에 의하여 재생되지 못한다.
- (4) 가구주 성명 : 가구에서 사회경제적 그리고 가정적으로 대표가 될만한 사람의 성명
- (5) 현주소 :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주소이다.
- (6) 응답자
 - ㄱ) 동태사건의 정보를 조성원에게 제공한 사람의 성명을 쓴다.
 - ㄴ) 응답자의 성명 옆에 ()를 하고 응답자와 가구주와의 관계나 혹은 그 지역사회 내에서의 공적인 신분 등을 기재한다.
예 : 김 경남(본인) 혹은 전 총기(리장)
강 재주(처) 등
- (7) 자연동태 내용(종류)
 - ㄱ) 출생 : 용어의 정의 및 조성의 한계에 준한다.
 - ㄴ) 사망 : 용어의 정의 및 조성의 한계에 준한다.
 - ㄷ) 사산 : 용어의 정의 및 조성의 한계에 준한다.
 - ㄹ) () 속의 표시방법은 “×”표로 한다(이하 동일).
- (8) 발견일자 : 조성원이 동태사건을 알게된 처음 날짜를 기입한다.
- (9) 발생일자 : 동태사건이 발생한 실제 날짜를 기입한다.

(10) 신고여부

ㄱ) 신고 했다면 그 동태사건을 신고한 날짜를 기입한다.

ㄴ) 안했다면 그 이유를 간단히 기재한다.

ㄷ) (ㄱ), (ㄴ)은 응답자(정보 제공자)의 정보나 조성원 자신이 발견한 내용대로 기입한다.

(11) 확인 : 조성원 자신이 읍·면·구 등 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신고여부를 확인한 후 기재한다.

(12) 모의 연령 : 분만당시 어머니의 만 연령을 기재한다. 만 연령 계산법

ㄱ) 분만시 어머니의 생일이 지났을 경우는 보통 세는 나이에서 1세를 뺀다.

ㄴ) 분만시 어머니의 생일이 안 지났을 경우는 보통 세는 나이에서 2세를 뺀다.

(13) 모의 성명 : 실제로 아기를 낳은 어머니 자신의 성명을 기재한다.

(14) 출생아의 성별 : 출생아의 성(Sex)을 표시한다.

(15) 출생순위

ㄱ) 출산시 산모의 그 출산회수를 적는다.

ㄴ) 출산순위에는 임신경력이 고려되지 않는다.

ㄷ) 사산도 출산순위에 기재한다.

(16) 출생장소

ㄱ) 출산당시의 장소를 뜻한다.

ㄴ) 의사나 조산원이 왕진와서 분만하는 경우는 병원이 아니다.

ㄷ) 자택이라 함은 산모 본인이 상주하고 있는 집을 뜻한다.

ㄹ) 친정, 친척집 등은 자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기타 난에 자세히 그 분만장소 및 그 장소와의 관계를 적는다.

ㅁ) 선박, 기차, 자동차, 비행기 등에서 분만한 경우에는 그 장소를 자세히 적는다.

(17) 사망자 성명

ㄱ) 사망한 당사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ㄴ) 사망자가 이름이 없을 경우에는 () 안에 사망자와 가구주와의 관계를 적는다.

예 : 아기(김 두홍의 3째아들)

(18) 사망자 연령

ㄱ) 출생후 1년이내의 사망아는 월수를 적으며 가능하면 몇개월 며칠까지를 적는다.

ㄴ) 만 1년이상 살다가 죽은 사람은 사망 당시 사망자의 만 연령을 적는다.

ㄷ) 만 연령 계산 방법은 (12)의 모의 만 연령 계산방법에 준한다.

(19) 사 인

- ㄱ) 사망자의 사망원인을 적는다.
- ㄴ) 병사인 경우 가능한한 병명을 명확하게 자세히 적는다.

(20) 사망장소

- ㄱ) 사망자의 사망당시의 장소를 적는다.
 - ㄴ) 사망당시의 장소는 사실장소를 기재한다.
- 예 : 자택, 병원, 기차내, 길, 처가집 등

2. 사회동태 주말업적 보고

(1) 다음의 사항은 자연동태 주말업적 보고의 방법에 준한다.

- 1) 보고년월일 2) 지역번호 3) 가구번호 4) 가구주성명 5) 현주소
- 6) 응답자 7) 발견일자 8) 발생일자 9) 신고여부 10) 확인
- 11) 연령 12) 성별

(2) 가. 전출·전입

- ㄱ) 조성지역내의 이동은 전출·전입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 ㄴ) 조성지역과 대조지역의 이동은 전출·입으로 취급한다.
- ㄷ) 조성지역내의 가구단위 이동은 가구번호만 수정하여 보고한다.
- ㄹ) 조성지역내의 개인단위 이동은 가구원 수정만 한다.
- ㅁ) 전출·입 신고는 발생과 동시에 합을 원칙으로 한다.
- ㅂ) 전출·입시 양식의 10번 전출지 및 전입지 주소는 해당사항을 ○표로 싸고 지역명을 자세히 적는다. 만일 자세히 모를 경우에는 최소한 ○○도 ○○군 혹은 ○○도 ○○시 까지는 적어야 한다.

나. 결혼

- ㄱ) 지역내 남자나 여자의 결혼전부가 대상이 된다.
- ㄴ) 동일지역내 남녀의 결혼 : 가구번호, 가구주성명, 현주소는 호적상 결혼 주체자의 그것을 쓰며, 보고양식내의 6번 성명은 남·여를 구별하여 모두 쓰며, 인적사항은 호적상 결혼객체의 것을 쓴다.
- ㄷ) 동일지역외의 경우 : 가구번호, 가구주성명, 현주소는 지역내 사람의 그것을 쓰며 성명은 ㄴ)번에 준하며 인적사항은 가구현황 기록표에 없는 자의 것을 우선적으로 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ㄹ) 결혼의 경우 : 양식내 1번 사회동태 내용에는 1가지 이상 ×표를 한다. 즉 결혼에 의한 전출·입을 분명히 하고 양식내의 10번에 전출지 혹은 전입지주소를 ○표로 싸고 그 지역명을 적는다. 그 지역명은 전출입의 사회동태 보고 방식에 준한다.

다. 이혼

- ㄱ) 이혼은 결혼사건 기입의 제 원칙에 준한다.
- ㄴ) 이혼의 경우 : 특히 전출 및 무변동을 명확히 하며 양식내 10번은 전출입 사회동태보고 방식에 준하며 전출자가 있을시 대동하는 사람의 성명

을 1 비고란에 쓴다.

(3) 성 명

ㄱ) 전출의 경우 : 가구주 성명만 쓰고 나머지 대동 가구원 성명은 비고란에 쓴다.

ㄴ) 전입의 경우 : 매 가구원마다 1매씩 그 성명 및 인적사항을 쓴다.

ㄷ) 결혼의 경우 : 당사자 양인의 성명을 남 : ○○○, 여 : ○○○로 구분하여 쓴다.

ㄹ) 이혼의 경우 : 이혼하여 그 가구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의 이름을 쓴다
만일 대동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대동인원의 성명은 비고란에 모두 쓴다.

(4) 직 업

해당자의 직업을 가능한 한 직종 몇 직위에 관하여 자세히 기재한다.

(5) 전출지 혹은 전입지 주소

ㄱ) 이는 전출·전입·결혼·이혼의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

ㄴ) 주소 기재시 그 주소가 해당되는 말을 ○표로 쓴다.

예 : 전출지 혹은 전입지 주소 :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한수리 101번지

(6) 이혼의 경우 결혼기간

ㄱ) 결혼기간은 이혼시점에서 결혼시점을 뺀으로써 산출된다.

ㄴ) 결혼기간은 이혼상대자와의 결혼기간을 쓴다.

(7) 비 고

비고란은 모든 자연 및 사회동태사항 보고서 조금이라도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경우 이를 보충적으로 기재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8) 주말보고 기일

주말업적보고는 주간에 동태사항이 있건 없건 매주 월요일 본부로 우송해야 한다(동태사건이 없는 경우 별첨 보고양식 참조).

3. 수정보고

(1) 모든 동태사항은 동태사항 발생시부터 법정신고일까지는 신고를 독려하고, 그 기일이 지나면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이에 관하여 즉시 보고한다

(2) 신고를 안했던 사항은 보고후에도 계속 신고를 독려하고 신고를 이행할 경우 이에 관하여 즉시 수정 보고한다.

(3) 수정보고서는 비고란에 반드시 “몇월 며칠자, 가구번호 몇번, 누구의 무슨사항 수정보고임”을 붉은색으로 반드시 쓴다.

(4) 수정보고에는 지역내의 이동 및 여타의 모든 수정사항도 포함된다.

(5) 수정보고는 그 용지에 붉은색으로 대각선을 긋는다.

별첨 : 주말업적보고 양식

주말 업적 보고

가족계획연구원장 귀하

보고 년월일 : 197 년 월 일

지난주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월
제 주 차에는

당 인구동태 조성지역(비교지역포함)
에서 인구의 자연동태 및 사회동태의 보
고사항이 없음으로 이를 보고하나이다.

지역번호 번

조성원 성명

(송부용) 접수일자 : 197 년 월 일

주말 업적 보고

가족계획연구원장 귀하

보고 년월일 : 197 년 월 일

지난주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월
제 주 차에는

당 인구동태 조성지역(비교지역포함)
에서 인구의 자연동태 및 사회동태의 보
고사항이 없음으로 이를 보고하나이다.

지역번호 번

조성원 성명

(사본 보관용)

5. 人口動態 造成活動 業務指導書

인구동태 조성업무 지도서(No. 1)

1971. 11. 15.

우선 귀하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귀하께서 참여하고 있는 본 인구동태 신고 개선사업은 귀하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매주 보내고 있는 주말업적 보고는 본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업무로서 본 연구원에서는 이를 매주 접수하여 학술적, 통계적인 방법으로 처리, 집계하고 있는 바, 다음 몇가지를 지적하며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 정 사 항

1. 동태사항 발견시 이를 신고하도록 계몽 및 조성하고, 법정기일(출생 14일, 사망 10일, 전출입 14일, 결혼, 이혼은 즉시)이 지난 후에는 이에 관하여 즉시 보고하며, 신고를 안했을 시는 계속 계몽 조성하여 신고후 그 사실을 다시 보고한다. 위 경우 보고서의 비고란에 “몇월 며칠자 보고의 수정임”을 명기할 것.
 2. 1971년 9월 1일 이전의 모든 동태 사항은 본 사업의 보고에 해당 안됨.
 3. 전입의 경우는 매 가구원당 보고서 한장씩 작성하며 전출의 경우 전출자 전원의 성명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4. 모든 동태사항은 해당 조성지역(대조지역포함)내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5. 주말보고는 동태사항의 유, 무를 막론하고 매주 보고할 것.
- 이상 지적된 사항을 각별히 명심하여 차후의 업무수행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끝.

인구동태 조성업무 지도서(No. 2)

1971. 11. 25.

1971년 11월 19일자로 귀하께 발송된 “시정사항”내용 중 하기 사항은 오식이었던 고로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971. 11. 19.자 내 용	수 정 내 용
시정사항중 제4항의 ()속 내용 즉 <u>대조지역포함</u>	좌기의 내용을 <u>비교지역포함으로</u> 수정함. 즉 푸른 카드

독 촉 : 귀하의 노고를 치하하며 다음 사항을 독촉합니다.

1. 대조지역(붉은카드) 기초조사 결과를 송부하지 않은 다음 지역은 11

월 30일한 당 연구원으로 필히 송부할 것.

해당지역 : 인천동구, 춘성군, 옥구군, 영일군, 월성군, 의령군, 울주군 보건소지역 이상 7개지역 끝.

인구동태 조성업무 지도서(No. 3)

1971. 12. 15.

막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겠습니다. 경제기획원 통계국은 연말을 맞아 인구동태 신고향상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전국적인 인구동태 신고계몽기간으로 정하고 일체의 과태료를 면제하며 신고에 따른 모든 편의를 읍·면·동사무소에서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에 우리는 동 기간을 이용 최대한의 활동을 하여 타지역(인구동태조성지역이 아닌 여타의 지역) 보다 월등한 신고율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이에 귀하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 연구원에서는 새해를 맞아 달력을 제작하여 각 조성원에게 보낼 계획인 바 각조성원은 달력 수령 즉시 조성지역내의 각 가정에 년말까지 배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각별 유의 바랍니다. 또한 주말업적보고는 보고사항의 유무를 막론하고 매주 월요일 당 연구원 연구과로 필히 우송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

인구동태 조성업무 지도서(No. 4)

1971. 12. 28.

본 인구동태 사업이 시작된지도 어언 5개월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조성원 여러분은 본 사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기초적인 개념이 부족한듯 하며, 또한 가장 중요한 업무의 하나인 주말업적보고의 양과 질이 본 체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조성원께서 보내는 주말업적 보고서는 본 인구동태 관계자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가치있는 자료로 쓰여지고 있으며, 특히 그 서식내용의 충실도, 신고율 및 재보고시의 신고율 등 한가지 한가지를 인력과 계산기로서 검증하고 있는 바, 기대하던 만큼의 충실도가 없다는 심증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조성원은 이미 부진했던 지난 몇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무궁한 전도를 위하여 각자 재분발 있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각 조성원께서 보내온 모든 자료(가구현황기록표, 주말보고 등)와 각 조성원이 보관하고 있는 가구현황 요계표 및 주말보고 사본은 당 연구원에서 수시로 파견되는 현지 지도원에 의하여 현지 행정담당자와 대조 확인케 될 것입니다. 끝.

<자 료 1>

(1971. 10. 1. 현재)

지	역	인 구 (인)	가 구 수(가구)	가구당	가구원수
전	국	31,469,132	5,864,330		5.37
시	지	12,955,265	2,530,693		5.12
군	부	18,513,867	3,333,637		5.55

만일 귀하의 담당조성지역(비교지역포함)의 가구수가 1,000이라면 그 인구는

- 1) 시 지역인 경우 $1,000 \text{가구} \times 5.12 \text{명} = 5,120 \text{명}$
- 2) 군부지역인 경우 $1,000 \text{가구} \times 5.55 \text{명} = 5,550 \text{명}$ 으로 추산할 수 있다.

<자 료 2>

지	역	출 생 율	사 망 율
전	국	32.9	8.1
시	지		6.8
군	부	32.9	8.9

우리는 <자료 1>에서 만일 가구수가 1,000이라면 그 총 가구원수는 시지역인 경우 5,120명, 군부지역인 경우 5,550명으로 추산함을 보았다.

그러면 만일 가구수가 1,000이라면 그 지역내의 출생건수 및 사망건수는 대략 어떻게 나타날까? 우리는 <자료 2>에서 출생건수와 사망건수를 추산해 낼 수 있다. 단, <자료 2>의 출생율, 사망율은 인구 1,000명당 발생할 수 있는 추산치이다. 그러므로 만일 귀하담당 조성지역의 가구수가 1,000이라면 그 출생 및 사망건수는

1) 시지역인 경우 :

$$(1) \text{ 출생 } \frac{5,120 \text{명} \times 32.9}{1,000} = \frac{168,960}{1,000} = 168$$

고로 연간 출생건수는 168건이면, 이를 월별로 보면 $168 \div 12 = 14 \text{명}$, 즉 월별 출생건수는 약 14건이다.

(2) 사망 : 같은 계산 방식으로

$$\frac{5,120 \times 6.8}{1,000} = \frac{34,816}{1,000} = 35 \text{(명)} \quad 35 \div 12 = 2.9 \text{명}$$

즉, 월별 약 3건이다.

2) 군부 지역인 경우(가구가 1,000가구라면)

$$(1) \text{ 출생 } \frac{5,550 \times 32.9}{1,000} = 183 \text{명(연간)}$$

월별로는 $183 \div 12 = 15 \text{명}$

$$(2) \text{ 사망 } \frac{5,550 \times 8.9}{1,000} = 49 \text{(연간)}$$

월별로는 $49 \div 12 = 4 \text{명}$ 이다.

이상과 같은 계산을 표로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지 역	가 가 상 수	가구원수	연 출 생 간 수	월 출 생 간 수	연 사 망 간 수	월 사 망 간 수
시 지 역	1,000	5,120	168	14	35	3
군 부 지 역	1,000	5,550	183	15	49	4

- 1)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였음.
- 2) 모든 통계숫자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도 있음.
- 3) 참고자료 : 1) 1970년 센서스자료
2) 1971년 출산력조사자료

이상의 업무지도서 No.4의 공식을 귀하의 지역에 적용하여 귀지역 출생, 사망 건수를 추산하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업무에 참고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

인구동태 조성업무 지도서(No.5)

1971. 12. 28.

1. 가구번호관계 : 한지역에 100 가구가 있는 경우 그 중 가구번호 50번가구가 전 출하였다면 50번이란 번호는 영원히 죽는 것임. 또 전입이 있으면 101번, 102 번 순으로 그 번호를 줄 것.
2. 전출, 전입시의 주소관계 : 몇번지까지 모를 경우는 그 지역명까지라도 알아 서 필히 적어 보낼 것. (예 : 최소한 ○○시 혹은 ○○군 까지는 적어야 함)
3. 전입, 전출관계 : 전입의 경우 매가구원당 보고서 한장씩 자세히 적고 전출의 경우는 전가구원의 성명을 비고란에 적을 것을 재삼 당부하며, 단신전출 혹은 전입인 경우 비고란에 그 내용을 쓸 것.
4. 모든 보고사항의 인적관계 사항은 누락없이 다 기록할 것.
5. 결혼, 이혼, 단신 전출입등의 사건시 비고란을 충분히 활용하여 자료 수집에 혼돈을 일으키지 않도록 할 것.
6. 신고 법정기일 후에라도 계속 조성활동을 하여 신고하면 “몇월 며칠자 누구 의 재보고임”을 비고란에 명기할 것.
7. 업무에 관한 일체의 공적인 서신은 자료수집 담당자에게 보낼 것.
8. 주말보고를 보낼 때 편지결봉에 “연구과 인구동태 담당자”를 필히 쓸 것(다른 과로 배달되는 경우 있음). 끝.

<참 고>

1. 지역번호 10번 이하는 자료정리가 덜 된 관계로 가구번호 관계의 체크는 못했음.
2. 해당지역 이외의 지적사항도 각자 참고 있기 바람. 끝

지역별 동태 사항 추계 (참고자료)

지역번호	지역	조성원성명	조성지역가수	추정가구원	출생수		사망수		결혼건수		이혼건수	
					연간	월간	연간	월간	연간	월간	연간	월간
1	서울용산구	전재복	556	2,846	93.6	7.8	19.4	1.6	34.2	2.8	1.4	0.1
2	부산 서구	전애순	440	2,252	74.1	6.2	15.3	1.3	27.0	2.3	1.1	0.1
3	경기 인천	최숙자	681	3,486	114.7	9.6	23.7	2.0	41.8	3.5	1.7	0.1
4	경기용인군	황근숙	760	4,220	138.8	11.6	37.6	3.1	50.6	4.2	2.1	0.2
5	경기강화군	김옥분	763	4,237	139.4	11.6	37.7	3.1	50.8	4.2	2.1	0.2
6	강원춘성군	심재준	793	4,404	144.9	12.1	39.2	3.3	52.8	4.2	2.2	0.2
7	강원명주군	송명례	718	3,987	131.2	10.9	35.5	3.0	47.8	4.0	2.0	0.2
8	충남홍성군	권영숙	861	4,781	157.3	13.1	42.6	3.5	57.4	4.8	2.4	0.2
9	충남금산군	이평훈	1,004	5,575	183.4	15.3	49.6	4.1	70.0	5.8	2.8	0.2
10	충남부여군	이범재	924	5,131	168.8	14.1	45.7	3.8	61.6	5.1	2.6	0.2
11	충북보은군	조태홍	703	3,904	128.4	10.7	34.7	2.9	46.8	3.9	2.0	0.2
12	충북옥천군	홍순희	1,070	5,942	195.5	16.3	52.9	4.4	71.3	5.9	3.0	0.2
13	전북옥구군	김영애	860	4,776	157.1	13.1	42.5	3.5	57.3	4.8	2.4	0.2
14	전북완주군	구혜숙	1,044	5,797	190.7	15.9	51.6	4.3	69.6	5.8	2.9	0.2
15	전남곡성군	양화자	947	5,258	173.0	14.5	46.8	3.9	63.1	5.3	2.6	0.2
16	전남나주군	정부길	966	5,364	176.1	14.7	47.7	4.0	64.4	5.4	2.7	0.2
17	전남보성군	이정희	759	4,215	138.7	11.6	37.5	3.1	50.6	4.2	2.1	0.2
18	경북의성군	권소영	1,050	5,831	191.8	16.0	51.9	4.3	70.0	5.8	2.9	0.2
19	경북영일군	김명옥	1,023	5,681	186.9	15.6	50.6	4.2	68.2	5.7	2.8	0.2
20	경북월성군	이귀순	1,132	6,286	206.8	17.2	55.9	4.7	75.4	6.3	3.1	0.3
21	경남삼천포	김경자	385	1,971	64.8	5.4	13.4	1.1	23.7	2.0	1.0	0.1
22	경남의령군	박지환	880	4,887	160.8	13.4	43.5	3.6	58.6	4.9	2.4	0.2
23	경남울주군	김징자	1,436	7,974	263.3	21.9	71.0	5.9	95.7	8.0	4.0	0.3
24	제 주 시	양순자	540	2,764	90.9	7.6	18.8	1.6	33.2	2.8	1.4	0.1
25	북 제 주 군	양정희	974	5,409	177.9	14.8	48.1	4.0	64.9	5.4	2.7	0.2
	계		21,269	116,978	3,848.9	321	1,013.2	84.3	1,407	117.1	58.4	4.7

※ 1) 소수점 아래 2자리에서 반올림 하였음.

2) 모든 통계적인 숫자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도 있음.

참고자료 : (1) 1970년 센서스 자료

(2) 1971년 출산력 조사자료

(3) 인구와 보건(저자: 권이혁)

(4) Instruction to Demograhpy (Author:Spiegelmen)

인구동태 조성업무 지도서(No. 6)

1972. 2. 4.

지도하는 자와 지도받는 자가 혼연일체로 열과 성을 다한 보수훈련결과 그 후 모든 조성원들의 분발에 힘입어 이제 본 인구동태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그 전도가 밝아진 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며, 다음 사항을 지적 통보하니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할 것.

1. 추가양식 2 선용에 관한 것 : 지난 1971년 12월 5일 제작하여 보낸 추가양식 2 즉, 동태사항이 없었을지 보내는 주말보고 양식을 악용하는 예가 종종 있음. 이의 제작 발송 목적이 간단없는 상호 연락을 위함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악용치 말 것을 지적 통보함.
2. 사망 원인 기재에 관한 사항 : 이 내용의 목적은 한국 사람의 연령별 사망 원인에 관한 연구에 있음을 명심하고 일반적으로 노환, 노후, 병사 등등으로 구별치 말고 최대한 병명과 사망원인(사고사 인 경우)을 자세히 적어 보낼 것.
3. 전입 보고에 관한 사항 : 전입 보고서 조성원이 보내는 가구현황 기록표에 주말 보고서 용지를 편으로 꽂아서 보낼 것. 그렇지 않을 경우 두 자료가 서로 섞이는 일이 종종 있어 자료처리 및 집계에 혼돈을 야기하는 일이 있음.
4. 주말보고에 관한 것 : 주말보고 송부에 관해서는 예의 검토중이며 이에 따른 별도 조치를 강구중임.
5. 1972년 1월 발생사항은 2월 20일경 집계 분석하여 배포할 것임. 끝.

인구동태 조성업무 지도서(No. 7)

보건조직망을 통한 인구동태 신고 개선에 관한 본사업은 각 조성요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차차 본궤도에 오르고 있음을 모든 조성원과 함께 기뻐하며 그간 수집된 자료의 내용 집계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주말업적 보고내용 집계

<표 1>		(1972년 1월분)					
구분	출 생	사 망	전 입	전 출	결 혼	이 혼	
보 고 량	41/125	17/38	110/131	115/199	9/55		
신 고 율 (%)	33	45	84	588	16		
추 가 보고 전 수							
진 수	9	3	5	6	2		

1. 1972년 2월 14일부 집계임.
2. 지역별 내용집계는 1972년 2월 25일자로 발송할 것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월분(1971. 10. 11. 12.)의 추가보고와 신고조성 후 수정보고가 미흡하나마 취급되고 있다. 본 사업의 기본 목적에 입각하여 그간의 보고사항 집계는 대조지역의 제반 사항 및 기타의 자료(기획원 통계국)와 제 1차

로 상호비교, 분석평가 될 것이다. 그 시기는 1972년 3월 초순으로 예정되는 바 이에 조성원 각자는 그간의 발견 못한 모든 동태사항을 적극 발견해 내고 미신고 사항의 신고에 최선을 다하길 바라는 바이다.

지시 내용

- 1) 1971. 10. 1. ~1972. 2. 28.까지의 모든 동태 사항은 누락없이 발견하여 보고할 것
- 2) 미신고 된 동태사항을 최대한 신고 조성할 것.

기한 : 1972년 3월 6일한

- 3) 대조지역의 동태 조사는 1972년 2월 28일부로 간략히 실시할 예정이나 이의 확실한 일자 및 방법은 추후 하달할 것임.
- 4) 수정보고는 반드시 붉은색으로 사전을 그을 것, 자세한 내용은 조성원 지침서를 참조할 것.

참고 : 수집된 동태내용의 양이 아직도 추정 건수에 현저히 떨어지므로 각 지역 별로 발견에 상당한 누락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끝.

인구동태 조성업무 지도서(No. 8)

1972. 3. 2.

1. 조성지역내 인구동태 사항 누락분 추가발견 및 신고조성 :

업무지도서 No. 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조성원이 과거 6개월간 동태 사항을 발견한 건수는 본 원 추계 숫자에 비추어 볼 때, 약 반 정도 밖에는 되지 않음. 각 지역별 실적과 업무지도서 No. 6의 추계 와를 비교 검토할 것.

본 원에서는 3월 중순경 그간의 업무실태를 대조 지역의 동태 사항 및 외부 자료와 비교 분석하여 평가할 예정임. 고로 각 조성원은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그간의 누락분을 발견해 내고 신고를 조성하여 그 율을 높여 추가 및 수정보고 하여 주길 바람. 추가발견 및 조성대상은 1971년 9월 1일부터 현재 사이의 모든 인구동태 사항임. 강조기간중 각 조성원은 조직망에 의존치 말고 직접 활동을 강화할 것.

2. 응답자 :

주말업적 보고서내의 응답자란은 본 연구사업의 목적상 앞으로 어떠한 조직망을 이용하여야 효과적인 조성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내용임. 고로 응답자와 조성원과의 관계는 성명 옆에 ()를 하고 명확히 기입 할 것.

예 : ① 조성원의 조직을 통해 알았을 경우(농촌중심)...응답자 성명옆()속에 면요원(가, 결, 모), 어머니회장 혹은 회원, 조사원, 호명계장, 리장, 반장 4H회장 혹은 회원 등.

② 조성원이 직접 알았을 경우(도시중심)...응답자 성명옆 ()속에 가구주, 가구주의 처, 복덕방, 가게집, 통장, 반장, 동호명계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되나 상기의 예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적합한 명칭을 기재할 것.

③ 미신고 이유 :

주말업적 보고서 내의 미신고이유 기재란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떠한 사정
으로 신고를 안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내고 앞으로 적기신고를 위하여는 어
떠한 점을 계몽 혹은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분석해 내어 관계당국에 건의할
중요사항임. 고로 미신고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기재할 것, 예 1) 출생의
경우 : 성명미작, 신고의식 부족, 줌 있다가, 무지, 바빠서, 혼인신고를 안해
서, 출생아가 약해서, 태만, 등

2) 사망의 경우 : 상(1년 혹은 3년)이 지난뒤, 재산정리때문, 출생신고도
안해서, 바빠서, 줌 있다가, 태만, 무지, 슬픈일을 다시 생각키 싫어서
등으로 구분될 수 있겠으나 이 역시 모든 이유 전부의 표현이나 나열이라
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각 경우별로 이유를 가장 알맞고 간단 명료하게 기
재 할 것.

4. 연구원 주소 :

각 조성원이 보내는 귀중한 자료인 주말업적 보고서가 봉투의 주소 불명확
으로 인하여 다른 각종 우편물과 섞이는 사례가 종종 있음. 고로 봉투에는
반드시 “연구과 인구동태실”을 명기할 것.

5. 추가 및 수정보고 :

추가보고는 과거에 발견 못한 것을 발견하여 보고하는 것으로서 그 양식 및
방법은 보통 보고서와 동일함. 수정보고의 의의 및 방법은 “조성원 지침사
항”(주말 업적보고 작성요령)을 참조할 것. 이상의 업무지도내용을 잘 참
작하고 실천하여 전도 무궁한 연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서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 끝

인구동태 조성업무 지도서(No. 9)

1972. 3. 3.

영아 사망의 처리문제

영아사망은 생후 1년 미만의 사망, 신생아 사망은 생후 28일(4주) 이내의 사
망이다. 인구조사(센서스)나 기타의 인구 증·감을 연구하기 위한 어떠한 조사
에 있어서도 영아사망이나 신생아 사망은 모두가 계산되며 1명의 영아 사망은
출생 1건, 사망 1건으로 두번 계산되는 것이다. 본 인구동태 사업에 있어서도
같은 계산방법이 적용되지만 호적법에는 생후 14일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20여일 후에 그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고로 출생신고를 하
기 전에 사망한 아이는 자연히 사망신고도 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자칫 잘못하면
출생 1건, 사망 1건으로 처리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서울대 논문집 15권(1964) 박형중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1962—1963사이 충남
전역의 영아 사망율은 연간 평균 1,000명당 66.8명 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영아

사망 중에도 신생아 사망이 43.1%를 차지하고 있다(박형중 : 우리 나라 농촌지역의 영아 사망에 관한 연구). 본 인구 동태 사업에는 출생의 경우 당월 신고율은 30%내외 이므로 대부분의 출생건은 1개월 이후에 신고할 생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고로 본 인구동태 연구사업에서는 자칫하면 영아사망 특히 신생아사망 건을 놓칠 우려가 있다. 영아사망 건의 보고는 신고에 관계 없이 출생 1건, 사망 1건으로 계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사망은 인구의 자연 증가율, 출생율, 사망율 등을 계산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니 각별히 이점 유의할 것. 지시내용 : 1) 영아사망(특히 신생아 사망)은 출생 1장, 사망 1장(주말보고서)을 각각 보낼 것.

2) 대상기간 : 1971. 9. 1. 현재까지의 발생분 전부 끝.

인구동태 조성업무 지도서(No. 10)

본 연구사업의 효과를 평정 평가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지도 No. 10을 하달하니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할 것.

제목 : 대조지역 인구동태 신고사항 일제 조사

1. 조사대상 기간 및 지역

1) 조사대상 : 1971. 9. 1. ~ 1972. 2. 29. (6개월간)의 인구동태 사항중 신고(혹은 등록)된 사항.

2) 조사지역 : 25개 각 대조지역 전역

3) 조사기간 : 1972. 3. 20. ~ 4. 3. 5일간

2. 조사 내용

대조지역 내의 출생, 사망, 전입, 전출, 결혼, 이혼 등 인구의 자연 및 사회동태.

3. 조사 방법

각 대조지역 관할 읍·면·동(시·구)사무소에서 1971. 9. 1. ~ 1972. 2. 29. 사이에 신고(및 등록)된 인구동태 사항을 전부 발췌하여 주간업무보고 양식에 이기한다

1) 시부 : ㄱ 현 거주지 및 본적이 대조지역내의 가구 : 시청 혹은 구청에 가서 호적열람을 하여 신고된 것을 발췌한다.

ㄴ. 현거주지는 대조지역이고 본적은 타지역인 가구 :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사항을 열람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에 정리된 것은 신고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군부 : ㄱ. 현 거주지 및 본적이 대조지역내의 가구 : 읍, 면, 사무소에 가서 호적 열람을 하여 신고된 것을 발췌한다.

ㄴ. 현 거주지는 대조지역내이고 본적은 타 지역인 가구 : 읍, 면 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사항을 열람한다.

4. 조사 범위

1) 대조 지역내에 현주소 및 본적을 둔 모든 가구의 인구동태 사항중 시·구·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된 모든 사항.

- 2) 대조 지역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본적은 타지역인 가구의 인구동태 사항 중 읍·면·동·사무소에 신고(주민등록)된 모든 사항.

5. 보고 방법

- 1) 주말 업적보고와 동일함. 단, 보고서 상우단 “자연동태” 혹은 “사회동태” 라고 () 속에 인쇄된 바로 옆에다 붉은 색으로 “대” 자를 매 보고서 마다 쓴다.
- 2) 전입(가구번호를 새로 갖게 되는)인 경우 가구현황 기록표를 동시 작성해야 하니, 업무지도서 No. 6의 사항에 준한 방법으로 보고 한다.

※ 주의 사항

1) 발생일자

- ㄱ. 신고(등록)된 발생일자 : 시·구·동·읍·면사무소에 기재돼 있는 발생일자(출생인 경우 출생일, 사망=사망일, 결혼=결혼일)를 주말 업적보고의 4번 신고일 바로 밑 난의 신고를 안했을 경우 이유를 쓰는 난에다 기재 한다.
- ㄴ. 사실상 발생일자 : 주말 업적보고의 3번 발생일자 난에다 기재한다. 즉 사실상 발생일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알 수 없으므로 직접 해당 가구에 방문하여 실제 발생일자를 알아내어 기재한다.

이 경우 사실상 발생일자가 몇년전의 것이라도 사실대로 기재하여 동기간 내에 신고(및 등록) 된 것은 모두 연구원으로 송부한다.

- 2) 실제 발생일자를 알기 위하여 해당 가구를 방문할 때 신고조성을 하지 말 것
- 3) 금번 대조지역 일제 조사의 모든 보고 내용은 모두 신고된 사항임, 끝.

13	전북 옥구군	김영애	858	4,651	133.9	11.2	41.4	3.4	55.8	4.7	2.3	0.2
14	전북 완주군	구혜숙	1,032	5,833	168.0	14.0	51.9	4.3	70.0	5.8	2.9	0.2
15	전남 곡성군	양화자	991	5,289	152.3	12.7	47.1	3.9	63.4	5.3	2.6	0.2
16	전남 나주군	정부질	969	5,229	150.6	12.5	46.5	3.9	62.7	5.2	2.6	0.2
17	전남 보성군	이정희	754	4,104	118.2	9.8	36.5	3.0	49.2	4.1	2.1	0.2
18	경북 의성군	권소영	1,046	5,236	150.8	12.6	46.6	3.9	62.8	5.2	2.6	0.2
19	경북 영일군	김명욱	1,022	5,134	147.9	12.3	45.7	3.8	61.6	5.1	2.6	0.2
20	경남 월성군	이귀순	1,124	5,913	170.3	14.2	52.6	4.4	71.0	5.9	3.0	0.2
21	경남 삼천포	김경자	383	2,502	72.1	6.0	17.0	1.4	30.0	2.5	1.3	0.1
22	경남 의령군	박지환	880	4,795	138.1	11.5	42.7	3.6	57.5	4.8	2.4	0.2
23	경남 울주군	김정자	1,333	6,941	199.9	16.7	61.8	5.1	83.3	6.9	3.5	0.3
24	제주 제주시	양순자	542	2,560	73.7	6.1	17.4	1.5	30.7	2.6	1.3	0.1
25	제주 북제주군	양정희	960	3,906	112.5	9.4	34.8	2.9	46.9	3.9	2.0	0.2
	계		21,101	112,405	3,237.0	270.0	972.0	81.0	1,348.1	112.4	56.2	4.8

주: 1) 가구수 및 가구원수는 기초조사 원료 명세의 수치임.

2) 기초조사 이후 현재까지 각 지역별 전출입 차이로 인하여 가구 및 가구원수가 약간 다를 수 있음.

3) 소수점 아래 2자리에서 반올림 하였음.

4) 모든 통계적인 숫자는 지역 사회의 특성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도 있음.

5) 1972년 1월 14일자 추계는 가구원수를 추정하여 계산한 것이고, 본 추계는 실 수에 의한 계산임.

6) 전출입에 관한 추계는 4월 중으로 산출하여 하달할 것임.

인구동태 조성업무지도서 (No. 11)

1972. 3. 18.

1. 대조지역 일제 조사에 관한건 : 1972. 3. 20. — 4. 3. 까지 실시하는 대조지역 인구동태사항 신고분(등록분) 일제조사는 가연 22—79와 같이 실시할 것이며, 본부에서 현지도도를 동 기간내에 매 지역에 나갈 것임.
 2. 조성지역 일제조사 실시 : 대조지역 조사기간 내에 조성지역의 미발견 건수(지역별 동태사건 추계치 각 지역의 실적)를 완전 발견하여 최대한 신고 조성하고 4월 3일까지 보고 완료할 것. 본부에서는 4월 3일 자료 집계를 중단하고 중간 결산할 것임.
 3. 영유아 사망전에 관한 사항 : 1972. 3. 3일자 업무지도서 No.9를 숙독하고 그대로 이행할 것.
- ※ 조성지역내 미발견건수 발견을 위한 일제조사를 위하여 각 조성원은 조직망을 총동원하고, 직접 가정방문에 의한 활동을 전개할 것.

인구동태조성 업무지도서 (No. 12)

1972. 3. 24.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금번 대조지역 일제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끝.

1. 1972. 3. 3일자 “지역별 주말업적보고 내용집계”는 일부 지역의 자료집계에 차질이 있으므로 전면 무효화하니 양지할 것.
2. 대조지역 일제조사에 있어서 현거주지 및 본적이 모두 대조지역내의 가구라도 전입, 전출 혹은 여자의 결혼 등은 주민등록을 열람하여야 함.
3. 조성지역에 있어서 1971. 9. 1. 현재까지 동태사항별 미발견 건수는 1972. 3. 17일자 업무지도 참고자료의 각 사항별 월간 발생건수에 그간의 개월수를 곱하고 거기에서 그간 각 조성원이 보고한 건수(1972. 2. 14. 주말업적 보고 내용집계)를 빼면 됨.
즉, 사항별 월간추정건수×개월수(7) - 보고건수 = 미발견 건수임. 끝.

지역별 동태사항 미발견 건수추계 (1971.9.1.~1972.2.29.)

주 : 1. 지역별 위의 숫자는 발생 추정건수
2. 지역별 아래의 숫자는 보고된 건수(72.4.8.현재)

지역	구분												이 후												
	출				생				사					결	향	사	향	이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계
1. 전 재 북	6.1	6.1	6.1	6.1	6.1	6.1	6.1	6.1	1.4	1.4	1.4	1.4	1.4	1.4	1.4	1.4	2.5	2.5	2.5	2.5	2.5	2.5	2.5	15.0	0.6
2. 전 에 슨	0	1	2	3	3	1	3	10.0	0	1	0	0	0	0	0	1.0	0	1	0	0	2	0	0	3.0	0
3. 려 숙 자	3	0	5	7	5	5	5	25.0	0	1	0	0	0	0	0	3.0	0	2	0	0	1	0	0	3.0	0
4. 황 근 숙	7.9	7.9	7.9	7.9	7.9	7.9	7.9	47.4	1.9	1.9	1.9	1.9	1.9	1.9	1.9	11.4	3.3	3.3	3.3	3.3	3.3	3.3	3.3	19.8	0.8
5. 김 우 분	3	10	6	5	1	3	28.0	0	2	1	0	0	0	0	0	6.0	1	0	1	0	0	0	0	2.0	0
6. 김 경 회	9.7	9.7	9.7	9.7	9.7	9.7	9.7	58.2	3.0	3.0	3.0	3.0	3.0	3.0	3.0	18.0	4.0	4.0	4.0	4.0	4.0	4.0	4.0	24.0	1.0
7. 김 우 분	2	6	4	5	8	9	34.0	2	3	1	2	2	2	1	11.0	0	1	3	1	0	0	0	0	5.0	0
8. 김 우 분	8.7	8.7	8.7	8.7	8.7	8.7	8.7	52.2	2.7	2.7	2.7	2.7	2.7	2.7	2.7	16.2	3.6	3.6	3.6	3.6	3.6	3.6	3.6	21.6	0.9
9. 김 우 분	0	4	7	4	3	6	24.0	0	3	3	3	3	3	2	11.0	0	1	0	0	0	0	0	0	1.0	0
10. 김 경 회	11.0	11.0	11.0	11.0	11.0	11.0	11.0	66.0	3.4	3.4	3.4	3.4	3.4	3.4	3.4	20.4	4.6	4.6	4.6	4.6	4.6	4.6	4.6	27.6	1.2
11. 김 우 분	1	16	6	5	4	8	40.0	1	0	1	2	2	2	3	9.0	0	0	5	1	1	1	0	0	7.0	0

6. 週末業績報告 接受結果

주말 업적 보고 접수 결과 (10月)

'71. 11. 5.

지역	구성원	10 월				월 계
		1 주 차		2 주 차		
		10. 4.	10. 11.	10. 18.	10. 25.	
1	전 재 복	×	×	×	×	○
2	전 애 순	○	○	○	×	3
3	최 숙 자	×	×	○	○	2
4	황 근 숙	×	×	○	○	2
5	김 욱 분	×	×	×	×	○
6	심 재 준	×	×	×	×	○
7	송 명 례	○	○	○	○	4
8	권 영 숙	×	×	×	○	1
9	이 평 훈	×	×	×	○	1
10	이 범 재	×	×	×	○	1
11	조 태 흥	×	○	○	○	3
12	이 진 구	○	○	○	○	4
13	김 영 애	○	○	○	×	3
14	권 순 화	○	○	○	○	4
15	양 화 자	×	○	○	○	3
16	정 부 질	○	○	○	○	4
17	이 정 희	○	×	○	○	3
18	권 소 영	○	○	○	○	4
19	김 명 욱	○	×	○	×	2
20	이 귀 순	×	○	○	×	2
21	김 경 자	○	×	○	○	3
22	박 지 환	×	×	×	×	0
23	김 정 자	○	○	×	○	3
24	양 순 자	×	×	×	○	1
25	양 정 희	○	○	○	○	4
	계	12	12	16	17	57 (57%)

○ : 접수

× : 미접수와 인구동태사건의 발견 또는 신고건수가 전혀 없는 경우

주말 업적 보고 접수 결과 (11월)

'71. 12. 4.

지 역	조 성 원	주 월	11 월					월 계
			1 주 차	2 주 차	3 주 차	4 주 차	5 주 차	
			11. 1.	11. 9.	11. 15.	11. 22.	11. 29.	
1	전 재 복		×	○	×	○	×	2
2	전 애 순		○	○	○	○	○	5
3	최 숙 자		○	×	×	○	○	3
4	황 근 숙		○	×	×	○	×	2
5	김 옥 분		×	×	○	○	○	3
6	심 재 준		○	○	○	×	○	4
7	송 명 테		○	×	×	×	○	2
8	권 영 숙		○	○	×	○	○	4
9	이 평 훈		×	○	○	○	○	4
10	이 범 재		○	○	×	○	×	3
11	조 태 흥		×	×	○	○	○	3
12	홍 순 회		○	○	×	×	×	2
13	김 명 애		○	○	×	×	○	3
14	구 혜 숙		○	○	○	○	○	5
15	양 화 자		×	×	○	×	○	2
16	정 부 질		○	○	○	○	○	5
17	이 정 회		×	○	○	○	○	4
18	권 소 영		○	×	○	○	×	3
19	김 명 옥		○	○	○	○	×	4
20	이 귀 순		○	×	×	○	○	3
21	김 경 자		○	○	×	×	○	3
22	박 지 환		×	×	○	×	×	1
23	김 징 자		○	○	○	○	○	5
24	양 순 자		×	○	○	○	○	4
25	양 정 회		○	○	○	○	×	4
	계		17	16	15	18	17	83 (66%)

※ 범례
○ : 접수
× : 미접수

주말 업적 보고 접수 결과 (12月)

'72. 1. 7.

지역	조성원	12 月 (1971年)				월 계
		1 주 차 12. 6.	2 주 차 12. 13.	3 주 차 12. 20.	4 주 차 12. 27.	
1	전 재 복	○	○	○	○	4
2	전 애 순	○	○	○	○	4
3	최 숙 자	○	○	○	○	4
4	황 근 숙	○	○	○	○	4
5	김 옥 분	○	○	○	○	4
6	심 재 준	○	○	○	○	4
7	송 명 례	×	○	○	○	3
8	권 영 숙	○	○	○	○	4
9	이 평 훈	○	○	○	○	4
10	이 범 재	○	○	○	○	4
11	조 태 홍	○	○	○	○	4
12	홍 순 회	○	○	○	○	4
13	김 영 애	×	×	×	×	0
14	구 혜 숙	○	○	○	○	4
15	양 화 자	×	×	○	○	2
16	정 부 질	○	○	○	○	4
17	이 정 회	○	○	○	○	4
18	권 소 영	○	×	○	○	3
19	김 명 옥	○	○	○	○	4
20	이 귀 순	○	○	○	×	3
21	김 경 자	○	○	○	○	4
22	박 지 환	○	○	×	×	2
23	김 정 자	○	○	○	×	3
24	양 순 자	×	○	○	○	3
25	양 정 회	×	○	○	○	3
	계	20	22	23	21	86 (86%)

주말 업적 보고 접수 결과 (1月)

'72. 2. 5.

지역	조성원	월 주	1 月					월 계
			1 주 차	2 주 차	3 주 차	4 주 차	4 주 차	
			1. 3.	1. 20	1. 17.	41. 24.	1. 31.	
1	전 재 복	○	○	○	○	○	5	
2	전 애 순	○	○	○	○	○	5	
3	최 속 자	○	○	○	×	×	3	
4	황 근 속	○	○	○	○	○	5	
5	김 옥 분	○	○	×	○	○	4	
6	심 재 준	○	○	○	○	○	5	
7	송 명 테	○	○	○	×	○	4	
8	권 영 속	○	○	○	○	○	5	
9	이 평 훈	○	○	×	×	○	3	
10	이 범 재	○	○	○	×	○	4	
11	조 태 홍	○	○	○	○	×	4	
12	홍 순 회	○	○	○	○	○	5	
13	김 영 애	○	○	○	×	○	4	
14	구 혜 속	×	×	×	○	○	2	
15	양 화 자	○	○	○	○	○	5	
16	정 부 절	○	○	○	○	○	5	
17	이 정 회	○	○	○	○	○	5	
18	권 소 영	○	○	○	○	○	5	
19	김 명 옥	○	○	×	○	○	4	
20	이 귀 순	○	○	○	○	○	5	
21	김 경 자	○	○	×	×	○	3	
22	박 지 환	○	○	○	○	×	4	
23	김 정 자	○	○	○	○	○	5	
24	양 순 자	○	○	○	○	×	4	
25	양 정 회	○	○	○	○	×	4	
	계	24	24	20	19	20	107 (86%)	

주말 업적 보고 접수 결과 (2月)

'72. 3. 5.

지 역	조 성 원	2 月				월 계
		1 주 차 2. 7.	2 주 차 2. 14.	3 주 차 2. 21.	4 주 차 2. 28.	
1	전 재 복	○	○	×	○	3
2	전 애 순	○	○	○	○	4
3	최 숙 자	×	○	○	○	3
4	황 근 숙	○	○	○	○	4
5	김 옥 분	○	○	○	○	4
6	심 재 준	×	○	×	○	2
7	송 명 례	○	○	○	○	4
8	권 영 숙	○	×	×	○	2
9	이 평 훈	○	○	○	×	3
10	이 범 재	○	○	○	○	4
11	조 태 흥	○	○	○	○	4
12	홍 순 희	○	×	○	○	3
13	김 영 애	○	○	×	×	2
14	구 혜 숙	○	○	○	○	4
15	양 화 자	○	○	○	×	3
16	정 부 질	○	○	○	○	4
17	이 정 희	○	○	○	○	4
18	권 소 영	○	○	×	○	3
19	김 명 옥	×	○	○	○	3
20	이 귀 순	○	○	○	○	4
21	김 경 자	○	○	○	○	4
22	박 지 환	×	×	○	×	1
23	김 정 자	○	○	○	○	4
24	양 순 자	○	○	○	○	4
25	양 정 희	○	○	○	○	4
	계	21	22	20	21	84 (84%)

주말 업적 보고 접수 결과 (3月)

'72. 4. 5.

지역	조성원	월 주	3 月				월 계
			1 주 차	2 주 차	3 주 차	4 주 차	
			3. 6.	3. 13.	3. 20.	3. 27.	
1	전 재 북	○	○	×	○	3	
2	전 애 순	○	○	×	○	3	
3	최 숙 자	○	○	×	○	3	
4	황 근 숙	○	○	○	○	4	
5	김 옥 분	○	○	○	○	4	
6	김 정 희	○	×	×	○	2	
7	송 명 례	○	○	○	○	4	
8	권 영 숙	○	×	×	○	2	
9	이 평 훈	○	○	○	○	4	
10	이 범 재	○	○	×	○	3	
11	조 태 홍	○	○	○	○	4	
12	홍 순 희	×	×	○	○	2	
13	김 영 애	○	×	○	×	2	
14	구 혜 숙	○	○	○	○	4	
15	양 화 자	○	○	○	○	4	
16	정 부 질	○	○	○	○	4	
17	이 정 희	○	○	○	○	4	
18	권 소 영	○	○	○	×	3	
19	김 명 옥	○	○	○	○	4	
20	이 귀 순	○	○	○	○	4	
21	백 순 옥	○	○	○	○	4	
22	박 지 환	○	○	×	○	3	
23	김 정 자	○	○	×	○	3	
24	양 순 자	×	○	○	○	3	
25	양 정 희	○	○	×	○	3	
	계		23	21	16	23	83 (83%)

주말 업적 보고 접수 결과 (4月)

'72. 5. 4.

지역	조성원	주	4 月					월 계
			1 주 차 2	2 주 차 9	3 주 차 16	4 주 차 23	5 주 차 30	
1	전 재 북	○	○	×	○	○	4	
2	전 애 순	○	○	○	○	○	5	
3	최 숙 자	○	○	○	×	○	4	
4	황 근 숙	○	×	○	○	×	3	
5	김 옥 분	○	○	○	×	○	4	
6	김 정 희	○	×	○	○	○	4	
7	송 명 례	○	○	○	○	○	5	
8	권 영 숙	○	○	○	×	×	3	
9	이 평 훈	○	×	×	×	○	2	
10	이 범 재	○	×	○	○	○	4	
11	조 태 흥	○	○	○	○	×	4	
12	홍 순 희	○	×	○	○	○	4	
13	김 영 애	×	○	×	○	×	2	
14	구 혜 숙	○	○	○	○	○	5	
15	양 화 자	○	○	×	○	○	4	
16	정 부 절	○	×	○	○	○	4	
17	이 정 희	○	○	○	○	○	5	
18	권 소 영	×	○	○	×	○	3	
19	김 명 옥	×	○	○	○	○	4	
20	이 귀 순	○	○	○	○	○	5	
21	백 순 옥	○	○	○	×	○	4	
22	박 지 환	○	○	×	×	×	2	
23	김 징 자	○	○	×	○	○	4	
24	양 순 자	○	○	○	○	○	5	
25	양 정 희	○	○	○	○	○	5	
	계	22	19	19	18	20	98 (78%)	

주말 업적 보고 접수 결과 (5月)

'72. 6. 3.

지역	조성원	월 주	5 月				월 계
			1 주 차 8	2 주 차 15	3 주 차 22	4 주 차 29	
1	전 재 복	○	○	○	○	4	
2	전 애 순	○	○	○	○	4	
3	최 숙 자	×	○	○	○	3	
4	황 근 숙	○	○	○	○	4	
5	김 옥 분	○	○	○	○	4	
6	김 정 희	○	○	×	×	2	
7	송 명 례	○	○	○	○	4	
8	권 영 숙	○	×	×	×	1	
9	이 평 훈	○	×	×	×	1	
10	이 범 재	○	○	○	○	4	
11	조 태 흥	○	○	○	○	4	
12	홍 순 회	○	○	○	○	4	
13	김 영 애	○	×	○	×	2	
14	구 혜 숙	○	○	○	○	4	
15	양 화 자	×	○	○	○	3	
16	정 부 질	○	○	○	○	4	
17	이 정 희	○	○	○	○	4	
18	권 소 영	○	○	○	○	4	
19	김 명 옥	○	○	○	○	4	
20	이 귀 순	○	○	○	○	4	
21	백 순 옥	○	○	○	○	4	
22	박 지 환	○	○	×	×	2	
23	김 정 자	○	○	○	○	4	
24	양 순 자	○	○	○	○	4	
25	양 정 희	○	○	○	○	4	
	계	23	22	21	20	86 (86%)	

7. 人口動態 統計制度와 관련된 諸問題

本 研究는 이미 研究目的에서 밝힌 바와 같이 既存 人口動態 申告制度의 變化없이 造成員의 活動에 의하여 人口動態 事件의 發生把握과 申告水準을 向上시키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人口動態 統計制度 자체에 대한 研究는 除外되어 있다.

그러나 造成員의 活動은 申告制度의 改善으로 더욱 촉진될 수 있다거나, 또는 本 研究가 完了된 後 本 研究 結果와 制度的 側面을 함께 考慮해야할 단계가 있게 된다면, 이러한 경우에 대처하여 미리 制度的 側面을 고려해 보는 것은 유익할 것이다.

人口動態 統計制度에서 고려되어야 할 主要 要因은 많지만, 그 중에서 人口動態 統計 蒐集 및 編輯, 通報者, 申告管理所 數 및 分布, 法定申告期限 등은 중요한 고려의 對象이다.

이들 要因에 관하여 유엔¹⁾ 간행물에서 소개한 내용과 우리 나라의 경우를 비교 검토한 내용이 다음에 論述되었다.

1. 人口動態 統計의 蒐集 및 編輯 機構

1) 申告蒐集機構

申告를 관장하는 申告機構는 크게 戶籍, 教會, 保健의 3個 形態로 區分될 수 있다.

地方 申告管理所는 國家 申告管理機構의 支所이거나 地方 戶籍行政의 一部分이지만, 이들은 公共行政의 어떤 높은 機關의 管轄하에 있게 된다.

유럽의 市 申告管理所와 아시아의 稅務署나 警察署는 地方 申告管理所의 例이며, 스칸디나비아 諸國의 教區登錄所는 教會當局의 管轄하에 있다. 保健奉仕의 한 機能으로 이루어지는 地方申告管理所의 例는 이집트의 保健局 申告管理所, 美國 및 캐나다의 州 및 道 保健省이 있다.

地方 戶籍申告事務所: 세계 대다수 國家(65個國 중 45個國)에서 出生, 死亡, 死産, 結婚, 離婚 등의 申告는 地方 戶籍申告事務所에서 이루어진다. 이들은 國家의 法務 또는 內務部 內의 中央申告 機構나 간접적으로 한 部(省)의 管轄하에 있는 地方 戶籍行政을 통하여 운영된다.

戶籍申告管理所를 갖는 49個國 以外에, 7個國은 戶籍申告事務所와 保健機關의 申告事務所를 포함하는 二重의 申告制度를 갖고 있고, 기타 2個 國家는 地方 申告事務所와 教會申告事務所를 갖고 있다.

1) United Nations, Handbook of Vital Statistics Methods, 1955.

申告義務를 戶籍 및 保健當局에 부여한 7個國은 버마, 이집트, 인도, 요르단, 터키, 베네주엘라 등이다. 이들 國家중 처음 5個國은 保健機關이 존재하는 곳(보통 都市地域)에만 그 責任을 保健當局에 부과하고, 農村地域에서는 마을의 區長이나 경찰관에게 그 責任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베네주엘라와 터키에서는 保健機關이 존재하는 地域에서만 二重의 申告事務所가 있다. 이 二重의 申告制度는 保健省의 資源을 서비스에 투입함으로써 申告를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발전된 것이다.

教會 申告管理所 : 주로 덴마크, 핀란드, 아이스랜드, 노웨이, 스웨덴 등 5個國에서 모든 人口動態 事件의 申告는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教會의 機能으로 되어 있다. 이 외에 캐나다의 Quebec 州도 이 예에 속한다.

保健部 申告管理所 : 버마, 캐나다, 이집트,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 파키스탄, 미국 등 9개국에서 保健當局이 申告分野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 중 5個國은 農村地域에 戶籍申告事務所가 있다. 美國과 캐나다에서는 州 및 保健省이 人口動態 事件의 申告와 地方 人口動態 統計의 蒐集 및 發表에 責任을 갖지만, 地方申告 官吏는 地方政府의 직원이며 행정적으로 保健當局에 責任을 갖지 않는다.

이집트, 버마, 인도, 요르단, 파키스탄 등 國家에서 都市 申告管理所는 保健官吏에 의하여 관리되지만, 農村申告管理所는 보통 마을의 區長, 경찰관, 말단 공무원, 稅金徵收員 또는 夜警員 등의 責任으로 되어 있다. 保健組織이 이들 5個國의 전국에 설치됨으로써 申告는 오직 保健省의 責任으로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人口動態 記錄 및 統計의 전반적 문제가 최근에 검토되고 改善을 위한 建議가 이루어진 인도에서는 人口動態 組織과 保健省의 人口動態 業務를 結合시키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는 느낌을 갖게 하였다.²⁾ 그러므로 인도는 1951년에 內務省의 行政管理 下에 人口 및 人口動態 統計에 관한 責任을 갖는 Office of the Register-General 을 설치하였다.

2) 編輯 機構

人口動態 事件에 관한 統計報告를 申告管理所에서 수집하고, 이들 報告에서 전국 人口動態 統計를 編輯하기 위한 政府機關의 責任은 보통 一般 統計法이나 特別 人口動態 統計法으로 규정된다. 이들 法規의 形態는 두 觀點에서 논급될 수 있다. 즉,

① 題目別 統計(例: 人口動態統計, 農業統計 등)는 다른 형태의 統計와 함께 中央統計機構에서 編輯되는지 아니면 特定題目에 관한 統計는 이에 특별한 要求를 갖고 있는 한 省에서 生産하는지?

② 그 機關이 이 統計의 編輯을 題目別로 中央集中 또는 分散하는지 또는 地域別로 中央集中 또는 地方分散하는지?

특히 이들 觀點 중에서 특별한 統計機能을 갖는 省이 人口動態 統計를 編輯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에 관한 關心과 要求도가 높은 省에서 이를 관장해야 하는지를 檢討해 볼 필요가 있다.

어느 題目에 관한 統計는 다른 題目에 관한 統計와 함께 中央統計機構에서 編輯

2) Report of the Health Survey and Development Committee, Vol. II, Recommendations, P. 280.

되거나, 申告者로 부터 原資料를 수집하는 機關 또는 그 題目의 資料에 중요한 關心을 갖는 機關에서 編輯될 수 있다. 그러므로 人口動態 統計는 中央統計機構, 基本資料를 수집하는 戶籍管理機關, 직접적으로 가장 관심이 큰 機關 즉 保健機關 등에서 각각 編輯될 수 있다.

65個國의 國家水準에서, 人口動態 統計의 編輯을 맡고 있는 國家機關은 中央統計機構, 保健機關, 申告管理機關, 센서스機構, 司法當局 등이 있다(表 1 參照).

<表 1> 世界諸國의 人口動態統計 編輯 機關 : 1950 年

編輯 主管 機關名	國 家 數
(1) 中央統計機構	39
(2) 保健機關	6
(3) 戶籍申告機關	2
(4) 統計 및 保健	8
(5) 申告 및 保健	3
(6) 申告 및 司法	3
(7) 統計, 保健, 申告	3
(8) 統計, 保健, 센서스	1

資料 : United Nations, Hand book of Vital Statistics Methods, 1955, P. 37.

여러 재미있는 事實을 이 表에서 볼 수 있다. 첫째 編輯의 責任이 한 政府機關에 集中되지 않고, 어떤 경우 둘 또는 그 이상으로 分割(18個國)되어 있다. 한편 申告管理機構에 人口動態 事件이 신고되고 統計報告가 이 機構에서 作成되지만 오직 少數國家에서만 이 機關이 전체적이든 부분적이든 編輯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世界 대부분 국가에서 人口動態 統計는 原資料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하지 않는 政府機關에 의하여 編輯되며, 이 編輯機關은 대부분 國家에서 一般統計機關이다.

統計機構 : 1950 年에 世界 65 個國 중 51 個國에서 人口動態統計 編輯의 책임이 전체적이든 부분적이든 中央統計機構에 있었고, 이 機構는 일반적으로 經濟, 財務, 內務의 한 省 산하기관이거나 國務總理室의 部分 또는 省水準의 1 個 省으로 되어 있다.

1950 年에 統計機構가 人口動態 統計 編輯의 單獨管理를 맡고 있는 國家數는 39 個國이며, 이들 國家는 주로 유럽과 南美諸國이지만 이스라엘, 필리핀, 이란, 인도네시아 등도 이에 속한다.³⁾

이 외의 12個國에서 統計機構는 그 기능의 주요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 즉, 덴마크와 뉴질랜드에서는 死因統計를 제외한 모든 統計, 페루, 부라질, 에쿠아돌에서는 保健省의 都市地域을 제외한 모든 統計를 각각 編輯하고 칠레, 쿠바, 파라과이, 베네주엘라, 터키, 쿠아테마라 등에서는 保健省과 함께 分割된(요르단) 또는

3) 1955年 現在 이 그룹에 파테마라, 파나마, 실론이 첨가되어 세계 65개국 중 42개국 즉 전체의 2/3가 中央統計機構에 의하여 人口動態 統計를 담당하고 있다.

二重의 編輯制度에 참여하고 있다. 後者의 二重制度 形態는 공식적으로 人口動態統計에 관한 책임이 부여되었지만, 統計機構가 保健省의 要求充足의 정도로 그 책임을 구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불만족한 요구의 충족을 위하여 保健機關이 別個의 蒐集地域을 설정하고 獨立的으로 統計를 編輯하거나(쿠바, 베네주엘라, 터키), 正規的 申告經路를 통하여 받은 報告에 대한 二重의인 人口動態 統計를 編輯한다. (칠레, 파라과이, 과테말라).

人口動態 統計를 中央統計機構에 두는 것은 人口動態統計 制度의 統計의 側面에 주의를 集中하고, 訓練된 統計要員, 統計施設의 계속적 活用面에서 利點을 갖는다. 이와 같은 제도하에서 人口動態 資料는 申告 또는 保健機關에 두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하고 철저하다. 出生, 死亡 死産, 結婚, 離婚 등 모든 統計는 製表計劃과 申告와 연관해서 실시되는 발전 또는 改善 活動에 의하여 적절히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 더 나아가서 統計의 側面에서 長期事業 發展計劃은 용이하게 성취될 수 있다.

機械的 裝備가 統計處理에 이용 가능하다면, 이 장비는 中央統計機構에 설치하고, 이러한 형태의 組織下에서 人口動態 統計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 한편 豫算의 觀點에서 人口動態 統計를 위한 충분한 예산의 확보와 신뢰할 수 있는 항구적 要員의 充員을 기하는 기회는 이 統計分科가 전체의 統計的 運營의 부분인 때 확대될 수 있다.

人口動態 統計와 다른 형태의 資料를 조정하는 問題에 있어서, 人口動態 統計와 人口統計, 人口動態 統計와 人口移動 또는 社會統計 등을 조정하는 가능성은 同一 行政下에서 이들을 編輯함으로써 증대된다. 끝으로 人口動態 統計의 이용과 요구는 한 分野에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광범한 이용은 單一 省에서 보다 一般 統計 機構에서 人口動態 統計가 취급되는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 制度의 觀點에서, 統計處理와 原情報의 蒐集 分析을 分離하는 組織形態는 이상적이 못 된다. 原資料에 力點을 두지 못하고 基礎 蒐集過程에 대한 직접적 통제가 不在한 것은 잠재적 결함이다. 이러한 형태의 組織에서 누락 또는 불완전한 資料에 대한 질의는 어느 경우 統計的 要求에 대한 적은 이해를 갖는 기관의 목인에 의하여 간접적으로만 수행될 수 있다. 原資料의 定義와 이들 蒐集에 대한 指針은 統計當局에 의하여 그들이 行政的 統制를 가하지 않는 要員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情況下에서 모든 要求를 충족하는 適期의 신뢰도 높은 統計를 생산하는 것은 때로는 어렵다. 그러므로 方向 자체가 최고의 質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한, 中央統計機構의 人口動態統計는 다른 統計的 문제와 관심에 의하여 有名 無實해지는 경향이 있다.

保健機關 : 人口動態 事件에 대한 報告로 부터 人口動態 統計를 編輯하는 두번째 組織形態는 한 독립된 機關이나 保健機關과 같은 이들 資料에 관심을 갖는 省에 이 기능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1950年 현재 세계 65개국 중 21개국에서, 保健省이 人口動態統計의 일부분 또는 전체의 編輯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⁴⁾

1950년에 保健機關이 완전한 책임을 갖는 國家는 美國, 버마, 일본, 하이티, 인도, 파키스탄 등 6개국에 불과하다. 쿠바, 파라과이, 터키, 칠레, 우루과이, 태국, 파나마, 베네주엘라, 덴마크, 페루, 부라질, 요르단, 뉴질랜드, 에쿠아돌, 과테마라 등 諸國에서, 保健機關은 몇 가지 방법으로 참여한다. 즉 칠레, 베네주엘라, 페루, 부라질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그 節次를 二重化하고 있고, 요르단과 태국은 어떤 측면 예컨대 死亡과 出生에, 우루과이는 死亡에 책임을 갖고, 덴마크와 뉴질랜드는 死因統計의 編輯단을 맡고 있다.

人口動態 統計의 主消費者로서 保健機關은 특히 운영되는 中央統計機構나 人口動態 統計에 책임을 갖는 國家申告管理所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 人口動態 統計의 編輯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그러나 오직 1個國에서 申告와 統計的 機能이 保健省에 주어져 있다. 이런 형태의 조직은 美國에서 볼 수 있다. 美國에서 申告管理는 國家機構가 아닌 州保健省(1個 州 除外)에서 실시된다. 인도, 파키스탄, 요르단, 등 國家는 어느 정도 이 조직 형태와 같다. 즉 都市地域의 申告는 區域 또는 州 保健省의 책임이며, 州 및 國家水準에서의 人口動態 統計는 保健省의 主管下에 있다. 그러나 이들 國家에서 申告의 대부분은 保健省 이외의 機關에서 취급된다. 申告의 대부분은 戶籍當局이 책임을 맡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人口動態 統計를 保健省에서 編輯하는데서 오는 主利點은 적어도 保健的 목적을 위해 요구되는 人口動態統計의 충분한 개발에 중요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一般統計 또는 申告機關에서 전개된 人口動態 統計는 保健需要에 따라 신속히 변화함에 요구되는 융통성이 부족하고, 틀에 박히고 진부해지는 추세에 있다. 이것은 人口動態 統計를 保健機關의 主管下에 두는 주요 利點이다. 保健的 목적에 요구되는 이와 같은 統計는 더욱 신속히 이용되는 추세에 있고 이 統計의 발전은 오직 保健指導者의 關心과 能力, 충분한 豫算획득에 대한 이들의 영향과 力量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그러나 資料源을 관리하는 機構이외의 다른 한 機關에 의한 統計의 編輯은 질적으로 높은 統計를 만들지 못 한다. 세계 65개국 중 6개국에서, 保健機關이 申告 및 統計의 兩者를 主管하며, 이들 중 美國, 인도, 파키스탄 3개국의 國家機關은 실제로 직접적인 主管을 하지 않는다. 申告 형태는 지역적으로 分散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直接管理의 요인은 人口動態 統計의 編輯에 있어서 保健省의 利點을 평가하는데 고려되는 주요 요인이다.

이 형태의 조직이 갖는 不利益의 둘째 요인은 人口動態統計를 주관하는 保健省이 어떤 통계 예컨대 死亡率 또는 死亡率의 특수한 측면을 이 제목의 다른 측면의 손상으로 발견케 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保健省 內의 人口動態 統計의 일방적 발전 경향 이외에 人口動態統計와 人口를 위시한 다른 統計 간에 필요한 조정을 이

4) 1950年以後 파나마, 인도, 과테마라, 하이티 등 4개국은 이 機能를 中央統計機構에 이양 하였다.

록 함에 있어 保健機關이 직면하는 난점이 크다는 것이다. 조정이 유지되어야 하는 관련된 統計는 보통 中央統計機構나 적절한 독립된 機關에서 編輯된다. 어느 경우이든 두개의 별개 省 간의 조정을 성취하는 간단한 방법은 없는 것이다.

人口動態 統計와 다른 형태의 統計間調整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는 것으로서 人口動態 統計의 완숙한 발전에 필요한 장기 계속성의 문제가 있다. 충분한 범위의 要求를 계속적으로 충족시키는 人口動態 統計의 생산은 특수한 통계적 관심이 保健事業에 따라 매년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保健省에서 어려운 것이다.

마지막 요인은 政府組織의 관점에서 保健省은 보통 政府 各 部處의 位階秩序 중 맨 마지막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 省이 충분히 발전되지 않는 한, 이 省의 주관 하에 있는 人口動態 統計는 專門要員과 豫算 확보면에서 輕視될 수 있다.

申告機關: 人口動態 統計의 編輯을 위한 가장 논리적 기구는 申告機關이 人口動態記錄과 人口動態 統計를 직선으로 單一機關의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申告機關은 보통 編輯의 책임을 갖고, 전국에 있는 산하기관을 통하여 관리되는 末端機關網을 갖는 “registra-general's office”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制度는 申告와 人口動態 統計를 위하여 완전히 中央集中 및 直轄組織을 가지며, 기초자료의 통계적 機關管理에 어느 다른 형태의 기관에 의하여 이룩되지 않는 有益한 조건을 마련한다.

1950년에 11個國에서 申告機關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人口動態 統計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실론, 레마논 등 國家에서 일반 登錄管理所가 모두 형태의 人口動態統計를 編輯하지만,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離婚은 이 관리소에 등록하지 않는다.

북부 아일랜드와 스코트랜드에서 編輯의 책임은 離婚登錄과 離婚統計를 편집하는 司法機關과 登錄機關이 분담하며, 파나마, 우루과이, 태국에서는 登錄機關과 保健機關, 터키, 에쿠아돌, 파라과이 등에서는 人口動態 統計의 어떤 측면을 보건과 統計機關 양자가 각각 편집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人口動態 統計를 일반 登錄管理所가 맡는 뚜렷한 利點은 編輯을 맡은 機關이 직접 原資料에 力點을 두고 이의 蒐集을 관리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制度가 주로 申告機能을 위해 고안된다는 사실은 統計의 側面을 경시하거나 不利益이 되게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므로 예컨대 우루과이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맡고 있는 登錄機關은 保健省에 統計의 機能의 일부를 위양하고 있다. 실론에서는 統計機關이 編輯의 일부 책임을 맡고 있다.

3) 戶籍 및 保健行政의 長短點

戶籍行政: 獨立된 戶籍機關에게 人口動態 申告의 責任을 부여함으로써 얻는 利點은 둘이 있다.

첫째, 地方 公共行政에 의하여 대표되는 戶籍機關은 전국적 규모로 조직되어 있다. 政府構造의 성격을 볼 때, 모든 地域은 몇 가지 방법으로 전국적인 人口動態

申告에 긴요한 조직망을 형성하면서 통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人口動態申告를 地方 戶籍行政의 부분으로 규정함으로써 前提條件의 하나인 완전한 地理的 包括이 성취되는 것이다.

둘째 利點은 地方 戶籍行政이 관심을 두는 領域에서 찾을 수 있다. 地方政府單位는 戶籍法의 法的 要求事項을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行政的 또는 法的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申告의 관심을 出生, 死亡, 死産 등의 記錄에 국한하지 않는다. 즉 結婚과 離婚을 포함하는 모든 人口動態 事件의 申告는 戶籍管理所의 책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種類의 組織下에서 그 과정의 法的 性格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이와 수반하여 申告義務者에게, 申告의 완전성을 확보케 할 수 있는 영향은 더욱 강력할 수 있다. 戶籍管理所의 記錄을 市民權, 年齡, 기타 등의 明確한 증거가 되게 하는 戶籍法의 구체적 요구 사항은 이들 記錄에서 義務와 特典의 전제조건이 되게 하며, 이에 따라 申告에 대한 유인은 강력하고 높아지는 것이다.

非戶籍機關에 申告業務를 부여함으로써 야기되는 不利益은 그 조직이 이들 側面에서 취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法的 特性에서 야기된다. 오직 法的 요구조건의 만족은 保健 및 人口學 등의 광범한 관심의 만족을 阻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申告管理所가 醫學 또는 人口學의 目的을 위해서만 요구되는 情報를 확보케 하는데 반대가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훌륭한 統計要員이나 충분한 豫算의 확보에 관심이 부족할 수 있다.

保健行政 : 申告에 관한 保健機關의 主管은 保健의 要求와 관심을 申告機關의 것으로 고정하고, 資料의 保健的 可能性을 개발하는데 큰 利點을 갖는다. 이러한 形態의 組織은 保健要員에게 특별한 有用性이 있는 人口動態 記錄 및 統計를 생산케 하는 경향이 있다. 더 나아가서 保健조직이 설치되고 戶籍申告 조직이 없는 地域에서 保健組織은 人口動態 統計 體制의 설치에 편리한 行政 기구가 된다.

保健機關이 申告에 책임을 갖게 하는데서 생기는 다른 利點은 醫學專門職에 영향을 주는 醫療組織이 非醫療的으로 監督된 制度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精確한 死因情報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論理는 全 申告地域에 걸쳐서 醫師가 利用 가능한 경우에만 타당한 것이다. 만약 대부분의 死亡이 醫師의 介入이 없다면, 申告管理所가 精確한 死因診斷書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醫師가 患者를 돌보고, 死因을 證明한다는 것을 전제로한 醫學的 死因證明의 制度는 戶籍管理所와 의 협조로서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申告에 관한 保健機關의 主管과 申告管理所로서의 醫療人의 공적에 관하여 Noel Humphrey는 Dudfield⁵⁾의 論文을 토의할 때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論評을 한 바 있다.

“경험에 비추어 醫師는 일반적으로 좋은 申告管理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첫째 일반적으로 이들의 筆記와 口術은 특정적으로 事務的이 못 되며, 더 나아가

5) Discussion on Mr. Reginald Dudfield's Paper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Methods of Recording and Publishing Statistical Data Bearing on Public Health; with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Such Methods, P. 42-43.

서 이들은 戶籍申告의 1차목적이 정확하고 법적인 出生 및 死亡記錄이라는 사실을 소홀히 보아넘기기 쉽다. 醫療人은 일반적으로 出生 및 死亡申告는 주로 保健增進을 위하여 창안된 것으로 생각한다. 戶籍申告는 다행스럽게 保健增進의 수단이지만 이는 戶籍申告의 1차 목적이 아닌 것이다.”

保健省을 申告機能으로 규정하는데서 생기는 不利益은 經濟的인 側面에서 찾아볼 수 있다. 人口動態 記錄의 發展 및 保管은 광범위하게 法的 考慮를 포함하는 것이며, 保健省은 이러한 측면을 조정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保健省의 主管下에 있는 申告管理所는 보통 기존 保健所에 설치된다. 先進諸國의 경우를 除外하고 保健省은 보통 전국적 包括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 戶籍申告 施設의 마련을 계획하지 못하고, 保健所가 존재하지 않는 地域에 어떤 다른 戶籍行政이 申告에 관한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 결과로 인도, 버마, 요르단, 파키스탄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二重의 조정되지 않는 制度가 생기게 된다,

둘째 缺點은 申告管理에 있어서 結婚, 離婚을 포함하는 전체의 人口動態 事件보다는 出生 死亡 死産 등의 記錄 增進을 위해 집중하는 保健省이 갖는 自然的 性向이 지적된다. 물론 이것은 1次的 考慮를 이에 두어야 하는 한 省의 主管下에 있는 制度에서 기대할만한 것이다.

4) 유엔의 勸告

國家間 情況의 複雜성과 多岐한 政府組織을 검토하여, UN은 어느 國際的 勸告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관하여 The Statistical Commission of the United Nations⁶⁾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104. 人口動態統計 制度의 責任規定

“(a) 國家 人口動態統計 制度의 설치 및 發展의 責任은 정부기관의 機能이어야 한다.

(b) 機能의 分擔은 申告, 記錄, 報告, 資料의 蒐集, 編輯, 分析, 發表, 分配, 制度의 비평적 評價 등에 관한 任務과 責任의 명확한 規定에 의거해야 한다.”

이 原則을 적용함에 있어, 人口動態 事件의 申告와 人口動態統計의 編輯에 대한 行政的 分擔은 個人 및 國家의 法的記錄의 要求와 人口動態統計 消費者의 관심을 최선으로 충족시키도록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 要求를 충족시킬 方法의 선택은 대체로 국가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地方 및 中央政府의 구조는 申告問題를 地方單位에 이양하는 自治의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人口動態記錄 및 統計와 관련되는 정부 여러 部處 즉 保健, 統計 또는 申告 問題를 맡고 있는 部處의 相對的 發展, 權限, 關心 등은 이들 部處 중에서 人口動態統計 制度 機構에 대한 책임을 맡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예컨대 전국을 포괄하는 保健單位가 잘 설치된 경우 이들 資源이 人口動態統計 機能을 구사토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組織原則의 요체는 相關되는 모든 機關과 個人에게 최선으로 만족토록

6)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a Vital Statistics System;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and Standardization of Vital Statistics, August 1953, P. 4.

機能을 수행할 수 있는 部處에 책임을 명확히 委讓하는 것이라 하겠다.

5) 우리 나라의 경우

우리 나라 人口動態 統計의 蒐集 및 編輯은 다음과 같은 法規에 의거 실시되고 있다.

- (1) 戶籍法(1963. 7. 31. 법률 제 1377호)
- (2) 호적법시행령(1970. 2. 7. 대통령령 제 4581호)
- (3) 統計法(1962. 12. 12. 법률 제 1215호)
- (4) 통계법시행령(1969. 10. 27. 대통령령 제 4182호)
- (5) 통계법시행규칙(1970. 9. 16. 경제기획원령 제 53호)
- (6) 인구동태조사규칙(1970. 9. 16. 경제기획원령 제 57호)

人口動態 申告는 戶籍申告와 同時에 이루어져서, 人口動態 申告書는 市·邑·面長 및 區廳長→郡→特別市, 道를 거쳐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에서 集計, 編輯 및 公表된다.

人口動態申告를 접수하는 1次 行政單位는 市, 區, 邑, 面이다. 이들 行政單位의 機關長은 戶籍事務에 관하여 地方法院長의 監督(戶籍法 제 4 조)을 받으며, 人口動態申告는 統計法 제 5 조와 인구동태규칙 제 4 조에 의거하여 호적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 의무자(死産의 경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신고케 하고 있다.

人口動態 및 戶籍申告 書式은 1970年 1月부터 單一化되어, 申告義務者는 특수 복사지 2枚 1組로 된 單一 申告書를 記入하여, 윗장의 甲紙는 法院으로 제출되고, 甲紙에 의해 복사된 아랫장의 2紙는 上級 行政機關을 통해 經濟企劃院에 보내진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人口動態 申告는 戶籍申告와 함께 行政單位인 市, 區, 邑 面에서 蒐集되고 統計機構인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에서 編輯 및 公表된다. 이 過程에 人口動態統計의 主利用者인 保健社會部는 전혀 관여되어 있지 않다.

2. 通報者(Notifier)

通報者(Notifier)는 어떤 국가에서 人口動態 事件의 발생을 登錄管理所에 알려주도록 法規에 의하여 책임이 부여된 個人이지만, 이에 의한 報告는 “通報” 이의의 가치는 없다. 이 通報는 法的 申告記錄으로 전환될 수 없고, 通報者는 署名하지도 않는다. 그의 報告는 오직 登錄管理所가 法的 申告義務者로부터 요구되는 情報를 얻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先導”의 역할을 한다.

〈表 2〉는 세계 65개국의 1次 申告義務者와 通報者를 나타낸 것으로서, 出生의 경우 많은 國家에서 通報者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申告義務者는 戶籍法의 諸規定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出生(戶籍法 제 51조)

- (1) 親生者: 父, 父가 신고할 수 없을 때는 母

〈表 2〉 出生 및 死亡의 1次 申告義務者와 通報者(1950年1月1日 現在 世界 65個國)

國 名	出 生		死 亡	
	申告義務者	通 報 者	申告義務者	通報者
[아프리카]				
Egypt	父	分娩介助者	친척	—
Union of South Africa	父	—	친척	의사
[북아메리카]				
Canada	父 또는 母	分娩介助者	장의사	—
Costa Rica	父 또는 母	—	친척	—
Cuba	父	—	친척	—
Dominican Republic	父	住宅主(3)	친척	—
El Salvador	父	—	친척	—
Guatemala	父 또는 母	(5)	가주주	—
Haiti	父	—	父母	—
Honduras	父	(5)	夫婦 中生殘者	參加者
Mexico	父	分娩介助者(6)	가주주	의사(7)
Nicaragua	父	施設	夫婦 中 生殘者	—
Panama	(8)	—	(8)	—
United States	分娩介助者	—	장의사	—
[남아메리카]				
Argentina	父	分娩介助者(6)	夫婦 中 生殘者	—
Bolivia	母 또는 父	分娩介助者	친척	—
Brazil	父	—	가주주	—
Chile	父	—	친척	의사
Colombia	父	施設	가주주	—
Ecuador	父	목사 및 施設	친척	목사 및 施設
Paraguay	父	—	친척	—
Peru	父	分娩介助者	친척	施設
Uruguay	—	—	—	—
Venezuela	父母 또는	分娩介助者	친척	區長(수령)
[아시아]				
Burma	父 또는 母(11)	—	父母	—
Ceylon	父(12)	區長(수령)	친척	區長
India	(14)	—	(14)	—
Madras(State)	父	—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	—
Indonesia(유럽인)	父	—	家口員	—
Iran	—	—	의사	—
Israel	父 및 區長(15)	—	친척 및 區長	—
Japan	父	分娩介助者	친척	의사
Jordan	區長	—	區長	—
Lebanon	父	—	區長	—

國 名	出 生		死 亡	
	申告義務者	通 報 者	申告義務者	通 報 者
Pakistan	父	—	친척	—
Philippines	分娩介助者	—	의사	—
Syria	父 및 區長(15)	分娩介助者	父母	—
Thailand	父母	—	父母	—
Turkey	父	—	區長	—
[유 럽]				
Austria	父	—	家口主	—
Belgium	父	—	證人(17)	—
Czechoslovakia	父	分娩介助者	檢屍官	—
Denmark	父	分娩介助者	父母	의사
Finland	.	分娩介助者	父母	—
France	父	—	친척	—
German Federal Republic	父	—	家口主	—
Greece	父	教會, 施設	친척	教會, 施設
Iceland	助産員	—	친척	의사
Ireland	父 또는 母	—	친척	—
Italy	父 또는 母	—	夫婦중 生殘者	—
Liechtenstein	父	分娩介助者	—	家
Luxembourg	父	—	친척	—
Monao	父	—	친척	—
Netherlands	父	—	의사	—
Norway	父母	分娩介助者	친척	의사
Poland	父	—	夫婦中 生殘者	—
Portugal	父	—	家口主	—
Spain	父母	—	父母	—

資料 : United Nations, Handbook of Vital Statistics Methods, 1955, pp. 71—73.

(“—”票는 이용할 資料가 전혀 없는 경우임).

註 : (3) 出産이 母의 거주지 이외에서 기록된 경우.

(5) 農場主 및 施設의 行政擔當者.

(6) 出産이 母의 거주지 이외에서 기록된 경우에 家口主도 통보자가 됨.

(7) 施設의 長 포함.

(8) District of Panama 에서는 介助者, Colon 과 기타 지역은 父 또는 친척.

(11) 市地域은 事件이 일어난 家屋의 主.

(12) 農場에서는 감독자에게 위임됨.

(14) 一定한 節次가 없음.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에서는 家口主, 男子 介助者, 助産員 또는 의료원 농촌지역에서는 경찰 야경원이나 세무서 직원.

(15) 농촌에서는 區長.

(16) 故人의 시체를 지켜본 21歲 이상의 두 사람.

(2) 婚姻外 出生 : 母

(3) (1) 및 (2)의 者가 申告할 수 없는 경우 다음 順位에 따라 申告

① 戶主

② 同居者

③ 分娩에 關여한 醫師, 助産員 또는 其他의 者

死亡(戶籍法 제 88조)

(1) 戶主

(2) 同居하는 親族

(3) 其他의 同居人

(4) 建物土地의 所有者 또는 管理人

우리 나라 申告義務者는 世界 65개국과 대부분의 경우와 거의 같게 法으로써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通報者는 活用되고 있지 않다. 出生의 경우 分娩介助者를 申告義務者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申告義務者가 申告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의 代理者의 구실을 하는 것이며, 通報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通報者를 活用해서 人口動態 事件의 發生을 把握하기 위한 研究⁷⁾는 延世大學校에서 1966. 5.—1967. 4. 의 1年間 金泉市 및 그 주위 一部 地域을 對象으로 實施하여 좋은 成果를 얻은 바 있다.

本 研究에서도 通報者를 活用하여 人口動態의 發生 파악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3. 申告管理所의 數 및 分布

어느 國家의 申告管理所數는 조직형태의 부분으로 결정되는 1次 申告單位의 數에 의존하며, 1個 申告管理所 또는 1個 申告單位가 봉사토록 규정된 人口集團의 크기는 양호한 申告의 한 결정 요인일 수 있다.

The United Nations Principle⁸⁾에 따른 일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206. 1次申告單位의 數와 規模

(a) 地方 申告事務所는 충분한 數가 설치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위치에서 일반에게 용이하게 접근될 수 있어야 하고, 일반에게 편리한 시간 동안 執務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申告義務者는 法定期限 內에 申告要求事項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

(b) 1次 申告單位의 規模는 그 單位에 양호한 申告를 생산함에 요구되는 注意를 경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近接性 : 人口의 各 部分에 용이하게 근접할 수 있는 申告管理所의 설치는 完全申告를 달성케하는 첫단계이다. 한 人口動態 事件을 신고하기 위하여 個人이 어떤 불편을 무릅쓰고 자신의 경비로 장거리를 여행해야 한다면, 그 個人은 전체적으로

7) 梁在模, 外 5人 : 韓國 家族計劃 事業의 支援方案과 正確한 人口動態 統計의 把握을 위한 研究, 延世大學校, 1969. 3.

8) United Nations, 전계서, P. 8.

申告에 태만하거나 최선의 경우 이를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다.

申告管理所가 晝間の 어떤 時間 또는 週間の 어떤 날에만 執務한다면, 일반에 대한 近接性은 심히 제한되고, 申告義務者 側의 이행은 기대이하로 된다. 어떤 戶籍法規에서 申告管理所는 晝夜時間 집무 해야한다고 규정한 例(폴란드)는 매우 가

<表 3> 世界 28個 國家의 面積과 人口에 대한 1次 申告管理所 數 (1950年 1月 1日 現在)

國 名	1次申告管理所數 (1)	面積(km ²) (2)	申告管理所當面積(km ²) (3)=(2)÷(1)	人口(1950年, 千人) (4)	申告管理所當人口 (5)=(4)÷①→(1)
[北美]					
Costa Rica	318	51,011	160	800	2,516
Cuba	259	114,524	442	5,362	20,703
El Salvador	259	34,126	132	1,859	7,178
Guatemala	315	108,889	346	2,803	8,898
Haiti	123	27,750	226	3,112	25,301
Honduras	269	115,205	428	1,505	5,595
Mexico	3,008	1,969,367	655	25,706	8,546
Nicaragua	143	148,000	1,035	1,053	7,364
United States	40,000	7,827,680	196	151,689	3,792
[南美]					
Bolivia	800	1,098,581	1,373	3,019	3,774
Chile	396	741,767	1,873	5,809	14,669
Colombia	807	1,138,355	1,411	11,260	13,953
Ecuador	637	275,000	432	3,203	5,028
Peru	2,000	1,249,049	625	8,405	4,203
[아시아]					
Ceylon	662	65,607	99	7,544	11,396
Iran	106	1,630,000	15,377	18,772	177,094
Lebanon	20	10,400	520	1,257	62,850
Syria	135	181,337	1,343	3,215	23,815
[유럽]					
Belgium	2,670	30,507	11	8,639	32,366
Czechoslovakia	3,500	127,827	37	12,340	3,526
Denmark	2,000	42,936	21	4,270	2,135
Iceland	600	103,000	172	143	238
Netherlands	1,016	32,388	32	10,114	9,955
Sweden	1,900	440,122	232	7,107	3,693
Switzerland	2,120	41,295	19	4,694	2,214
United Kingdom					
England and Wales	1,200	151,103	126	44,020	36,683
Scotland	1,027	78,761	77	5,219	5,082
[오세아니아]					
New Zealand	85	267,985	3,153	1,920	22,588

資料 : United Nations, Handbook of Vital Statistics Methods, April 1955, P. 66.

치있는 것이다.

運營性 : 申告管理所의 見地와, 申告改善의 側面에서, 面積과 人口密度에 의한 申告單位의 規模는 申告管理所가 그 單位에 양호한 申告 생산에 요구되는 注意를 경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注意”는 그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人口動態 事件의 하나 또는 모든 방법에 의한 보고접수나 申告, 열람, 證明書 등 모든 요구의 신속한 처리를 의미한다.

UN이 1950년에 조사연구한 세계 65개국 중 28개국의 경우에만 1次 申告單位의 數에 관한 情報가 이용가능 하였다(表 3 참조).

보고된 1次 申告單位의 數는 레바논의 20개소에서 미국의 40,000개소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申告單位의 數를 國土面積과 全人口에 연관 시킴으로써, 양호한 申告에 요구되는 비율의 개략적인 尺度가 나올 수 있다. 명확한 결론을 얻기에 너무 實例의 數가 적지만, <表 3>에서 1次 申告單位當 面積이 적은 數值가 양호한 人口動態 統計와 연관되며 그렇기 때문에 양호한 申告와 연관됨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적은 比率(申告單位當 100km²이하)은 벨지움, 스코트랜드, 네델란드, 스위스, 덴마크, 실론, 체코 등에서 볼 수 있으며, 申告單位當 가장 면적이 넓은 比率(1,000 km² 이상)은 칠레, 코롬비아, 뉴질랜드, 시리아, 이란, 보리비아, Nicaragua 등에서 볼 수 있다. 國內의 地勢와 人口密度의 變異性으로 인하여 이 指標나 申告單位當 人口는 엄격히 타당한 尺度가 아니지만, 申告不振의 問題를 갖고 있는 國家중 레바논, 이란, 시리아, 하이티, 큐바 등은 자료가 이용가능했던 국가 중에서 申告單位當 人口比가 가장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나라는 市, 邑, 面의 長이 戶籍事務를 管掌토록 규정(戶籍法 제 2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1次 申告管理所로 볼 수 있다.

1970年10月1日 現在の 人口와 面積 그리고 申告管理所의 分布는 <表 4>와 같다.

이들 申告管理所의 分布와 世界 65個國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申告單位當 面積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협소함을 알 수 있고, 1次 申告管理所當 人口는 비교적 많음을 볼 수 있다.

申告管理所當 面積이 좁다는 것은 그만큼 行政組織이 발달되고, 申告促進에 양호

<表 4> 우리나라 1次管理所 數와 管轄地域 面積 및 人口 : 1970年

區 分	全 國	市 部	郡 部
(1) 1次行政單位數	1,521	54 ¹⁾	1,467 ²⁾
(2) 面積(km ²)	98,477.48	3,487.30	94,990.18
(3) 行政單位當 面積(2)/(1)	64.75	64.58	64.75
(4) 人口	31,469,132	13,609,325	17,859,807
(5) 行政單位 人口(4)/(1)	20,690	252,025	12,174

資料 : 經濟企劃院, 한국통계연감, 1971.

1) 市와 區의 數임.

2) 邑과 面의 數이며,出張所의 數와 未入住地域은 除外되어 있음.

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面積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申告管理所當 人口規模가 큰 것은 우리 나라 領土 對 人口比 즉 人口密度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라는 것과 연관되며, 그만큼 申告管理所當 申告關係 事務量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面積의 大小와 함께 交通, 通信手段의 發達, 地形 및 地勢 등도 申告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이들 相關요인은 비교적 신고를 저해하는 要因으로 간주되고 있다.

4. 法定 申告期限

人口動態 事件의 신고의무를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신고 의무자에게 時限을 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대부분 국가의 申告關係 法規에서 신고기한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이러한 기초적 이유 때문이다.

각국에서 이 期限을 결정하는 國內的 要因은 너무나 잡다하여 이 점에 관하여 형식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人口動態統計 制度의 이 중요한 문제에 주의의 초점을 두기 위하여 유엔⁸⁾은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212. 最近의 申告期限

人口動態 事件의 發生과 義務的 申告 間의 最大期限은 國內의 關여하는 모든 要因에 의거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모든 필요한 事實의 最近성 및 精確한 신고를 確實히 하며 短期이어야 한다.”

모든 人口動態 事件 특히 出生의 신속한 신고는 여러 觀點에서 중요하다. 첫째 신고의무자로 부터의 精確한 정보 획득의 기회는 지일 경과에 따라 감소한다. 이것은 앞에서 지적된 바 있지만, 事件이 일어난 후 오랜기간에 관한 情報를 수집하려는 標本調査에 의존하는 대신 申告制度의 實施를 통하여 人口動態 事件 資料의 수집을 권장하는 주요 근거가 되는 것이다. 기억을 살려서 얻는 사실은 이들의 발생 즉시 기록한 자료만큼 타당할 수 없다. 즉 신고의무 기간을 길게 잡는 것은 결함이 있거나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보고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事件 發生과 申告 間의 기한이 短期일수록 더욱 精確한 정보를 얻게 된다고 하겠다.

신속한 신고의 둘째 利點은 保健當局에 產後管理, 育兒管理所, 豫防接種, 身體 障害兒童 등과 關連되는 豫防 및 公共事業의 한 指標로 이용케 하는 기초기록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고없이 환자발견에 의존하는 제사업은 심각하게 저해되고 일반주민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신속한 신고의 셋째 利點은 地方 및 國家수준의 出生, 死亡, 結婚, 離婚 등에 관하여 더욱 最近성의 통계를 마련케 하는 것이다. 申告過程에 關여하는 기타 많은 要因이 最近성의 통계 이용에 영향을 주지만, 신속한 신고는 적어도 1次的이며 基本적 단계가 된다. 그러나 완전하고 精確한 범위를 포괄하고, 最近성의 事件申告 및 통계를 조성케 하는 즉각신고의 중요성은 크지만, 各國의 地勢, 氣候, 通信,

8) United Nations, 전게서, P.8-8.

<表 5> 世界 65 個國의 出生과 死亡 法定申告期限 (1950 年 1 月 1 日 現在)

國 名	出 生	死 亡
[아프리카]		
Egypt	8일	24시간
Union of South Africa	7일 및 30일(3)	24시간 및 30일(4)
[北 美]		
Canada	10일—30일(5)	(6)
British Columbia(Province)	30일	(6)
Costa Rica	25일	24시간
Cuba	1년	즉시
Dominican Republic	30일 및 60(11)	1 일
El Salvador	15일	同日
Guatemala	8일	24시간
Haiti	30일	24시간
Honduras	8일	24시간
Mexico	15일 및 40일	즉시
Nicaragua	8일	24시간
Panama	8일	8일
United States	1일 15일(15)	3일
[南 美]		
Argentina	3일 및 8일(18)	24시간
Bolivia	8일	8일
Brazil	15일 및 90일(20)	24시간 및 90일(20)
Chile	60일	3일
Colombia	8일	대단히 신속하게
Ecuador	10일	(6)
Paraguay	8일 및 15일(21)	24시간
Peru	8일	24시간
Uruguay	—	—
Venezuela	20일	—
[아 시 아]		
Burma	1주	24시간 및 1주
Ceylon	42일	5일
India Madras (State)	2주	4일
Indonesia(European Population)	3일 및 10일(23)	3일 및 10일(23)
Iran	—	—
Israel	15일	24시간 및 48시간
Japan	14일	7일
Jordan	15일	3일
Lebanon	15일(26)	15일(26)
Pakistan	4일	4일
Philippines	30일	48시간
Syria	10일 및 30일(28)	10일 및 30일(28)

國 名	出 生	死 亡
Thailand	15일	1일
Turkey	30일	15일
[유 럽]		
Austria	1주	1일
Belgium	3일	(29)
Czechslova kia	7일	다음의 週日
Denmark	2일 및 8일(30)	장례후 즉시
Finland	6주 및 2개월(31)	지체없이
France	3일	24시간
German Federal Republic	1주	다음 근무일
Greece	10일	24시간
Iceland	정하여져 있지 않음	정하여져 있지 않음
Ireland	42일	5일 및 14일(33)
Italy	10일	24시간
Liechtenstein	3일	1일
Luxembourg	3일	3일
Monaco	3일	—
Netherlands	3일	5일
Norway	4주	8일
Poland	2주	24시간
Portugal	30일	24시간
Spain	3일	1일
Sweden	6주	신속히
Switzerland	3일	2일
United Kingdom:		
England and Wales	42일	5일
Northern Ireland	42일	5일
Scotland	21일	8일
Yugoslavia	15일	3일
[오세아니아]		
Australia	42일—60일(37)	7일—30일(38)
New South Wales (State)	60일	30일
New Zealand:		
European Population	62일	3 및 7일(41)
Maori Population	2개월	(42)

資料 : United Nations, Handbook of Vital Statistics Methods, April 1955, pp. 84—85.

註 : (3) 都市에서 7일, 農村에서 30일

(4) " 24시간 " 30일

(5) 州에 따라 다르다.

Prince Edward Island 30일

Nova Scotia 30일

New Brunswick 10일

Quebec 정하여져 있지 않음

Ontario	30일
Manitoba	10일
Saskatchewan	15일
Alberta	1개월

- (6) 장례허가 이전에
 (11) 출생이 신고관리소가 없는 지역에서 일어난 경우 60일.
 (14) 父가 신고하는 경우 14일, 母가 신고하는 경우 40일.
 (15) 인구조밀지역에서는 24시간이내, 통신수단이 불량하고 인구희소한 벽지의 경우 10~15일.
 (18) 國家領土내에서는 8 일.
 (20) 가장 가까운 신고관리소 간의 거리가 30km이상, 철로가 없는 지역에서는 3개월.
 (21) Asuncion 에서 8 일, 기타지역에서 15일.
 (22) 1898년 Municipal Act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48시간, 기타 지역에서는 1주일.
 (23) 신고관리소간의 거리 15km이내에서는 3 일, 15km이상이면 10일.
 (24) 보건소가 없는 곳에서는 48시간.
 (26) 1951년 법규에 의하여 출생 30일, 사망 1개월.
 (28) 신고관리소가 없는 지역에서 일어난 경우 30일.
 (29) 병원이나 진료소에서의 사망은 24시간이며, 이 외의 경우는 정하여져 있지 않음.
 (30) 도시지역 2 일, 농촌지역 8 일.
 (31) 교회신고관리소에서는 6 주, 호적신고 관리소에서는 2개월.
 (33) 의학적 진단을 받은 사망의 경우 14일.
 (37) 州간에 다르다.
 New South Wales 60일
 Western Australia 60일
 Queensland 60일
 Victoria 60일
 South Australia 42일
 Tasmania 60일
 (38) 州간에 다르다
 New South Wales 30일
 Western Australia 14일
 Queensland 30일
 Victoria 21일
 South Australia 10일
 Tasmania 7일
 (41) Borough에서 3 일, 기타의 경우 7일.

文化 등의 諸條件이 人口動態 申告 法規에 의하여 규정되는 최대기한의 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通信 및 交通施設이 빈약하고, 申告管理所가 멀리 떨어져 있고, 季節的 變化가 곤란을 야기시키는 國家에서 短期의 申告期限은 이행을 저해하게 한다. 이는 특히 허용된 法定申告期限을 넘긴 것은 지체신고에 대한 심한 벌과금 부과나 특수 法廷節次를 거치게 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신고기한을 규제한 法規의 융통성은 필요한 것이며, 어떤 국가에서는 두 期限 즉 도시나 안정된 지역에서 일어난 事件과 벽지나 농촌에서 일어난 事件

에 대한 별개의 신고기한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表 5>는 세계 65개국(1950年 現在)의 法定申告期限을 나타낸 것이다.

出生의 申告期限은 국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가장 短期의 신고기한은 1일이며, 최장의 것은 90일이다. 1일(24시간)의 신고기한은 미국의 어떤 인구조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신고기한 90일은 신고관리소에서 30km 이상 떨어져 있고, 鐵道가 이용되지 않는 브라질의 어느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期限 간의 차이가 크지만, 신고기한의 대다수 즉 보고된 65개국의 절반이 넘는 국가는 15일 이내에 집중되어 있다.

死亡申告는 부분적으로 경찰의 규제, 保健當局의 전염병 사망자료의 需要 등에 의하여 발전되고 사망신고는 보통 장례허가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短期로 되어 있다. 즉 보고된 61개국 중 19개국은 24시간 이내, 다른 6개국은 “신속히”, “지체없이”, “대단히 빠르게”, “同日”, “즉시” 신고케 하고 있다. 오직 8개국만이 5일 이상의 기한을 설정하고 있으며, 대다수 국가의 法規는 死亡 5일 이내에 신고케 하고 있다.

우리 나라 人口動態 申告의 法定期日은 戶籍法의 규정과 동일하게 인구동태규칙 제 6조(신고기한)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출생 : 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사망 : 사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사산 : 매장 또는 화장신고와 동시에(이 경우 戶籍法에 관계 규정이 없음).

혼인 : 혼인성립과 동시

이혼 : 이혼성립과 동시

世界 各國에서 施行하고 있는 法定申告 期限과 우리 나라의 경우를 比較할 때 出生申告 期限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死亡申告 期限은 약간 長期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우리 나라는 全地域에 걸쳐 동일한 申告期限이 정하여져 있다. 이 점은 地勢, 交通便宜를 고려하여 地域別 法定申告期限에 차이를 인정하고 있는 몇 個國과는 다른 것이다.